



제1장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 대만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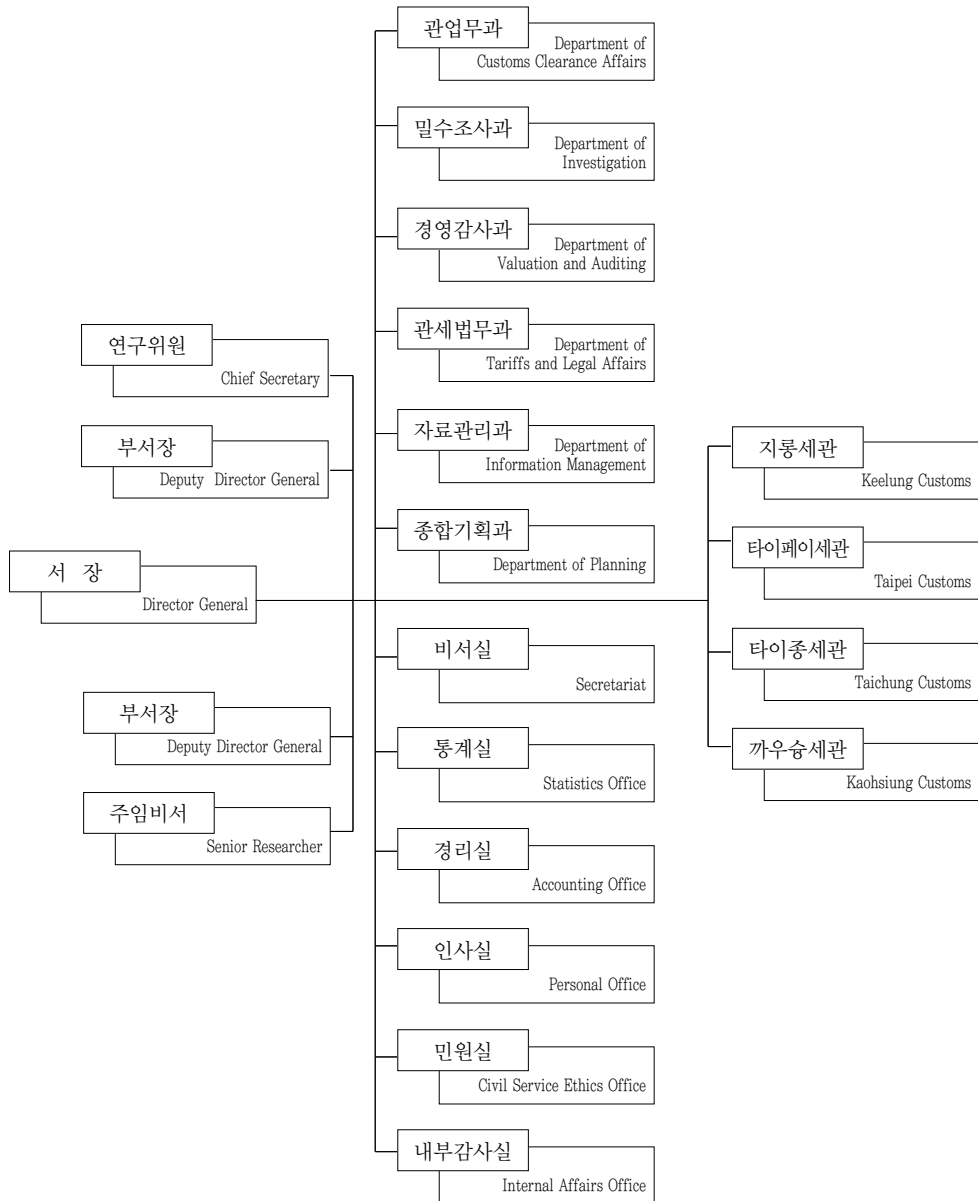
제1절 일반사항

1. 관리 및 법률체계

□ 관리체계

- 관무서(關務署) *: 대만 수·출입 통관 업무는 “관무서(關務署)”에서 관할하며, 국가 재정부에 소속되어있음
- 관무서가 관리하는 직속 세관은 지룽(基隆) 관세국, 타이베이(台北) 관세국, 타이중(台中) 관세국, 까우슝(高雄) 관세국이 있고, 그 이하 10개 분국(分局) 및 지국(支局)으로 세부관할 함
- 2012년 관세 수입은 지룽 관세국 NT502억(52.9%), 까우슝 관세국 172억(18.1%), 타이중 관세국 NT143억(15.1%), 타이베이 관세국 NT132억(13.9%)로 지룽 관세국이 50%이상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
- 관무서 및 직속 관세서 업무범위 : 관세 징수, 밀수단속, 보세 및 관세 환급 관리, 무역통계, 조항설비관리업무, 타 기관 위탁 세금징수 및 관리, 수출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항공 여객 홍·녹색선 관리(항공화물 통관유무 분리 관리) 등

관세총국 및 직속 세관 조직도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 일반 화물의 수입 통관 방식

- 통관 신청인 : 수입화물통관 신청 및 납세 의무자(수입업체 및 위탁 관세사)
- 통관 기한
 - 수입 화물 도착 후 15일 내 수입 통관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인터넷 연결방식의 통관 기한은 통관 인터넷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미 연결 방식은 서면 수입 자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수출입화물 통관예행 처리준칙」에 의거하여 화물 운수업체는 화물도착신고를 하고, 통관 신청인은 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선행(先行) 수입신고를 함

□ 세관 자동화 시스템 접속 방식

- 2013년 9월부터 통합화된 통관인터넷 접속 및 단일 창구 이용을 통한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통관인터넷 이용(재정부 海關通關係通, 교통부 航港資訊網, 경제부 便捷e網 통합)
 - ▷ 재정부의 통관 전용 사이트에 연결하여 INVOICE, B/L(D/O)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세관 규정 방식에 따라 입력 후 전송함. 해당 수입품의 수입방식이 선별되며 C1, C2, C3 방식에 따라 수입납세통지서, 서면 및 자료수정 요청 통지, 반출허가 통지 등을 회신 받으며 수입 통관 과정을 검색할 수 있음
 - ▷ 업체 통합 인증서 취득한 후 인터넷상에서 통관 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면자료 직접 제출 방법 : 수입면장 및 수입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한 뒤 세관원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행 상신한 후 절차는 통관 인터넷 이용자와 동일함
- C1, C2, C3 방식
 - C1 : 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원칙상 서류 및 검역 면제이나, 제한적 상황인 경우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 내 보완 자료를 발송해야 함
 - C2 : 서면자료 심사
 - C3 : 서면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

※ C2, C3 : 세관 시스템 선별적 통관 방식에 따라 C2 또는 C3 방식 처리 시 통지 접수일
익일 정상 퇴근 전까지 서면 자료 발송

○ 컨테이너화물 검사 및 반출 신청

- 컨테이너를 컨테이너터미널에 배치한 뒤, 「수출입 화물 검사 준칙」에 의해 선
박근처 검사 및 선 반출을 신청함
- 신선제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긴급 뉴스 및 그 자료, 위험
물, 방사선성 원소, Bulk 화물 등은 보세창고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선박근처
에서 검역 후 반출 또는 검역 면제 후 반출함
-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금 납부 후 통관되며, 사후에 재심사 후
과납함.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 및 보증금을 이용하여 선 반출 할 수
있음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 현금 또는 정부 발행 공채
 - 은행 정기 예금
 - 신용협작사의 정기 예금
 - 신탁투자업체의 1년 이상 보통 신탁증빙
 - 여신금융기구의 보증
 - 담보 가치로 변동 및 보관이 용이하며 재산권 분류가 없는 것

□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關港貿單一窗口)」로 인한 인터넷 통관시스템 통합 서비스
실시

- 기존의 재정부 海關通關係通, 교통부 航港資訊網, 경제부 便捷e網 등 3개 기관
의 각각의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던 방식을 통합하여 창구 단일화를
시키고 보다 빠른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계획 동기
 - 세계적인 국제무역 통관의 전산화 및 통합화의 발전추세로, 대만도 이에 발맞
춰 경제발전과 무역의 가속적인 발전 및 기업의 경영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

을 위해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무역의 우수한 온라인 시스템구축 계획으로 무역환경의 간편화, 안정화, 스마트화 및 국제화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 계획 하에 「우수경제무역온라인계획」의 「스마트 환경」 계획을 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본 계획은 현재 통관의 우수한 자동화 시스템을 기초로통관, 심사, 항구업무 등을 결합하여 기업과 정부기관의 전문화된 경험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및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계획 목표

- 국제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물의 신속한 통관 및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통관 항구의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음. 계획 목표는 다음과 같음

- ▷ 우수한 단일 통관 창구를 건설
- ▷ 3대 자원시스템(재정부 海關通關係通, 교통부 航港資訊網, 경제부 便捷e網)의 통합
- ▷ 무역자원의 조화
- ▷ 통합된 서비스 제공
- ▷ 상품자료의 창고 건립
- ▷ 국제시스템과의 연결계획

○ 통관 항구 단일창구 서비스의 평가

- 정부차원의 정보교환 시스템으로 대만의 공신력 및 공권력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빈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구현
- 대만의 각종 무역 심사, 통관 및 항구신청업무를 통합하여 기업 및 일반 대중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업무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손쉽게 취득 할 수 있음

○ 항구 무역 단일 창구 운영 실시를 위한 온라인 통관 작업절차가 수정

- 2013년 9월 4일 수정 발표 및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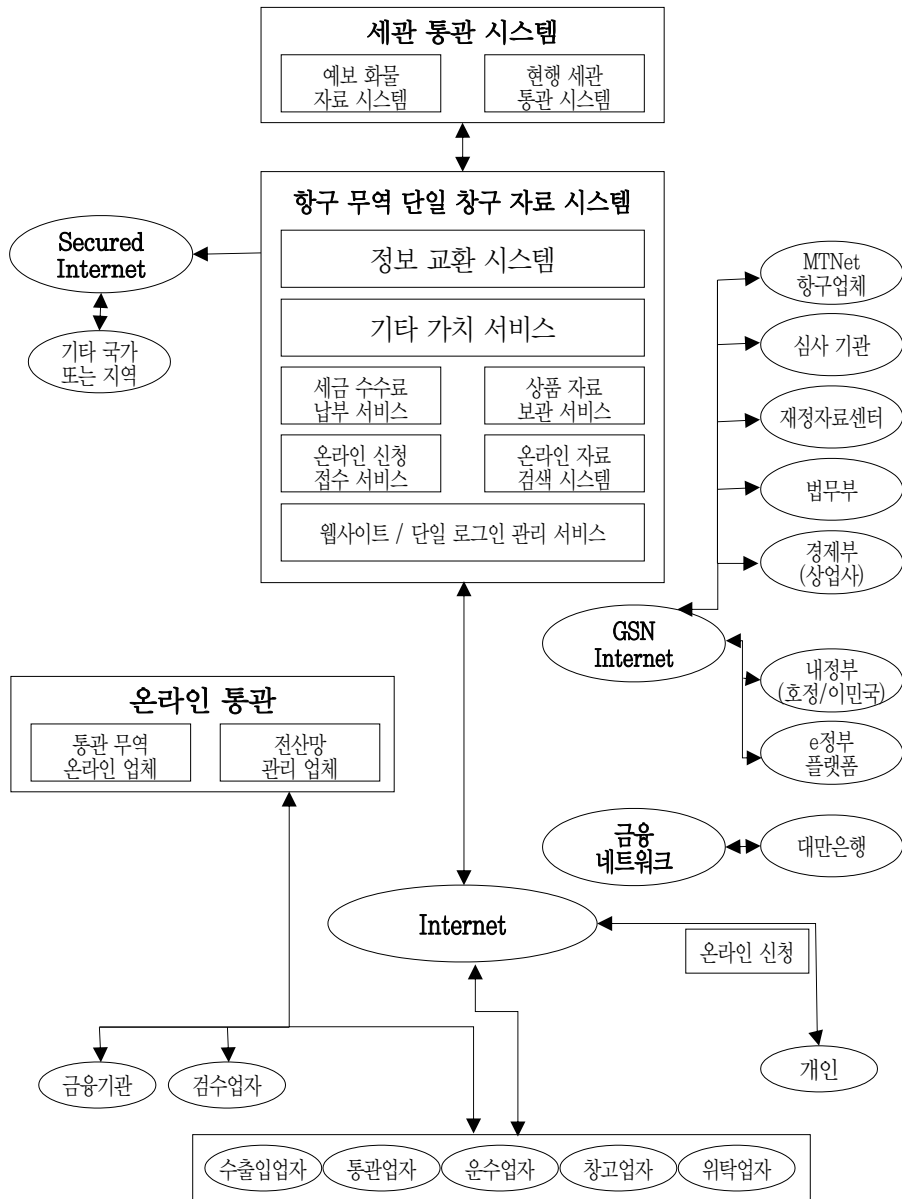
○ 수정된 「온라인 통관 작업절차(網際網路報關作業程序)」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 온라인신청 / 세금 납부
- 세금 납부 시스템
- 통합 로그인 시스템(인증서사용)
- 온라인 세관신청 시스템
- 온라인 세관신청 위탁시스템
- 온라인 신고서 사본발급 시스템
- 도서지방 면세점 시스템
- 컨테이너 자료 온라인 검열조사시스템
- 우수기업(AEO) 신청데스크
- 위탁가공화물 원재료 명세 시스템
- 화물 리스크 관리 시스템

○ 해당 웹사이트 : <http://portal.sw.nat.gov.tw/PPL/>

<http://portal.sw.nat.gov.tw/PPL/home/Summary?detailId=1376849368109>

■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 시스템 운영 개요 ■



자료 : CPT 무역통관창구단일화 홈페이지

4. 수입 신고 구비 서류

- ☐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1부 : 통관 인터넷 미연결자는 수입 신고 시 D/O 1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통관 인터넷 연결자는 운송업체에서 자동적으로 별도 제공함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INVOICE(Commercial invoice) 1부
- ☐ P/L(PACKING LIST) 1부 : Bulk 및 단일 box 포장일 경우 제출 불필요. 단 2box 이상일 경우는 그 명세를 제출해야함
- ☐ Container Loading List 1부 : 1개 Container 이용 시 제출 불필요. 단 2개 이상일 경우 그 명세를 제출해야 함
- ☐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 I/P) : 수입통관 완료 후 받는 허가증
 - 「수입제한 화물 목록표」 외 화물 중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대상
 - 경제부 국제 무역국에 등록된 수출입 업체
 - 정부기관 또는 공영사업
 - 사립 초등학교 이상 학교 기 입안 건(수출입 업체 수속)
 - 입국 여행 및 선박 항공기 서비스 요원 휴대 수하물(세관규정 범위내 수량 및 금액)
 - 해운, 항공, 국제택배 등 수입제한 품목 외 FOB조건 US\$20,000불 이하인 물품
 - 인도적 구제 물자
 -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 주 대만 재외기관 서명이 된 자료를 통해 공공·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면세 협조 요청
 - 증여용으로 소량 수입되는 경우
 - 기타 경제 무역국 허가품
 - 무역국이 편성한 「세관협조검사수입품표(海關協助查核輸入貨品表)」의 면제품 품목일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 「便捷貿易網」을 통해 수입신고서 내용과 부합된 업체는 면제 처리됨

- 수입신고서 제출면제 적용불가 대상
 - 「수입제한 화물 목록표」 내의 화물
 - 중국산 물품 : 수입규정의 〈MP1〉 표기 화물, 「중국산 물품 조건적 수입허가 항목」, 「수입관리법규총칙표」 내 “MXX” 코드 지정항목, 「중화민국수출입화물분류표」의 수입규정번호 “121” 표기 항목

□ 위임서 1부

- 서면 상 통관 대리인과 납세의무인의 공동 서명
- 인터넷 이용 통관자에 한해 서면자료 보완 시 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의 인장 날인의 면제를 허가함
- 장기 위임서 첨부 면제 대상
 - 보세창고 및 물류 센터
 - 세관 직할 가공 구역
 - 세관 직할 농업과학원 및 공업과학원
 - 보세 공장 및 가공 수출 구역 내 사업
 - 세관이 허가한 선박 근처 검사 및 방출 안전
 - 선 반출 세금 납입 후 담보 안전

□ 물품 가격 신청서 2부

- 특수 관계 유무, 무역 조건, 비용부담 정황 보고
- 첨부 면제 대상 : 여행객 수화물, 우체국 국제소포, 샘플, 증여품, 면세화물, 정부기관 및 공영사업 수입 화물, 보세공장, 가공수출구역, 농업과학기술원 및 과학공업원 사업에 필요한 보세 화물

□ 수입 허가증 관련 항목 : 원본 제출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기타 규정 상 농약제품은 농약 허가증 및 농약판매업자격증 필요

5. 원산지 규정 사항

- ☐ 원산지증명 해당 규정은 「관세법」 「원산지인정표준」 「세관인정수입화물 원산지 작업요점」을 표준으로 함
- ☐ 수입제품 원산지 제출 구분
 - 일반 화물의 원산지 인정
 - 후진국의 원산지 인정(관세 우대국)
 -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관세 우대국)
- ☐ 화물 원래 포장 상 원산지 표기가 선적서류 내용과 비교했을 시 부합해야만 기타 원산지 증명자료 요청이 면제됨
- ☐ 원산지 인정 과정 중 의의가 있을 시 세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 증명 또는 샘플 제출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명 문건은 무역서류, 원자재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자료 등 기타 관련자료 모두를 포함함
- ☐ 수입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경제부 등의 기타 공공기관에 협조의뢰를 할 수 있고, 협조의뢰 후 20일 내 서면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현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함
- ☐ 원산지 인정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물품 검역 기간도 2개월로 연장되지만 단 1회에 한하며, 검사기간의 연장을 수입자에게 통보함
- ☐ 원산지 인정 시 최종 실질성 변형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질성 변형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경제부 및 재정부가 별도 지정한 특정 원산지 인정기준 국가 수입품 제외)
 - 원자재 가공 또는 제조를 거쳐 생산된 화물과 그 원자재가 수입세칙코드 앞자리 6자리 수가 상이할 경우
 - 상기 사례와 같이 앞자리 6자리 수가 일치하나, 다른 중요 제조과정으로 완성되

거나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일 경우[부가가치율=화물수출가격(FOB)-직간접 수입원료가격(CIF)/ 화물수출가격(FOB)]

- 앞자리 6자리 수가 변경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실질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운송 혹은 저장 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출하, 선적 시 분류, 등급, 분리포장, 별도 번호 표시 또는 라벨 재부착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조합 또는 혼합 작업을 통해 그 조합 및 혼합 전과 그 화물 특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
 - 간단한 절개 또는 봉합 조립 등의 가공 작업을 한 경우
 - 간단한 건조, 희석, 농축 작업으로 화물 자체를 미 변경한 경우

□ 세척분류표 제2란에 해당하는 관세 우대국 상품 판단기준

-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인 경우
- 한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생산된 광산물, 동식물 및 그 취득품, 어류 등
-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신청 등기한 선박이 어획한 어류 및 그 제조품
- 한 국가 또는 지역의 해양 영역에서 발굴한 해양 상품
-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및 제조 후의 잉여분 또는 폐기분
-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상기 항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로 정함

□ 저개발국의 수입화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

-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인 경우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그 부가치세가 50%이상이어야 함

- 단, 대만의 원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 후진국 화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운송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원산지가 인정됨
 - 수출국에서 직접 대만으로 운송
 - 제3국을 경유 시에는 화물 운송 기간 내 상품의 적재 외에 가공 및 기타 작업을 해서는 안 됨

6. 수입물품 품목분류

- 관세는 「중화민국 통관 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의거하여 품목이 분류되며 수입세칙이 정한 3가지 세율 방식으로 적용됨. 제1란 세율은 세계무역 조직 위원 또는 대만과 우혜 관계 국가의 수입품, 제2란 세율은 특정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서약한 국가의 수입품. 제3란은 제1란 및 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일 경우에 해당됨
- 한국 수입품은 제1란 관세율이 적용됨

■ 세칙분류표 제2란 해당 국가 ■

국가명	관련 협정 및 설명	적용개시일
파나마	파나마 자유 무역 협정(FTA)	2004년 01월 01일
과테말라	과테말라 자유 무역 협정(FTA)	2006년 07월 01일
니카라과	니카라과 자유 무역 협정(FTA)	2008년 01월 01일
살바도르	살바도르 자유 무역 협정(FTA)	2008년 03월 01일
혼도라스	혼도라스 자유 무역 협정(FTA)	2008년 07월 15일
중국	ECFA양안무역협정 초기수확명단 수입품에 한함	2011년 01월 01일
LCD후진국	CDP(연합국개발정책위원회 지정한 후진국 국가	2005년 2월25일
뉴질랜드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	2014년 1월

자료 : 재정부 관세서(財政部 關務署)

- ☐ 2011년 대만의 평균 관세율은 5.89%이고,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13.88%,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4.23%임
- ☐ 대만은 자체적으로 총 11자리의 C.C.C CODE를 이용하며, 앞의 6자리는 국제적인 HS CODE와 동일함
- 관세 검색 : <http://web.customs.gov.tw/Rateweb/search1.aspx>

7. 통관관련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 ☐ 수입화물 통관 비용 지불 방식
 - 인터넷 상에서 비용 자동 지불
 - 수입화물 선 방출 이후,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 후 지불 방식
 - 송금 방식으로 거래 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구를 통하여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고입금 계좌로 송금 대행을 함
 - 현금 지불 방식으로 세관의 세금 수납처에 직접 지불함
- ☐ 통관관련 비용은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수입품에 한해 관세 및 특별 관세를 제외하고 세관이 일괄로 대리 수납하고 있음
- ☐ 세금완납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 : 完稅價格
 - 수입 화물의 관세 및 기타 비용을 계산 시, 그 세금완납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정함(거래가격 :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까지 판매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격)
 - 세금완납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 수입자 부담의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비
 - 수입자가 수출자와 사전 협의한 생산 및 판매단계 시 관련된 물품비 또는 용역비(원자재 조립 시 사용된 부품, 모형, 설비, 생산 시 사용되는 소모품, 용역비 등)

- 교역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불하는 권리금 및 대가
- 수출자에게 실제 지불하는 물품 대금
- 수입 항구까지의 운임비 : 선적 및 운반비
- 보험비
- 세금완납가격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
 - 화물 수입 후 공장, 기계설비, 건축, 설치, 조립, 수리, 기술합작 등의 비용
 - 수입 후의 운임
 - 물품대금 연체 및 연체이자
 -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 관세 : 관세법 및 관세법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 적용 방식은 3가지로 나뉨
 - 종량세(從量稅) : 수입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정함. 그 각 수량 단위의 세금완납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가격)기준으로 계산함(종량세=세금완납가격×수량)
 - 종가세(從價稅) : 수입화물의 가격 및 그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고, 일반 화물의 대부분이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됨(종가세=세금완납가격×세율)
 - 복합세 : 동일 과세 코드 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여 과세 징수함
- 특별관세
 - 평형세 : 정부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준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함
 - 반덤핑세 : 수입물품이 정상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함
- 무역진흥 서비스 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 1993년 이후부터 실시한 무역법 제21조 무역법 세칙 17조에 근거함
 - 세관 수출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완납가격(CIF가격)의 0.04%에 해당됨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됨

○ 수납방식

- 수입품 : 수입 세금 수납 시 동시 수취
- 수출품 : 수출 후 분기별로 세관에서 납세증 발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4일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세증 유실 시 재발부를 요청해야 함

○ 미납 시 경제부 무역국의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및 세관처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

□ **화물세 :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세금 적용이 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납해야함**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 =세금완납가격(CIF가격)+수입세 세율

○ 종가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화물세율표(화물세조례 참조)

○ 종량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화물세(단위) 세액

○ 화물세 조례에 기재된 화물세 면제 대상일 경우 수입 시 면제됨

- 제조 후 화물세가 별도 지급되는 상품의 원료
- 전시회 참가 등 국내 비매품일 경우
- 군사 증여품
- 국방부가 허가한 직접 군용 화물로 사용될 경우

□ **영업세(Business Tax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 5%**

○ 영업세액=세금완납가격×영업세 세율

○ 영업세는 가치형과 비가치형으로 영업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 시 세관에서 대리 수납함

□ **담배·주류세**

○ 담배세 : 세금 징수 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 일반담배 : 1,000개 당 NT\$590 징수
- 담배가루 : 1 KG 당 NT\$590 징수
- 시가렛 : 1KG 당 NT\$59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590 징수
- 주류세 : 세금 징수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 양조주류 : 맥주는 1 리터당 NT\$26 징수, 기타 양조 주류는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7 징수
 - 증류주류 :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2.5 징수
 - 합성주류 :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이상인 경우 NT\$185 징수
 - 요리용 주류 : 1리터당 NT\$9 징수
 - 기타 주류 :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7 징수
 - 알코올 : 1리터당 NT\$15 징수

☐ 담배 건강 복리세 : 담배 관련 품목에 대한 별도 추징세

- 일반담배 : 1,000개 당 NT\$1,000 징수
- 담배가루 : 1 KG당 NT\$1,000 징수
- 시가렛 : 1 KG당 NT\$1,00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1,000 징수

☐ 특종화물 및 노무세 : 관세를 비롯한 기타세금의 합계가 일정 금액에 달했을 경우
10% 세금을 추가 징수함(자동차, 유람선, 헬리콥터, 비행기의 경우 Kg 당
NT\$300이상, 가구, 산호, 상아, 피혁 등의 상품인 경우 Kg 당 NT\$50)

☐ 통관 비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기타 비용

- 관세법 제 101조에 의하면 “세관의 수출입 운수도구 및 화물에 대한 특별 서비
스 및 허가 증명에 대한 특별비용은 재정부의 「세관징수비용규칙(海關徵收費用
規則)」으로 시행함

- 기타 부대비용 범위: 특별검사비, 특별감시비, 이송비, 컨테이너 봉합비, 선적 서류 입력 대행비, 증명서 발부비, 보관비, 등기증 및 자격증 발송비, 조항서비 스비, 서비스비가 해당됨

비용 항목	적용 범위	비용 (NT\$)	징수 기준	징수 대상	준비 문건
특별 검사비	(1) 세관이 허가한 창고, 컨테이너 집산지, 항공화물집산지, 선적 부두 이외 지역에서 화물 검역을 실시할 경우 (2) 선박(항공) 근처에서 수출입 화물 반입 및 반출 검역이 실시되는 경우 (3) 화주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재검 또는 특별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4) 화주의 부실로 인해 제2차 검역을 요청할 경우 (5) 근무 시간 외 검역 요청	건별 1,000	매1회	화주	신청서 또는 수출입 신고서
특별 감시비	(1) 세관원을 파견하여 수입화물을 감시할 시 징수함 -선박 1척 감시 -창고 화물집산지 감시 비용 -보세 운수 도구 및 기타 감시비용 감시 -근무시간 외 감시 요청	2,000 1,000 450 450	매1회	화주	특별 심사 신청서
이송비 (보세구역 내)	보세구역 내 수입화물 (1) 수입화물 이송 -화물컨테이너창고입고 및 출고 비용 -창고 컨테이너 집산지 또는 항공 -화물 집산지에서 선박까지 이동 -선박 항공 화물 선적 하적 -타항구 이송 및 내륙 창고 이송 -물품 transfer (2) 다른 관할 구역 이동 시 -150Km이하 -150Km이상 -250Km이상	600 700 1,000 1,200	매1회	창고업주 선박 및 항공사 화주 운송업체	특별 심사 신청서
컨테이너 봉합비	컨테이너 봉합 비용	100	컨테이너 1대 당 매1회	신청인	신청서
선적서류 입력 대행비	자동화 시스템에 전자 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세관원이 대행 입력 할 경우 (1) 수출입신고서 1부당 NT\$200 (2) 선하증권 페이지별 NT\$200	200	매 1부 매 1page	신청인	신청서 수출입 서면 신고서

비용 항목	적용 범위	비용 (NT\$)	징수 기준	징수 대상	준비 문건
증명서 발부비	세관의 요청에 의해 증명서를 발부 시 징수되는 비용	100	매 1부	신청인	신청서 수출입 서면 신고서
물품 보관비	항공 및 선박 여객이 휴대한 물품 보관비용. 세관 창고 3일 이내 물품이 수령되지 않을 경우 4일째부터 징수	250	일별 건별	신청인	
등기증 및 자격증 발부비	컨테이너 집산지, 항공화물집산지, 면세점 보세창고 물류센터, 보세공장 등을 이용할 경우 세관이 허가한 등기증 및 자격증을 발부함	2,000	매 1부	신청인	
서비스 비용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집산지 등은 월별 그 서비스 비용을 징수함	6,000	월별	창고주및 컨테이너 집산지 업주	
조항 서비스 비용	대만항구에서 선박이 조항서비스 시설 이용 시 징수됨 (1) 건당 징수 : 톤당 (2) 정기 징수 150톤이상-톤당 150톤이하 톤당	NT\$2 NT\$6 NT\$3	운수업체	운수업체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8. 수입관세의 감면, 환급, 추가 징수

- ☐ 법정 관세 면세품 항목 : 재정부가 정한 면세품 품목 규정(단, 재정부가 공고한 특정물자는 면세품 항목이라 하더라도 면세적용 불가)
 - 총통, 부총통 사용 물품
 - 주대만 대사관, 외교관, 영사관과 기타 외교기관의 자가용 또는 공적인 용도의 물품 단, 각 국가의 對 대만 우대 정책도 동일함에 한함
 - 외교기관의 국제 우편물, 정부 파견 국외 기구의 자가용품
 - 군용물자(군사기관이 수입하는 군용무기, 설비, 차량, 군함, 항공기 및 그 부속품)
 -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한 구제물품 및 공익단체의 구제물품 수입 및 구급용품

- 공·사립 각 학교, 교육,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교육 연구실험의 필수 용품, 국제 시합에 참가하는 단체의 운동 기구
- 외국기관 및 정부기관이 단체 증여 훈장 및 기타 장려품
- 공, 사적인 서류 및 기타 유사한 물품
- 광고품 및 샘플,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제한한도 이하의 물품
- 대만 원양어선의 수산물 반입 또는 대만 정부가 허가한 대만 해외투자설립 업체의 반입 물품
- 대만 지역 내 적발된 침몰한 선박 및 추락 항공기 기기
- 만 2년 이상의 대만 선박의 사용 기간 초과 및 기타 원인에 의한 해체품(단, 선박 내 각종 설비 용품, 도구, 대비용 물품, 기 주입된 유류 및 가스 등은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음)
- 국제 무역용 선박, 항공기, 기타 운수 도구의 전용 연료. 단, 외국 국적의 운수 도구인 경우 해당 국가가 對 대만 우대 정책이 동일 할 경우 적용함
- 여행객이 휴대하는 제한 범위 이하의 자가 용품
- 수입 우편물 수량이 제한 범위 이하인 물품
- 대만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증정용 방역약품 또는 의료기구 물품
- 대만 정부기관의 구제용품 수입 및 외국의 구제용품 기증물품
- 대만 국적의 선원이 휴대한 자가용 물품

□ 정황적 심의, 비준에 따른 관세 감면

- 국외 운송 도중 또는 하적 시 파손 변질되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
- 하적이후 검역이전 천재지변, 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파손되어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세관 검사 시 이미 파손 부패되어 창고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

- 세관 반출 이전, 수입자가 이미 반송신청 및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세관 반출 이전, 화물의 내용물이 자연 감소하여, 그 감소된 부분의 감면처리를 인정받았을 경우

□ 반송으로 인한 관세 감면

- 배상 및 교환을 요청한 경우 : 물품 파손, 변질 및 계약 시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인해 수출업체에게 배상 및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반환 및 재수입 시 면세를 적용함. 단,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신청하며, 그 사실 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반환 비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환품을 재수입해야 하며, 6개월 재연장 신청이 가능함
- 면세품 및 비매품 반송 및 반입인 경우
 - 샘플, 과학연구용품, 실험용품, 전시용품, 유람단 용품, 촬영용 카메라 및 기구, 기기 수리용 용품 등
 - 수입 후 반송 : 법정 면세품 및 기타 재정부가 수입허가 한 비매품은 수입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재정부가 허가한 기간 내 수입, 원상태로 반환할 경우 관세가 면제됨. 수입신고 시 원 출항지, 수출일자, 운수도구 명칭, 수출신고서 번호 등이 일치해야 면제가 적용됨
 - 수출 후 반입 : 법정 면세품 및 기타 재정부가 수입허가를 한 비매품은 수출일 익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정부가 허가한 기간 내 수출, 원상태 반입할 경우 관세 면제됨. 수출 신고서 상에 품명, 브랜드명, 규격 및 수량, 반입기한 이내 준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납세 의무자가 임시 통관증을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 이후, 임시 통관증 만료일 이내 원상태물품을 재수출입 할 경우 면세가 되지만 그 기간을 초과 할 시에는 정상 납세함

□ 양도, 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 당초의 수입 납세의무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물품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양

도일로부터 30일 이내 하기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세관에 양도 신청 후 추가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 서류구비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징수 시 세관은 속결 처리함

- 당초 수입 시 제출된 INVOICE
- 관세 감면된 화물일 경우, 기 납부한 관세 영수증을 첨부함
- 수입세 감면 관련 증명서

- 수입세 분납 납세자인 경우는 양도 받는 자가 지속적으로 분납하여야 하며, 그 분납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그 자격 미달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고 일시불로 지불 완납하여야 함

□ 원자재 수입 관세의 환급

- 수출품의 원자재 수입 관세는 재정부가 공고한 환급 취소 항목을 제외하고는 완제품 수출 후 원자재 수입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수입원자재 반입일 익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수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며, 기한 초과 시 환급신청이 불가함. 특수 상황인 경우 1년 재연장이 가능하며, 1회로 제한함
- 기 납부된 수입관세를 반환하는 경우
 - 수입 후 1년 내 판매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해, 금지일 익일부터 6개월 내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시에 따라 폐기 처분된 물품
 - 물품 반출이전 천재지변, 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파손되어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세관 반출 이전, 수입자가 이미 반송 신청 및 허가를 받았을 경우
- 관세 과다 및 과부족 징수 또는 과부족 및 과다 환급
 - 기 납세분의 보충 및 반환은 1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관세 납부일 익일부터 계산함. 세금 납세일로 부터 보충 및 반환일까지의 적용세액은 우체국 1년 정기저축 고정이율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일괄적으로 추가 징수 및 반환됨
 - 기 환급분의 보충 및 반환도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세관 통지서 발부 익일부터 계산함. 발부일 부터 14일까지 적용세액은 우체국 1년 정기저축 고정이율 기

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14일 만료 익일부터 납세일 까지 세액은 지체금액 1일 당 0.0005%가 가산됨

9. 수입화물 관련비용 지체금

☐ 관세 납입 과태료

- 납세기한은 납세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관세 과태료(1일당 0.05%씩 추가) = 관세×연체일수×0.05%

☐ 수입신고 지체상금

- 수입신고는 화물 도착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그 기한을 초과했을 시, 초과일 익일부터 일자별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부과함(NT\$200×지체일수)

☐ 영업세, 화물세, 특종화물 및 노무세 기타 과태료

- 지체일 30일까지 2일마다 1%씩 추가
- 30일 이상은 일괄 과태료 이자율로 계산함

10. 세법 및 규정위반 시 집행사항

- ☐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 및 납부지체금은 정해진 기간 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집행됨(지체상금 및 그 이자율 증가, 정부기관 몰수 및 경매)
- ☐ 검사회피 및 서면서류 제출 거절 시 NT\$3,000~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하며, 연속 거절자는 연속 처벌을 받음
- ☐ 보세창고 및 관세 면제 원자재를 방출한 자는 밀수화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세관밀수조례」 규정으로 처벌함
- ☐ 납세의무자의 양도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보충 납세는 14일 이내로 하고 기한을

위반할 시 14일 만료 익일부터 납세일 까지 지체상금 일자별 0.0005%가 추가됨. 상기 규정을 위반 시에는 보충 납세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징수함

- ☐ 수출입신고, 운수창고, 컨테이너터미널 등 통관업무자가 관련 통관자료를 세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경고 및 NT\$6,000~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 ☐ 운송업체, 관세사, 보세창고, 컨테이너터미널, 물류 센타 등에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 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경고 및 NT\$6,000~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연속 3차 처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겨우 6개월 이하 통관 대행 업무 정지
- ☐ 국제 택배업체가 택배 통관업무 규정을 위반 할 시, 세관의 경고 및 NT\$6,000~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연속 3차 처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통관대행 업무를 정지시킴
- ☐ 비 허가 물품 수입 시, 세관의 2개월 내 반송명령에 납세의무자가 물품권 포기서에 서명하거나 불법으로 반송처리하면, 세관은 화물을 몰수하여 경매함. 경매 및 공개판매를 통해 획득한 금액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귀속
- ☐ 불법 수입 물품은 경매되어 국고로 귀속되나,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하적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 판매가 불가하고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감시 하에 자체 폐기처분을 해야 함. 폐기 완료일까지 미처리한 경우 세관이 소각 및 폐기 처리 후 그 관련 비용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킴
- ☐ 수입 불가 물품이 관세 및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선 반출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속히 반송 통보를 하고, 이미 반송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그 보증금이 물품대금 보다 적을 경우 추징금을 부과함
- 세관은 분기별 또는 일정기한 이내 밀수 및 규정위반 물품에 대한 경매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며, 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함

11. 수입 관세법 변동사항

□ 관세법 개정

- 華總一義字第1020010127號에 의거하여 2013년 5월 29일 관세법 제10-1조, 제17조, 제27조, 제71조, 제96조를 수정 공포
- 제10-1항 : 관무서, 공항 및 항구, 무역심사, 검역과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자료를 관세사 등 그 위임기관의 전자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세관에 설치된 무역 통관 단일창구(關港貿單一窗口)를 이용
- 제17조 : 수입 신고 시 화물수입신고서, invoice, packing list 및 기타 수입 필수 서류를 제출 (B/L 제출사항이 삭제됨)
- 제27조 : 통관 가속화를 위해 국제택배, 우체국 국제소포는 특정장소에서 통관 처리 함국제 택배 통관장소의 설치조건, 지점, 택배화물종류, 화물배상, 통관과정 및 기타 준수사항은 재정부가 정한 것으로 함. 우체국 국제소포의 통관장소, 통관처리금액, 조건, 신청 및 수령 및 기타 준수 사항은 재정부가 정한 것으로 함(우체국 국제소포 상기 통관 사항은 재정부의 권한으로 귀속)
- 제71조 : 국내 또는 국제 특수 상황에 대응하고 물자 공급 및 산업 합리적 경영을 위해 수입화물 관세 또는 관세율은 세관 수입세칙규정 내의 세율 또는 수량의 50% 내에서 증감이 가능 단 대중화물 가격이 대폭 변동 시 100% 내의 증감이 가능하고 증감세율 및 수량 증감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함. 관세율 또는 화물 종류의 수량 증감, 개시 및 정지 일자 등은 재정부는 유관기관과 상의하여 제정하게 하고 행정원이 비준함 (기동 관세율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재정부는 관련 기관의 “동의” 하에 제정함=> “상의”라는 단어로 교체함)
- 제96조 : 수입 불가 화물에 대해 세관은 납세 의무인에게 기간 내 반송할 것을 명령함 ;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서명 포기각서 또는 기간 내 반송하지 않은 화물은 세관이 그 화물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을 제한 후 국고로 귀속함. 이미 보증금 또는 세금징수액이 납세된 이후 세관이 처분 기간

내 반송 명령을 받은 화물로 입증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세금 징수액은 납세처리 않음. 세관은 수입 불가 화물의 처분기간 내 반송처리 및 전항의 보증금 또는 화물 추가 처분 비용이 미납처리 된 경우, 통관 익일부터 5년 기한 내 처리완료 (상기 사항 신규 제정됨)

12. 통관규정 변동사항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3/7/23	台關緝字 第1021015882號	‘재정부 관세총국이 관리하는 관세국 컨테이너검사 작업 주요사항’의 제2,3,4항을 ‘재정부 관무서가 주관하는 컨테이너검사 작업 주요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2,3,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항 각 관련 검사(의무 검사)부 순찰과는 직권 검사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각 해당 정보실에 인력을 파견을 요청하고 협력해야함 제3항 각 관련 검사(의무 검사)부 순찰과는 수시로 기 완료된 검사와 전산 통관 기록을 관련 관청의 해운, 항공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참고 하도록 제공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항 각 관련 검사(의무 검사)부 순찰과는 원래 검사 부서에게 통지하고, 납세의무인 또는 통관업자에게 화물 적하 재검열을 할 수 있음. 단 필요시 각 관련 검사(의무 검사)부 순찰과는 기타 적합한 장소에서 재검사를 해야 함. 선박(항공)측 검사안건은 각 관련 기관의 검사(의무 검사)부 순찰과와 화물 검사 담당자는 검사 방식에 따라 실시함
2013/7/31	台關緝字 第1021011938號	‘보세(관세의 부과가 보류됨)화물 창고 운영 강화의 주요 사항’ 제4, 5항 수정 제4항 보세화물 창고 사용 신청 시, 감시를 더욱 강화 할 것.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사람을 파견 해 압류해야 함 1. 고 위험군에 속하는 화물이며 세율이 10%이상인 것 2. 양주, 담배(맥주, 항공회사전용, 대만주류담배공사 및 양주 및 담배 대리점의 수출입일 경우 압류 할 필요 없음) 3. 민감성 농수산물 4. 민감성 전자제품(고가, 고세율의 화물) 5. 기타 관리대상 제품 전항 중 하나의 사항에 일치하는 자 중 압류할 필요는 없으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 :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1. 납세의무인 혹은 화물수출입의 안전 인증을 받은 우량기업 2. 화물검사결과 결함이 없거나 전자 봉인에 이미 통과한 컨테이너 3. 동일한 보세관제 내 이동하는 화물 4. 각 기관 직권으로 심사한 경우 제5항 삭제
2013/8/16	台財關字 第10210181722號	「무역 통관 창구 단일화 운영 실시 방법 (關港貿單一窗口運作實施辦法)」 관세법 제10-1조 3항에 의거함 1. 본 사항은 정부와 기업 간 신청하는 방법이며, 참여기관 사이에 자료교환 및 국가 간 자료교환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2. 관리 상 자료 봉인, 수집, 처리, 이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재정부 관무서 주관 3. 참여기업은 통관업무, 선박, 무역심사, 검사 및 검역 등의 규정을 신청 혹은 수출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 시 본 창구에 인터넷 혹은 전자자료 전송시스템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단, 전자자료 전송시스템의 방식을 사용하는 자는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통관홈페이지 및 단일창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 4. 전항의 본 단일창구의 초기운영기간에는 재정부에서 공고 단일창구는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2013/8/16	台財關字 第1021018443號	컨테이너의 통관관리 방법 「海關管理貨櫃集散站辦法」 부분 수정. 제9조 (기관명칭 변경) 재정부 관세총국 - 재정부 관무서 제19조 (삭제) 운송장치가 수출용 컨테이너를 장착 한 후 운송업자는 선장 혹은 지정된 사람에게 수출컨테이너 명세서와 사인을 2부 받고, 통관상 문제가 없을 경우 1부는 남기고, 1부는 수출업자에게 송부
2013/8/16	台財關字 第1021018379號	「화물 통관 자동화실시 방법(貨物通關自動化實施辦法)」수정 신청절차 제4조 온라인 신청은 관세법 제10조 규정과 관련하여, 세관 전산망에 기록을 해야 할 경우, 세관은 온라인 통관을 담당하는 업무 또는 단일 창구의 그 전산 파일 코드로 기록함 세관 실시 통관 자동화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항을 제외한 경우, 온라인 통관을 담당하는 업무 또는 단일 창구를 통해 진행함 제5조(기관명칭 변경) 재정부 관세총국 - 재정부 관무서 제26조(기관명칭 변경) 재정부 관세총국 - 재정부 관무서

자료 : 대만 재정부 법규 검색 사이트(<http://law-out.mof.gov.tw>)

13. 우체국 수출입화물 및 국제택배 통관

□ 우체국 수출입화물

○ 관세적용 물품 및 관세징수 작업

- 물품의 CIF가격 기준 NT\$3,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 처리(담배 및 주류 제외)
- 광고품, 샘플은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NT\$12,000 이내 면 면세 적용
- FOB 가격 US\$5,000이하 가치의 우체국 소포는 수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세관이 「소액우편물 수입세지불증(小額郵包進口稅款繳納證)」을 발부하여, 우체국이 관세를 대행 수납하고 반출시킴
- FOB 가격 US\$5,000이상 가치의 우체국 소포는 정상 수입신고 및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함
- 관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영업세, 화물세, 담배·주류세, 담배건강복리금, 무역진흥서비스비 등)은 관세법을 기준으로 우체국에 일괄 대납됨
- 수입 우편물의 세금완납가격(CIF가격)이 NT\$3,000이상인 우편물에 대한 관세 및 영업세 납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 관세=세금완납가격(물품대+우체국 운임비)×관세 세율
 - 영업세(부가가치세)=(세금완납가격+관세)×영업세율(5%)
- 납세 의무자가 세관이 적용한 세칙 및 세금완납가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 및 물품수령이 잠정 불가하며, 해당 우체국에 「국제소포 관세 재검신청서」 작성 요청을 하고 재검신청서의 수신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재검을 요청할 있음

○ 통관 서류 구비

- 국제 소포 운송영수증(물품 인도증) : 수신자명 주소 및 수입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과 부합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 : 일반 수입 화물과 동일함
- 수입 허가증 및 위임서 각 1부 / - INVOICE/ PACKING LIST

○ 주의사항

- 중국 차류, 버섯 수입자는 우체국 운송장의 내용을 근거로 매월 1인 1kg에 한함
- 쌀 수입자는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이 허가한 검역허가증, 양곡 상업 등록증 및 자격증, 중앙신탁국이 허가한 쌀 수입쿼터 분배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kg이상인 자는 경제부 표준 검역국의 검역합격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신선 과일 수입자는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 허가 없이는 수입 할 수 없음
- 우체국 화물 수입 신고 시, 아래 상황인 경우 관세의 2배~5배 범칙금을 지불하거나 몰수조치를 함
 - 화물의 명칭, 수량, 중량에 대한 허위 보고
 - 화물의 품질, 가치, 규격에 대한 허위 보고
 - 검역 위조, 변조

□ 국제택배 수출입 화물

○ 항공 국제택배 화물의 부합 조건

- 관세법이 규정한 수입제한품목, 지적권 침해상품, 살아있는 동·식물, 보호성 야생 동·식물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
- 매 건(box)별 N/W 70kg 이하 물품
- Hand carry : 매 건(box)별 N/W 32kg 이하 물품, 60건(box)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물품 가치는 USD20,000을 초과해서 안 됨
- 통관서류구비 : 국제 택배 업체는 INVOICE(운송장), 식별 code 등을 화물 포장 상에 부착함
- 납세 방법 : 택배 화물의 각종 납세금은 물품 선 반출 후, 실시 규정에 따라 납세함. 사전 보증금을 지불한 자는 시스템 자동 납부됨
- 특별사항 : 국제택배 전용구역 및 항공화물 운송센타의 세관 업무는 24시간 운영됨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 수입규정

□ 수입규정

- 대만의 품목별 통관은 각 CCC코드별 해당 수입규정에 의해서 통관 작업이 진행됨

□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 방법(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개황

- 2001년 12월 14일 행정원 위생서에서 24조 공포 → 2007년 7월 1일 개정법 적용
→ 2011년 1월 1일 최신 개정법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 검역방법>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4월 8일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의 부분 조항 수정
署授食字第1021300813호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 상품을 수입할 시 적용되는 위생안전 및 품질 검사임
- 수입업체는 아래의 서류 및 전자문서를 구비하여 검역기관에 신청함
 - 검역 신청서
 -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 수입신고서 복사본
 - 관할 기관이 지정한 위생 안전 관련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Ⅰ 수입규정 설명 Ⅰ

규정 번호	규 정 내 용
B01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 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식물 검역 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함
F01	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의 규정에 따라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
MW0	중국 상품은 수입 불가
W01	수입산 주류는 재정부 및 행정부 위생서가 발표한 「수입주류검험방법(進口酒類查驗辦法)」 규정에 따라 통관되며, 재정부에 수입검사를 신청함

규정 번호	규 정 내 용
MP1	(1) 중국산 상품의 조건적 수입허가 규정 <대륙상품조건적수입허가 항목, 수입관리 법규정표>에 따라 실시함 (2) <중국산상품 조건적 허가항목, 수입관리 법규정법>내에 M xx의 조건이 붙은 것은 국제무역국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함 (3) 한국산은 이 항목 제한을 받지 않음
463	재정부가 허가한 담배 주류 수입업체 허가 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 문건을 첨부 제출할 것. 자가용 담배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그 수량이 제한 한도 이내 인 물품은 제출 면제함 (一) 일반 담배 : 1000개, 시가렛125개, 담배가루 5파운드 (二) 주류 : 5리터. Bulk 또는 그 용도가 불문명할 경우 수입업체는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502	건품 수입(뿌리삼 일 경우): (1) 약재상 판매 자격증 or 한의사 자격증(또는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약품 제조 허가증) 복사본을 구비하여 첨부 제출함 (2) 화물명칭은 서류상 한약재 및 중문 약초명을 기재함 건품이 아닌 것은 상기 전술된 제한을 받지 않음
511	타블렛형(알약형) 캡슐형 식물 제제품은 식품 위생서에 “검사등록” 허가인증을 받은 후에 식품 명의로 수입됨(이 허가 서류는 수입업체가 본인에 한해 신청하고 기타업자 사용 권한이 없음) 샘플 증정품일 경우 위생서가 발부한 「식품(첨가물) 샘플 수입 심사 통지서」를 제출함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일부 조항 수정

- 수입신고의무인이 검사기관에 상품 정보 신고를 사전 신청한 것에 대해 검사기관이 동의 문건을 발부했을 시 유효기한 내 수입식품기본자료 신청서 첨부 면제
- 전수검사의 조치 내용 수정
- 중앙주관기관이 기한 내 관련업체 또는 수출국 정부의 불합격 안전에 대한 설명 및 예방조치 요청에 대한 내용 조정
- 본 수정 조항은 공포일부터 실행됨을 명시
- 수정 공포일 : 2013.04.08.
- 공고번호 : 署授食字第1021300813호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일부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관련 조항 없음	제3조 1항(신규 제정) 수입검사의무인이 검사기관에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정보 사전 신고 했을 시 검사기관이 발부한 문건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수입검사를 면제 한다 전 항의 동의문건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수입검사신고 상품과 사전 신청 상품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관은 제1항 동의문건을 폐지하고, 1년 내 수입신고의무자의 제1항에 대한 수입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제6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시험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야만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아래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제10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관련업체 또는 수출국정부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한기간 내 제출하여 불합격 원인, 개선 계획 및 예상조치를 설명하고, 심사통과 후 원래의 검사방식에 따라 검사 한다	제10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관련업체 또는 수출국정부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한기간 내 제출하여 불합격 원인과 개선 및 예상조치를 설명하게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중화민국 1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중화민국 1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본 방법은 조항 수정 시 수정 공포일부터 시행 한다

○ 수입식품 검사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상호간 검사면제 우대 수출국 정부가 발부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주 대만 각국 대사관 혹은 외교 면제 특권자가 자가 사용을 위한 상품
- 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自家 사용품, 상업용 샘플, 전시회 용품 또는 연구 개발 실험 물품 등은 금액 및 수량 검사 면제 규정에 부합할 것

○ 검역 방법의 종류

- 전수검사 : 해당 품목의 전수량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 외관 및 라벨 심사, 샘플링하여 지정 실험실 분석검사 실시 등을 모두 실시함
- 발체검사 : 수입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 국가별로 지정됨
 - 일반 발체검사 : 2%~5%

- 강화 발췌검사 : 20%~50%
 - 현장 심사 : 발췌 검역품의 미 발췌 상품의 현장 심사
 - 검증결과등록 : 위생관리 안전 업체로 등록(검역, 심사, 샘플링 분석결과 보고서 등)
- 전수 검사/심사 필수적용 상품(실험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사항 삭제)
 - 국내 외 상품 관련 안전 정보 또는 과학적 증거에 의거 인체 위해함이 입증된 상품
 - 관할기관이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에 전수검사로 분류한 상품
 - 기 강화발췌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이면서 동일한 수입업체가 동일 생산지, 동일 품목 상품 수입 시 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된 것
 - 관할기관이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
- 강화발췌검사 필수적용 상품
 - 관할기관이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에 강화발췌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상품
 - 동일한 업체에 의해 기 전수검사 상품이 동일 생산지, 동일품목 코드의 상품을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합격 처리된 상품(단 연속 5건 합격하기 직 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수입량은 3배이어야 함)
 - 기 일반발췌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이면서 동일한 수입업체가 동일 생산지, 동일 품목 상품 수입 시 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된 것
 - 관할기관이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
- 일반발췌검사 필수적용 상품
 - 관할기관이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에 일반발췌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상품
 - 동일한 업체에 의해 기 강화발췌검사 상품이 동일 생산지, 동일품목 코드의 상품을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합격 처리된 상품(단, 연속 5건 합격하기 직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수입량은 3배이어야 함)
- 수입신고상품의 불합격 개선 성명 조치(제10조 수정)
 -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관련업체 또는 수출국정부 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한기간 내 제출하여 불합격 원인과 개선 및 예방조치를 설명하게 함 (심사 통과 후에도 수입절차 원복 규정 삭제)

- 관할 기간이 통보한 기한 내 업체 또는 수출국의 불합격 원인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서면자료 통과 후 기 절차부터 재검함
 - 동일 수입업체가 전수검사에 해당하는 동일 상품을 수입 시 2번 불합격됨
 - 동일 생산지의 동일 수입 품목 코드인 상품이 불합격 기록이 6개월 내 3번 불합격됨
- 기한 내 서면 또는 재검사 신청 상품이 불합격 된 상품은 동일 수출입업체, 동일 생산지일 경우 검역접수를 잠정 중단함(수출국, 관련업체 해지신청 → 재검 → 허가 → 접수시작)
- 업체 및 대리인은 수입 15일 전부터 도착항 검사 관할기관에 검사 신청함. 대리인에게 위탁할 시 위탁서 제출할 것
- 검역 시 심사, 검증에 따른 증서 발부 비용은 신청업체에서 납부함
- 검사에 필요한 샘플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발취함. 검사요원은 샘플 발취 후 발취 증명서를 세관원 및 신고자에게 발급함
- 검사요원이 수시로 샘플을 발취할 수 있고 그 수량은 지정할 수 없음
- 수입품의 샘플을 도착항에서 발취하기 힘들 경우 샘플 발취 지점을 관할 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음
- 샘플 발취 선 후 순서에 따라 검사를 하고 재검 대상자는 원 검사 실험실에서 사전 검사 신청을 함
- 샘플 발취 후 실험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기간이 5일을 초과하거나 컨테이너 운송으로 인해 발취가 어려운 상품 및 쉽게 부패되기 쉬운 상품은 수입 선행 신고를 통해 수입통관이 가능함. 단 전수검사의 상품은 여전히 잠정 보류 조치를 함
- 수입 선행 신고 상품은 신고자가 안전 유지 및 보관의 책임을 져야 하고 보고된 보관 지점과 실제 보관 지점이 상이하거나 수입 허가 통지서 발부 전에 자의적으로 방출된 상품은 6개월 간 수입신청접수 잠정 중단함
- 신고자는 관할 기관에 수입 허가 통지서 발부를 신청함. 검사 합격된 15일 이내

샘플 발취 증서를 제출하면 여분의 샘플을 회수 할 수 있음. 단 샘플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은 즉시 폐기조치

- 불합격 통지서 수령 후 15일 내 검사실험실 이용을 재신청 할 수 있음. 재검신청은 1회로 제한하고, 검사 실험실에서 여분의 샘플로 재검하며 재검비용을 실험실에 납부함
- 불합격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함
 - 반송 및 폐기
 - 개선 및 수정 보완이 허가된 상품은 관련 공문을 이용하여 선행 수입 허가를 신청함. 재검 후 개선이 입증되면 판매 개시할 수 있음
 - 선행 수입통관이 되었으나 재검 후 불합격 판정된 경우 회수, 반송, 폐기처리함

□ 수입 규정 변경사항

- 수입화물분류코드(CCC Code) 3924.10.00.10-3 <플라스틱 그릇류>도 수입 규정 F02에 따라 수입 진행됨(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F02 : 식품에 속함 또는 식품 포함일 경우 「수입식품 및 관련 식품 검사 방법 조문」에 의거하여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신청 및 수입검사 실시
- 담당기관명칭 변경
 - 2013.6.19. 「위생복지부조직법(衛生福利部組織法)」을 제정하고, 동일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조직법(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組織法)」으로 수정 공포함
 - 위생서식품약품관리국(衛生署食品藥物管理局)은 2013.7.23.일부터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로 변경됨
- 「F」, 「F01」, 「F02」 수입 규정 내용 변경 : 관할 부서의 명칭 변경
 - 공포기관 : 위생복지부 (기존 위생서)
 - 문서발송일자 : 2013년 8월 29일
 - 공고번호 : 署授食字第1021302207號
 - 공포일 : 2013년 9월 2일(공포일부터 시행)

－ 공고 사항

▷ 「F」, 「F01」

수입상품은 「수입 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및 「수입약물변경검사방법(輸入藥物邊境抽查檢驗辦法)」 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 신청

▷ 「F02」 코드 수정

식품에 속함 또는 식품 포함일 경우 「수입 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 수입세칙번호 CCC0307.41.20.30-1 「활어, 신선 또는 냉장품목(꼴뚜기 속)」 등의 7개 항목에 대해 「F01」 수입 규정을 적용

- － 주관 : 위생 복지부 (기존 위생서)
-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 개정 기관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 － 개정 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F01 수입규정 7개 신규 적용 항목 ■

CCC Code	상품명	영문명
03074120301	회, 생선 혹은 냉장 꼴뚜기 (흰 꼴뚜기 속)	Neritic squid (Sepioteuthis spp.), live, fresh or chilled
03074120908	기타 회, 생선 혹은 냉장 오징어	Other squid, live, fresh or chilled
03074912107	냉동 꼴뚜기 (흰 꼴뚜기속)	Neritic squid (Sepioteuthis spp.), frozen
03074912900	기타 냉동 오징어	Other squid, frozen
03079190305	회, 생선 혹은 냉장 꼴뚜기 (오징어 속, 꼴뚜기 속)	Neritic squid (Uroteuthis spp., Loliolus spp.), live, fresh or chilled
03079190902	기타 생선 혹은 냉장 연체류 동물 및 수산 무척추 동물	Other molluscs and aquatic invertebrates, fresh or chilled
03079920204	냉동 꼴뚜기 (Uroteuthis속, 꼴뚜기속)	Neritic squid (Uroteuthis spp.,Loliolus spp.), frozen

2. 품목별 통관제도

가. 일반포장 식품

☐ 라면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23010107	인스턴트 면류 (고기포함)	20%	B01 F01 MW0
19023010205	인스턴트 면류 (고기불포함)	20%	F01 MW0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 과자류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52000000	생강 과자 및 그와 비슷한 과자류	21%	F01 MW0
19053100007	단맛 과자류	25%	F01 MW0
19053200006	와플 및 얇은 과자류	17.50%	F01 MW0
19059030009	전용 영유아 과자류	5%	F01 MW0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나.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

☐ 건강식품 수입통관

○ 관련 법규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에 의거하여 통관 검역이 이루어지며,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수입허가인증

- 특수영양식품, 타블렛, 캡슐 등의 건강식품 수입은 행정원 위생서의 수입 허가인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검사 등록신청을 함

- 수입허가인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수입 신고서복사본, 기타 위생안전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수입허가 인증은 5년의 기한이며 만기 3개월 전에 식품위생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매번 연장 시 5년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만기 기간 내 연장 미완료 시 그 허가증은 자동 소멸됨
- 한국 백/홍삼(건삼) 1.5%, 가공제품은 그 첨가 성분, 가공 방법에 따라 C.C.C CODE로 분류되며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주로 수입되는 인삼조제품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수입 세번으로 수입되고 있음
- 인삼/ 홍삼의 수입품목 분류
 - 뿌리건조인삼/홍삼 : 약재류로 분류(건삼). 약재상 판매자격증 및 한의사 자격증 첨부를 통해 약재판매 및 수입자격이 주어짐
 - 수삼 : 일반 농산물 수입방식으로 처리됨
 - 가공식품 : 식품류로 분류, 각 상품별 첨가성분, 제조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 캡슐 알약류 : 건강식품류로 분류되어, 식품위생서에 검사등록, 샘플 송부 및 필요서류를 송부하여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함. 수입허가인증은 5년에 한 번씩 재신청해야함

■ 한국 인삼의 관세율표 ■

C.C.C CODE	해당 항목	해당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1211202100-4	고려인삼(건삼류) (머리 뿌리부분, 분말)	뿌리인삼 및 100%분말	1.5%	B01 502
1211209000-0	기타 인삼근	기타 인삼근	5%	B01 502
12119091914	기타 약용 신선 식물 및 재배용 식물 (종자/과실 포함.)	수 삼	면세	B01, F01
1302199000-3	기타 식물즙액 및 추출액(기름 추출제외)	인삼/홍삼 농축액	5%	F02
1704900090-9	기타 당류(백색 초코렛 포함,코코아 불포함)	인삼 캔디류	27.5%	MP1 F01

C.C.C CODE	해당 항목	해당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2008999190-1	기재되지 않은 기타 방식으로 조제 혹은 보관되는 과실 및 기타 식용할 수있는 식물의 부분. (가당 무가당 구별하지 않음)	홍삼/인삼 절편, 정과	20%	MP1 F01
2106909990-3	기재되지 않은 기타 식품 및 조제품.	홍삼/인삼차	30%	MP1 F01
2202909030-8	인삼성분의 음료, 알코올 불포함	홍삼톤, 인삼/홍삼 음료, 홍삼액	10%+ 부가세 15%적용	F01
2106909920-8	캡슐 및 알약형 제품	홍삼 캡슐, 홍삼정환, 홍삼타블렛	30%	F01 51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다. 사과, 배 과일류

☐ 사과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808100000-2	신선 사과	20%	B01, F01, MW0
0813300000-1	건조 및 탈수 사과	26%	F01
0811903100-3	무가당 냉동 사과	15%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배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808201900-9	기타 신선 배 (東方梨)	쿼터량내 18% 쿼터량외 NT49/KGM	B01, F01, MW0
2008400000-0	기타방식 제조 혹은 저장한 배	20%	F01
0811903100-3	무가당 냉동 사과	15%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라. 배추, 김치 채소류

☐ 배추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4901000-8	배추 신선 및 냉장	20%	B01,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마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32090.00-7	기타 마늘, 신선 냉장	27元/kg	114, B01, F01, MW0
07129040.00-2	건조마늘(전체, 절개, 분말, 다진 마늘 포함)	27元/kg	114, B01, F01, MW0
20019011.10-1	식초, 식초산 조제 혹은 저장한 마늘	25.5%	F01, MW0
20019011.90-4	식초 식초산 조제 혹은 저장한 마늘, 캔	25.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파프리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9600000-1	고추류 및 단고추류의 과실, 신선 냉장	20%	B01,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김치

CCC CODE	품 명	관 세 율	수입규정
2005909092-2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함(냉동 제품 제외))	25%	F01, MP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마. 건조 표고버섯 등 버섯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123920.00-0	건조 표고	NT\$369/KGM	F01, MW0
07095190.00-3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200.00-1	송로,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10.00-2	표고,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20.00-0	폴 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90.10-3	새송이,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095990.90-6	기타 식용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123110.00-0	건조 양송이	30%	F01
07123190.00-3	건조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30%	F01
07123200.00-1	건조 목이류	30%	F01, MW0
07123300.00-0	건조 백목이	30%	F01
07123910.00-2	건조 폴 버섯	30%	F01
07095110.00-0	양송이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0
07123990.00-5	건조 기타 건조 버섯류 및 송로	3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바. 가공육류

□ 삼계탕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1602.32.20.20-4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캔	20%	F01, MW0
1602.32.20.90-9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20%	B01, F01, MW0
2104.10.11.00-6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 (육류 20%이하)	10%	B01, F01
2104.10.19.00-8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 20%이하)	1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사. 수산식품

□ 고등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3026400008	고등어 신선, 냉장 (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NT\$9.3/KGM 또는 30% 중 높은 관세	F01,MW0
03037400906	냉동 고등어 (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NT\$7.3/KGM 또는 25% 중 높은 관세	F01,MW0
03053010004	건조 염장 혹은 침장 고등어 절편 단, 훈제되지 않음	30%	F01,MW0
03056940002	염장 고등어류	30%	F01,MW0
16041510009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 (갈린 것 제외)냉동된 것	30%	F01,MW0
16041590100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같은 것 제외), 캔	25%	F01
16041590903	기타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갈린 것 제외)	25%	F01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석반어 사료용 고등어 관세 인하 정책 실시(2013.5.16. 실시)

-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 양식업 지원 정책으로 미끼용 고등어 및 전갱이에 대한 단독 CCC CODE가 신규 제정되고 해당 신청자에 한해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2%~50%에서 6%로 인하
- 수입업체 및 양식업자가 어업서에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관세율인하 동의서 및 자격증을 부여받고 그 자격증 소지 업체의 수입 건에 한해 인하 관세율을 적용

Ⅰ 석반어 사료용 수입세칙코드 신규 제정 Ⅰ

CCC CODE	품 명	일반 관세율	관세율 인하 적용 시	수입 규정
0303740010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NT\$75/KG or 25%	6%	442 MW0
0303799220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전갱이	50%	6%	442 MW0
0303799310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류	30%	6%	442 MW0
0511919910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및 냉동 전갱이 (대서양 죽협어, 병치매가리는 제외함)	12%	6%	442

자료 : 대만 농업위원회 어업서(漁業署),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오징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3074120007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	NT\$15/Kg	F01
03074912009	냉동오징어	NT\$15/Kg	F01
03074922105	건조오징어	NT\$219/Kg 또는 50% 중 높은 관세	F01
03074922203	염장 또는 훈제 오징어	NT\$219/Kg 또는 50% 중 높은 관세	F01
16059050105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냉동오징어	40%	F01, MW0
16059050203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통조림	40%	F01
16059050908	기타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40%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김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12122021101	신선·냉장·건조된 김	10%	F01
12122022002	냉동 김	15%	F01
20089950009	구이·조미된 김	2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臺灣關務署)

□ 원양어선 어획 수산품에 대한 규정

- 대만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수산품이 대만 내로 회수되거나 판매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면제됨. 상선 및 항공편으로 회수하여 내수 판매할 시 국외 대사관 및 국가 대표기관을 통해 중앙 관련기관의 수입신고 면제 동의 문건 수속을 거쳐야 함

아. 유제품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11000104	영아 분유(유아분유) 영아 액체 유제품	5%	501 F01
19011000907	기타 여아 조제품	5%	F01
19019021004	조제분유, 5파운드 이하 포장품.	12%	F01
19019022003	기타조제분유	12%	F01
19019025000	조제 액체 유제품, 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함유	NT\$15.6/KG	F01 MW0
19019026009	조제 액체 유제품, 미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미함유	26%	F01 MW0
19019027008	조제유	NT\$15.6/KG	F01 MW0
19019029006	기타 유제품	25%	F01 MP1
19019030003	우유기초로한 아이스크림용 혼합료	5%	F01 MW0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자. 주류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22030000001	맥주, 기타맥아양조주	免稅	463 W01
22042100005	기타포도주, 2리터이하용기포장	10%	463 MW0 W01
22060010006	곡류주	40%	463 MW0 W01
22060020004	과일주	20%	463 MW0 W01
22089090115	미주, 미주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키거나 액화, 당화, 발효 증류 등으로 제작한 증류주	40%	463 MW0 W01
22089090197	기타곡류주	40%	463 MW0 W01
22089090204	기타과일주	40%	463 MW0 W01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제3절 통관사례

1. 최근 통관이슈

□ 대·뉴 경제협력협정(ANZTEC) 정식 체결

- 협정 체결일: 2013.7.10.
- 주 뉴질랜드 대만대표와 주 대만 뉴질랜드대표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톤 (Wellington)에서 서명 및 서약서 교환
- 본 협정의 체결 의의
 - 대만 최초 비수교국과 경제협력협정을 맺은 것으로 상호간 관세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인하
 -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이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창시국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 대·뉴 경제협력협정을 통하여 관련 경제 협력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여 대만 산업의 구조 조정과 경쟁력을 도모함
- 시행 예정일 : 201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현 진행 상황
 - 입법원은 10월 29일 「대·뉴 경제협력협정(ANZTEC)」 관련 「무역법 부분 조항 수정안(貿易法部分條文修正案)」을 통과시킴
 - 「세관수입세칙(海關進口稅則)」부분 세칙수정안이 11월 5일 입법원 제3차 회의에서 통과 됨
 - 관련 규정 시행 이후 뉴질랜드는 제2란 국가(관세 우대국)으로 편입됨
- 대만 對뉴질랜드 수입정책 : 일부 농산품을 제외하고 즉시 무관세 및 12년간 점차적 관세인하 등 「전면개방」 실시 예정
 - '12년 기준 對뉴질랜드 농산품 수입실적 : US\$607,130천불
 - 축산품 71.5% 차지, 분유 및 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및 액체유제품, 녹용, 키위,

사과, 체리 등 (붙임 1)

- '12년 기준 對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실적 : US\$6,290천불
- 음료, 동물사료, 라면, 쌀과자, 조제 채소 등 가공식품 위주

○ 농업관련 3대 추진 방향

- 시장 개방
 - 1,813종 농산물 품목 개방
 -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대비책(붙임 2)
 - 쌀과 그 관련제품은 관세율 면세 품목에서 제외
 - 즉석면세품이외 품목 : 품목별 2~12년간 단계적 관세 인하율 적용
 - 액체 유제품과 녹용은 관세 쿼터제 적용
 - 뉴질랜드산 농산물 관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농산물 피해 보조지원금 약 NT\$90억 달러(한화 약3,600억원) 지원
- 농산물 특정 원산지 규정 : 특정 원산지 규칙 신청
 - 제3국의 대만 경우 시 본 협정의 관세 특혜를 피하기 위해 쌍방은 각 상품의 특혜 관세에 대한 특정 원산지 규칙을 정함
- 동식물방역검역규정 : 쌍방의 동식물방역검역협약 강화에 동의
 - 동식물방역검역 관련 협약, 통지, 긴급조치 및 정보교환 등의 전문 기지 설립 하여 협의내용 실행 강화 및 연합관리위원회 구축 도모

○ 기타 협정 내용

- 총 25개 조항으로 일반성 의제 및 화물 관세,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내용
- 항공개방, 영화·TV산업 협약, 원주민 협약, 환경, 노동자 관련 항목 등
- 원주민 협약 관련하여 전문 조항으로 처리하였음(기 국제협정체결 내용 중 최초 기재된 항목)

○ 협정 시행 이후 향후 전망

- 체리, 사과, 키위는 대만 생산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대량 수입 예상
- 열대과일인 망고, 리치, 바나나, 죽순, 팥콩 수출 증대예상
- 뉴질랜드산 연어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뉴질랜드는 캐나다, 노르

- 웨이 등의 수산물 수출 강대국의 직접적인 경쟁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뉴질랜드산 키위는 약 10~20% 가격인하 예상
 - 사과도 생산량에 따른 가격 변화가 심하나 일단 면세 처리된다면 가격 인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유제품은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소폭 변동 예상
 - 녹용은 대만산 녹용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Ⅰ 대·뉴 경제협력협정- 각 품목별 관세율 인하 적용 사항 Ⅰ

(단위: 톤, US\$백만불, 관세 NT\$/kg)

구 분	분류 유제품	사과	체리	쇠고기	키위	양고기	액체유제품	녹용
수입량	55,496	12,065	680	19,825	30,010	8,589	2,475	5
수입액	219.4	13.8	7.6	113.7	63.8	41.2	2.3	0.13
점유율	59.4%	8.7%	4.3%	24%	83.9%	45.5%	22.1%	100%
현행 관세	5~10%	20%	7.5%	10	20%	11.3 or 15%	쿼터량 21,298톤內15%, 쿼터량外NT\$15.6	쿼터량 5톤內 22.5%, 쿼터량外 500%
인하 관세 (실행 후 기간별 인하)	즉시 면세			첫해: NT\$10 2년~5년: NT\$5 3년: 면세	첫해: 20%, 2년: 10% 3년: 5% 4년: 면세	면 양육 5년: 면세 산 양육 9년: 면세 매년 평균 인하	3년: 현 쿼터량 +5,500톤, 4~6년:7,000톤 7~9년 8,500톤 10~12년: 10,000톤 13년부터 면세	첫해: 현 쿼터량 +1톤 2~12년, 매년 2.25톤 증량 13년부터 면세

Ⅱ 대·뉴 경제협력협정 대만 농수산물 12년 단계별 관세인하 목록 Ⅱ

관세율인하 적용 시기	적용 농수산물 품목 수	총 농수산물 중 점유 비율	주요 품목
시행 즉시 면세	1,323	72.97%	돼지고기, 신선 냉장 닭고기, 화훼류, 체리, 키위 등 과일, 냉동채소, 미희석과즙, 바닷가재류
2년 후 면세	23	1.27%	쇠고기 및 쇠고기 내장, 뼈 등 기타 부위
3년 후 면세	1	0.05%	키위

관세율인하 적용 시기	적용 농수산물 품목 수	총 농수산물 중 점유 비율	주요 품목
4년 후 면세	325	17.93%	면양고기 및 양 내장, 뼈 등 기타 부위 녹용(건조), 바나나 및 망고 등 일부 과일 등
6년 후 면세	1	0.05%	냉동 매가리
8년 후 면세	120	6.62%	산양고기, 냉동닭다리 및 닭 날개, 닭고기 절편, 냉동고등어 및 섭조개 등 일부 조개류, 양파, 감 및 감자 등 일부 채소류
관세쿼터량적용 (12년 후 취소)	9	0.50%	액체 유제품, 녹용(미건조)
관세 면세 및 인하 제외 대상	11	0.61%	쌀, 현미, 쌀가루, 기타 가공미, 찹쌀가루 등
소 계	1,813	100.00%	

자료 : 대만 농업위원회 (農業委員會) http://www.coa.gov.tw/show_index.php

2. 밀수 억류사례

□ 컨테이너 속 아지트 만들어 표고버섯 밀수시도, 해경대원들 일망타진

- 대만 쑹화현의 해경서 검사대 및 지룽의 기동검사대는 2013년 10월 30일 오후 중국 상해에서 27일 출발하여 지룽항구에 도착하는 중국 국적의 선박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에서 400여 상자의 밀수 표고버섯을 발견, 총량이 약 11톤에 다다르며, 시가 NT500만원 상당을 밀수하려던 3명의 밀수범을 타이중지방검찰청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힘(2013/10/30 대만 중앙사 보도)

□ 담배 세금이 늘면서 밀수 담배 증가

- 담배에 대한 세금이 늘면서, 최근 3년사이 담배용품의 밀수가 다시 늘고 있음. 금년 통관의 밀수 적발 사례 best5안에 들어 9월초 까오슝 세관에서 적발한 한 척의 배에서 약 2000여 상자의 밀수 담배가 적발되었고 이는 금년 담배 밀수량의 약 4분의 1상당의 양이며, 시가 약 NT\$60백만 원 정도 임
- 관무서의 부서장인 천시린(陳錫霖)은, 담배에 대한 세금이 대폭 증가하여 현재

담배 1갑당 NT\$36.7원(한화 약 1,394원)으로 조절 된 후, 밀수의 이익도 함께 증가 함

- 향후 담배세가 약 NT\$61원(한화 약 2,318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다수의 담배업자들이 인상 전에 대량의 재고를 비축하려고 하는 현상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담배 밀수량이 폭증된 원인이라고 표명함(2013/10/13 중국시보 보도)

□ 민간어선항구 이용한 밀수, 까오슝 항구 검사관 밀수 담배 500여 박스 발견

- 해순서의 검사원은 까오슝항구로 돌아오는 개조된 선박에서 밀수 담배 510박스, 시가 NT\$2000여만원 (한화8억 상당)상당을 발견했다고 밝힘
- ‘용성의호(永盛億號)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까오슝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기름 통 밑부분을 개조해 그 속에 510상자의 밀수 담배를 감춰 들어오다 적발됨
- 이는 시가 NT\$2,000만원 상당이며, 만약 밀수를 성공했다면 밀수업자들은 NT\$1,500원의 이익을 봤을 거라고 설명함(2013/6/14 중국 라디오 보도)

제4절 통관부서 연락처

□ 각 세관 부서별 연락처

구 역	전화 번호
세관 고객 상담실 (대표)	0800-005-055
고객 상담실	02-2554-6992
과세과	02-2558-8103
밀수단속과	02-2554-6618
세척처	02-2550-8184
통계실	02-2550-8063
검우처	02-2554-6558
자료처리처	02-2554-6525
보세 및 환급처	0800-221-058
지룽 세관국	0800-306-001
타이베이 세관국	0800-311-005
타이중 세관국	0800-461-202
까우슝 세관국	0800-711209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 관리 및 법률 체계

□ 관리체계

- 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行政院衛生署食品藥物管理署)
 - 행정원 위생서 소속 식품약물관리국은 대만 내 식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수입식품들의 검험은 표준검역국에 위임
- 경제부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
 - 경제부 소속 국가 최고의 검험기관으로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 검사가 필요한 상품들은 표준검역국에서 실시하는 규격에 합격해야 수입, 수출 및 시장 판매가능
-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
 -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의 방역과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반입되는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의 역병충해를 감지하고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 기륭(基隆), 신죽(新竹), 타이중(台中), 까오슝(高雄) 4개의 분국과 10개의 검역소에서 검역을 집행

□ 법률체계

- 법적근거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동식물방역검역법(動植物防疫檢法)」,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 등
 - 식품위생관리법(2013년 6월 19일 전면수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관리법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과 그 식품의 재료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
- 행정 법규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隻五或中華民國植品檢驗規定)」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 「수입식품검사방법(輸入食品檢驗辦法)」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

Ⅱ 식품위생관리법 주요부분 Ⅱ

제15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아래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 - 제1항 : 변질 혹은 부패된 것 - 제2항 : 덜 익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 - 제3항 : 유독성이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포함한 것 - 제4항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제5항 : 농약 잔류 량이나 동물성 의약품 잔류 량이 전 기준을 초과한 것 - 제6항 :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이나 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한 것 - 제7항 : 불량제품이나 위조제품 - 제8항 : 유통기한이 지난 것 - 제9항 : 과거 식용전례가 없거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
제16조	식품기구, 용기, 포장, 식품용세정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사용 금지 : - 유독 - 불량 화학용품 사용 - 기타 유해성 물질 사용
제17조	식품, 식품용 세정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은 중앙당국에 의해 규정된 위생, 안전, 품질기준에 따라야 함

- 위반 시 법적 제재 조치 강화 부분

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제36조 →제44조~제49조	일반 규정 위반 시 NT\$3만 ~5만 달러 구형 가능	NT\$3만~1500만 달러까지 벌금 구형 가능
	위생 관련 기관이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라고 판정할 경우 NT\$6만~600만 달러까지 구형 가능	업체의 위반 범위가 법정 최고 벌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 될 시 그 이상 구형 가능
	인체 건강 위해했음을 증명자료로 제출 시 형사처리 가능	미 허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 3년 이하의 구형처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인명사상을 내었을 경우 무기징역 구형까지 가능

- 수입식품 관리 강화

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6장신규제정 제30조~제36조	식품수입관리에 대한 전문 章을 신규 제정 현행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의 내용 일부를 기본으로 함	- 현행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條文)」의 내용의 일부를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의 제6장으로 삽입함 - 신고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 시 NT\$3만 ~300만 달러 벌금 구형이 가능하고 수입검사 잠정 중단됨. 비 판매목적의 수입검사 면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이 발각될 시 1년간 수입검사 면제 정지됨 - 변경수입검사 등 방식으로 수입 시 보증신청 후 먼저 반입 가능함. 단 필요 시 심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특정 지점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이동하거나 판매 또는 지정 보관 지점과 실제 보관지점이 다른 경우 1년간 보증신청이 불가하고 최고 12배까지의 벌금 구형이 가능함 - 안전성 위험도가 높은 식품은 수입 전 계통성 검사가 실시되며, 안전위생문제 발생 시 대만 국경 외 지역으로 파견원을 보내 조사함 - 중대한 식품 위생안전사건 발생 또는 수입검사 불합격 수준이 과다할 경우 특정업체, 생산지, 상품에 대해 수입검사 신청을 정지함

－ 식품 검사 강화

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제40조 신규제정		－ 「식품검사」 전문 내용을 제7장으로 삽입하여 관리 강화, 검사 결과와 관련된 검사 방법 및 검사기관을 명시하고, 재검사 과정 등을 처리하여 공신력을 확보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또는 외관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는 각 중앙담당기관 및 타기관 위임 또는 위탁을 통해 처리함. 중앙담당기관은 위탁 또는 위임 기관을 인증하고, 필요 시 그 인증도 타기관에 위탁 가능 － 식품위생검사 정보 공포 시 검사방법, 검사기관 및 결과 판독 근거도 동시에 공포

2. 세관과의 관계

- 수입화물 통관 시 세관은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 및 통관을 관리 감독함. 수입 식품 중 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화물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동식물검역을 진행한 뒤,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주관 하에 표준검역국에서 수입화물의 내용, 규격, 라벨링 등을 포함한 검역검사를 진행하고, 세관은 검역검험기관의 결과에 따라 통관을 결정함

3. 검험·검역범위

- 대만 행정원 위생서는 수입식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식품용 세정제 등이 검사 대상임
- 식품 중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 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그에 적용되는 행정법규에 따라 검역을 거쳐야 함

4. 수입식품검험검역

- ☐ **법률근거**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 ☐ **검사내용** : 제품의 성분 및 규격이 해당 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 **검사방식**

검험의 종류	내용
서류검사	검사면제 제품의 식품기본 자료표 등 관련 문서 조사 (위생증명, 검역증, 성분과 라벨링 등)
일반검사	2~5%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강화검사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일반검험	2~5%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강화검험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전수검험	각 배치별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검사신고 의무인이 실험실 검사비용 지불)

☐ 검험검역비용

- 「規費法」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검험비용표준」 규정에 따라 검사비용 산출
- 검험비용의 종류는 조사비, 통지서 발급비, 검사비로 구성
 - 조사비 : 서류 검사비용 및 현장 검사비용
 - 밀, 보리 옥수수, 대두의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5% 비율로 책정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식품용 세정제의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75%비율로 책정. 최소 검사비는 NT\$200이고 조사비가 NT\$10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현장 검사비용 : 1인 1장소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회당 NT\$500. 근무시간 외와 공휴일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 통지서 발급비 : 수입식품 및 상관제품의 허가통지서 발급비용으로 그와 관련한 재발급, 정정발급, 추가발급, 또는 변경사항 등 제비용을 포함. 매 부당 NT\$100

- 검험 검역비: 검험 해당제품의 실험실 검역 항목비, 재검, 혹은 배치별 검험비용. 일반검험비(외관, 평균중량, 중량차이, 분해, 산도)는 NT\$1,500이고,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 비용 책정

□ 검험신청 제출서류

- 검험신청서 / ○ 식품의 기본정보 신고 / ○ 수입신고서 복사본
- 기타 중앙위생당국이 요청한 서류(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수입검역신청서, 검역증명서 제출)

□ 검역·검험대상의 범위

-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 세정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는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중앙위생기관에 의해 수입식품 검사 대상으로 정해짐

□ 조사 과정

- 같은 신고품목 명단에 있는 식품은 한 개의 배치로 검사를 실시(중앙위생기관의 관제관리 하에 있거나 불합격 기록자는 제외)
 - 포장재질이나 용량이 달라도 제품분류범주, 품명, 브랜드, 제조공장, 원산지, 성분이 같은 제품
 - 제품분류범주, 품명, 원산지가 같고 동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제품
 - 어패류의 활(活) 제품, 신선제품, 냉장제품 및 연체류 등의 4종은 1가지로 간주함

□ 전수검사의 과정

- 집행기관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을 채취하여 당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
- 실험보고서의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면 수입식품 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불합격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받음

□ 샘플링 검사, 등록

- 검험 검역 집행기관은 검험대상 제품의 지난 검험기록, 관련 제품의 국내외 이
슈화된 사례를 살핀 후 중점 검사항목을 검험하고 라벨링 표기법, 식품위생표
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또는 위생안전 관련항목을 고려하여 검사
- 검험 검사 시 채취하는 샘플 표본량(각종 제품의 배치별 채취량)
 - 벌크제품 : 2Kg
 - 벌크식용유지 : 매 탱크마다 표본을 채취하여 합계 2Kg
 - 고체-600g, 고·액체 혼합품-1Kg, 액체-1Kg(검험항목에 따라 채취량이 증
가할 수 있음)

□ 중문 라벨링 면제제품의 검사

- 적용대상 : 선적 후 제품의 포장, 재포장, 또는 기타 공정이 필요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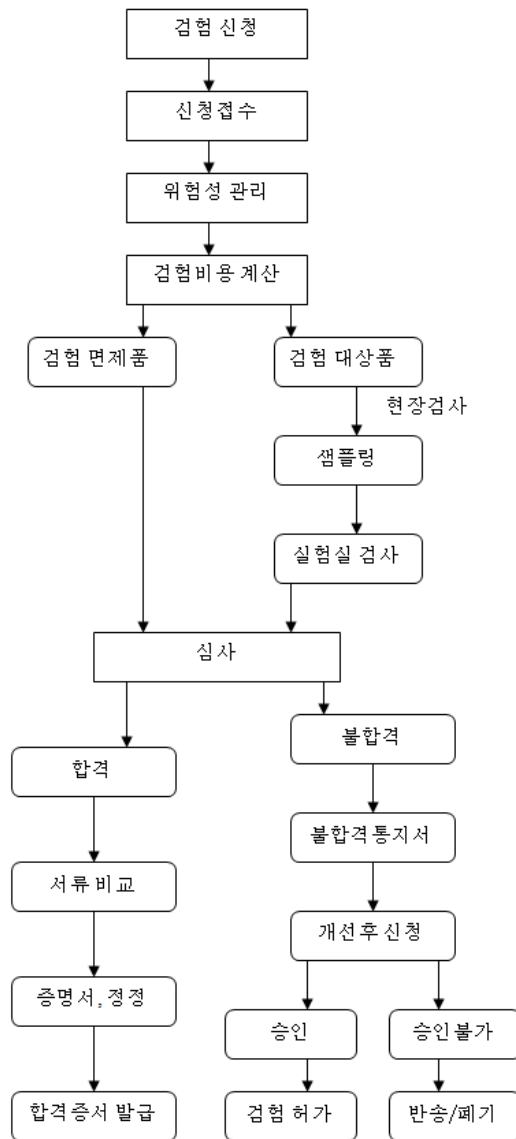
□ 개선 후 재검사과정

- 검험 불합격의 원인과 개선조건을 확인한 후 15일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1
회로 제한함. 재검사는 동일 실험실에서 남은 표본으로 실시

□ 수입 후 시장 관리

- 중앙위생기관은 수시로 수입식품의 용도와 검사 면제품을 추적조사
- 불합격 수입식품은 중앙위생기관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공표
- 전수검험으로 지정된 제품은 5 배치 연속 합격을 해야 일반검사 방식이 적용됨

□ 수입식품검사절차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제2절 동·식물 검역

1. 개 요

☐ 법률근거

-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검역조건」, 「식물 및 식물제품 방역검역방법」 「고기를 포함한 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

☐ 검역내용

- 제조국/생산국의 이슈 전염병 유무, 제조공장의 적합성, 가공제품의 가열처리 및 포장방법 등

☐ 식물검역 신청 시 구비서류

-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 선하증원(B/L)
- 기타서류 :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영수증, 포장명세서

☐ 동물검역 신청 시 요구 서류

- 동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 세관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 복사본
- 기타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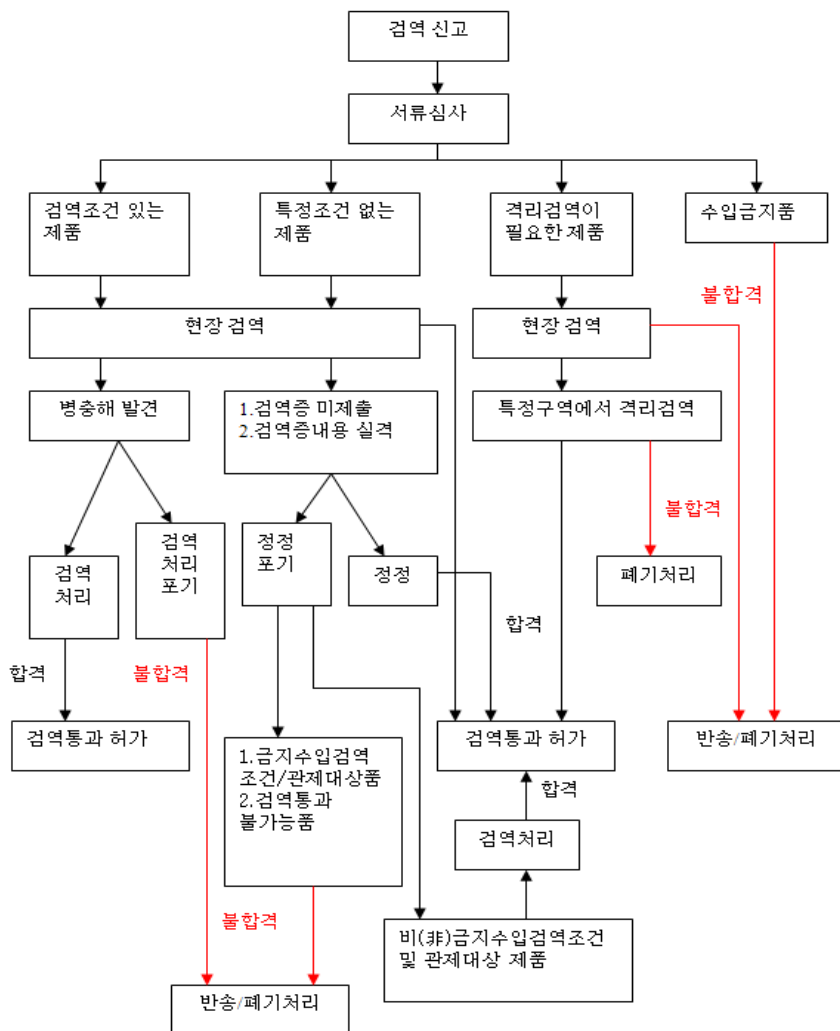
☐ 전염병 지역

- 화물이 전염병 지역을 경유할 경우 「역병충해 발생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동·식물제품의 밀폐식 화물상자 운반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해당 화물은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작업방법」이나 「밀폐식 컨테이너로 운송한 동물 제품의 「수입검역 작업방법」에 근거하여 검역

2. 검역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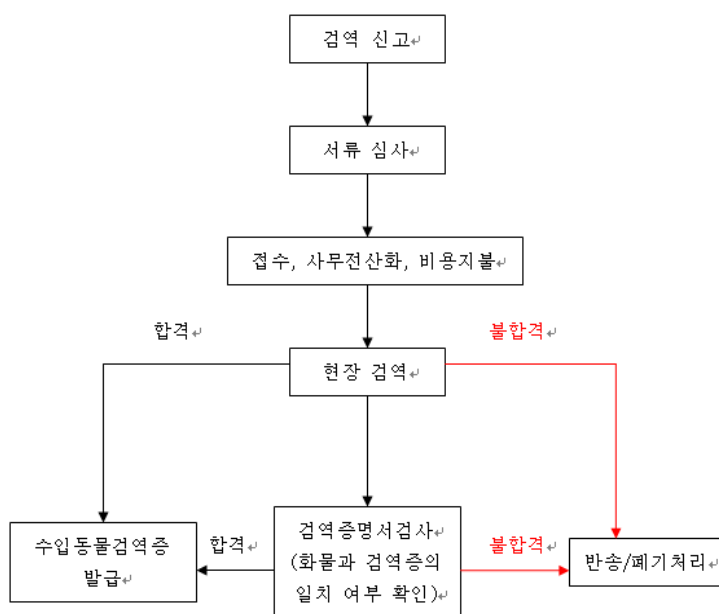
□ 수입식물 및 신선식품 검역과정 절차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동물검역과정 절차

- 수입 동식물제품의 검역은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지정한 도착 항구, 역, 또는 지정검역소에서 집행. 검역물의 수입자나 대리인은 검역물이 항구나 역에 도착하면 검역을 신청해야 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검역결과가 역병충해의 존재를 알리면 수입은 금지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음
- 신고 대상 검역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이나 승무원도 입국 시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신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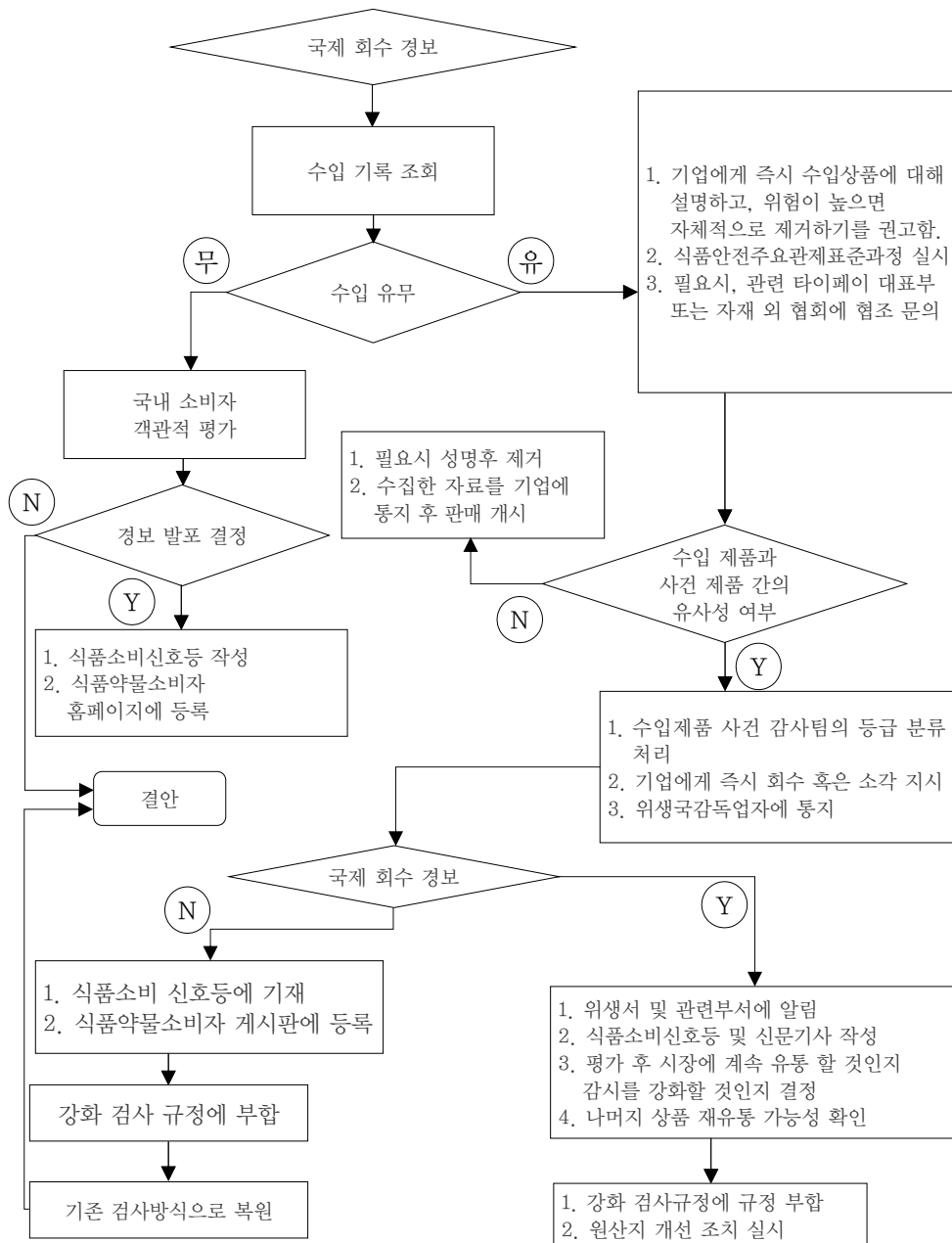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3. 위반 시 재제조치

- 수입식품 검험 검역 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됨
- 위험수입식품의 처리과정

□ 위험수입식품의 처리과정(2012년 12월 19일 수정)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4. 검역규정 변동사항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의 제17조 내용 일부 수정공고

(部授食字第1021350146號 2013년 8월 20일 공포)

○ 식품 방사능 처리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

○ 본 기준은 공포와 동시 시행

방사능 처리 허용 식품 품목	방사능 발원	방사능 최고허용치 (백만볼트)	처리 허용 최고치 (kGy)	조사처리 목적
감자, 고구마, 파, 양파, 마늘, 생강	전자	10	0.15	발아 억제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파파야, 망고	전자	10	1.5	저장 기간 연장 : 병충해 방지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딸기	전자	10	2.4	저장 기간 연장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콩류	전자	10	1	병충해 방지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기타 신선 채소	전자	10	1	저장 기간 연장 : 병원균 오염 제거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곡류 및 차원료	전자	10	1	병충해 방지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냉동 축산물 및 뼈 제외 축산물	전자	10	5	저장 기간 연장 : 병원균 오염 제거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냉장 축산물	전자	10	4.5	저장 기간 연장 : 모충(애벌레)생장 억제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냉동축산물	전자	10	7	저장 기간 연장 : 모충(애벌레)생장 억제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건조 및 탈수 한 조미용 식물(바닐라, 씨앗, 향신료, 차, 채소조미료 포함)	전자	10	30	병충해 방지 및 살균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화분	전자	10	8	저장 기간 연장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동물성 조미 가루	전자	10	10	저장 기간 연장
	X광선 혹은 γ (감마)광선	5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의 제3조 내용 일부 수정공고

(署授食字第1021301244號 2013년 5월 21일 공포)

○ 다수의 잔류량 기준이 변경됨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 (ppm)
Abamectin	근육, 지방	소	0.1
	신장		0.05
Acetylisovaleryltylosin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닭	0.04
Albendazole	근육, 지방, 우유	소, 면양	0.1
	간, 신장		5
Amoxicill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류	0.01
	우유	소, 면양	0.05
	근육	어류	
Ampicill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0.01
	우유	소	0.05
	근육	어류	
Amprolium	근육, 간, 신장	소	0.5
	지방		2
	근육		0.5
	간	닭, 칠면조, 꿩	1
	신장	닭, 칠면조	1
	달걀		4
Apramycin	근육,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류	0.05
	간, 신장	소, 돼지, 면양, 산양	2
		가금류	1
Avilamycin	근육, 지방, 간, 신장, 기타식용가능부위	돼지, 닭고기	0.05
Azaperone	근육, 지방	돼지	0.06
	간, 신장		0.1
Bacitrac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닭, 칠면조, 메추라기	0.5
	우유	소	
	달걀	닭, 칠면조, 꿩, 메추라기	
Benzylpenicill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류	0.05
	우유	소, 면양	0.004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 (ppm)
Betamethasone	근육, 신장, 지방	가축류	0.00075
	간		0.002
	우유		0.0003
Bovine Somatotropin (Recombinant)	근육, 간, 신장, 지방, 우유	소	허용량 미정
Buquinolate	근육, 지방	닭	0.1
	간, 신장		0.4
	달걀		0.2
Carazolol	근육, 지방 (껍질포함)	돼지	0.005
	간, 신장		0.025
Carbadox	간	돼지	0.03
	근육		0.005
Cefapirin (Cephapirin)	근육, 지방, 간, 신장	소	0.02
	우유		0.01
Ceftiofur	근육	소, 돼지, 면양, 산양	1
	간, 지방		2
	신장		6
	우유	소, 면양, 산양	0.1
Cefquinome	근육, 지방	돼지, 소	0.05
	간		0.1
	신장		0.2
	우유	소	0.02
Cephalexin	근육, 간, 지방	돼지, 가금류	0.2
	신장		1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及Tetracycline	근육	소, 돼지, 면양, 가금류, 어류(2), 대하(2), 새우(2)	0.2
	간	소, 돼지, 면양, 가금류	0.6
	신장		1.2
	달걀		0.4
	우유	소, 면양	0.1
Clopidol	근육	소, 면양, 산양	0.2
	간		1.5
	신장		3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0.2
	우유	소	0.02
	근육	닭, 칠면조	5
	간, 신장		15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 (ppm)
Dexamethasone	근육, 신장, 지방	가축류, 가금류	0.001
	간		0.002
	우유	가축류	0.0003
Dichlorvos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면양, 산양, 가금류	0.05
		돼지	0.1
	우유	양, 면양	0.02
	달걀	가금류	0.05
Diclazuril	근육	면양, 가금류, 토끼	0.5
	간		3
	신장		2
	지방		1
Dicyclanil	근육	면양	0.2
	간, 신장		0.4
	지방		0.15
Dihydrostreptomycin 및 Streptomycin	근육, 간, 지방	소, 돼지, 면양, 닭	0.6
	신장		1
	우유	소	0.2
Dimetridazole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가금류	0.005
Diminazene	근육	소	0.5
	간		12
	신장		6
	우유		0.15
Doramectin	근육	소	0.01
		돼지	0.005
	간	소, 돼지	0.1
	신장		0.03
	지방		0.15
Doxycycline	근육	어류	0.01
	근육	소, 돼지, 가금류	0.1
Enrofloxacin	근육	소, 돼지, 가금	0.1
	지방		0.1
	간	소	0.3
		돼지, 가금	0.2
	신장	소	0.2
		돼지, 가금	0.3
	우유	소	0.1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ppm)
Eprinomectin	근육	소	0.1
	간		2
	신장		0.3
	지방		0.15
	우유		0.02
Erythromyc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류	0.3
	우유	소, 면양	0.04
	달걀	가금류	0.3
	근육	어류	0.2
Estradiol-17beta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허용량미정
Estradiol及其酯類	근육	황소, 수송아지, 새끼양	0.12 ppb
	간	소	0.24 ppb
	신장		0.36 ppb
	지방		0.48 ppb
	간, 신장, 지방	새끼양	0.6 ppb
Ethopabate	근육	닭	0.5
	간, 신장		1.5
Febantel, Fenbendazole及Oxfendazole	근육,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0.1
	간		0.5
	우유		0.1
Florfenicol	근육	소, 돼지	0.3
		닭	0.1
	간	소	3.7
		돼지	2
		닭	2.5
	신장	돼지	0.5
		닭	0.75
	지방(껍질포함)	돼지	0.5
		닭	0.2
Fluazuron	근육	소	1
	간, 신장		0.2
	지방		0.5
Flubendazole	근육, 간	돼지	7
	근육	가금류	0.01
	간		0.2
	달걀		0.5
			0.4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ppm)
Flumequine	근육, 간	가축류, 가금류	0.5
	신장		3
	지방		1
	우유	소, 면양, 산양	0.05
	근육, (껍질포함)	어류	0.5
Flunixin	근육	소	0.02
		돼지	0.05
	간	소	0.3
		돼지	0.2
	신장	소	0.1
		돼지	0.03
	우유	소	0.04
	지방 지방(껍질포함)	소 돼지	0.03 0.01
Gentamicin	근육, 지방	소, 돼지	0.1
	간		2
	신장		5
	우유	소	0.2
Halofuginone	근육	닭, 칠면조	0.1
	간		0.3
	지방(껍질포함)		0.2
Imidocarb	근육	소	0.3
	간		2
	신장		1.5
	지방, 우유		0.05
Isometamidium	근육, 지방, 우유	소	0.1
	간		0.5
	신장		1
Ivermectin	간	소	0.1
	지방		0.04
	간	돼지, 산양, 면양, 가금류	0.015
	지방		0.02
	우유	소	0.01
Kanamycin	근육, 지방	소, 양, 돼지, 닭	0.1
	간		0.6
	신장		2.5
	우유	소, 양	0.15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ppm)
Kitasamycin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가금류	0.2
	달걀	가금류	
	근육	어류	0.05
Lasalocid	간	소, 토끼	0.7
	지방(껍질포함)	닭	1
	근육		0.1
	간, 신장		0.4
	근육, 간, 신장, 지방, 우유	면양	허용량 미정
Levamisole	근육,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가금류	0.01
	간		0.1
Lincomycin	근육, 지방	소, 돼지, 면양, 닭	0.1
	간		0.5
	신장		1.5
	우유	소	0.15
	근육	어류	0.1
Maduramicin ammonium	근육	가금류	0.24
	간		0.72
	지방(含皮)		0.48
Mebendazole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0.02
	우유	소, 면양	
Melengestrol acetate	간	소	0.002
	지방		0.005
Metrifonate (見 Trichlorfon)			
Monens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산양	0.05
	우유		0.01
	근육, 간, 신장, 지방, 달걀	닭, 칠면조, 메추라기	허용량 미정
Morantel	근육,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0.3
	간, 신장	소, 면양, 산양	2
		돼지	5
	우유	소, 면양	0.1
Moxidectin	근육	소, 사슴	0.02
		면양	0.05
	간	소, 면양, 사슴	0.1
	신장		0.05
	지방		0.5
Naras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0.05
	근육	닭	0.6
	간		1.8
	지방(껍질포함)		1.2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ppm)
Neomycin	근육, 지방, 우유	소	0.5
	간		15
	신장		20
	근육, 간, 지방	돼지, 면양, 산양, 칠면조, 닭, 오리	0.5
	신장		10
	달걀	닭	0.5
Nicarbazin	근육, 간, 신장, 지방(舍皮)	닭	0.2
Novobioc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닭, 칠면조, 오리	1.0
	우유	소	0.1
Olaquinox	근육, 간, 신장, 지방(껍질포함)	돼지	0.3
Oleandomyc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닭, 칠면조	0.15
Ormetoprim	근육, 간, 신장, 지방	닭, 칠면조, 오리, 메기류, 연어류	0.1
Oxacill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류	0.3
	우유	소, 면양	0.03
Oxfendazole (見Febantel)			
Oxolinic acid	근육(껍질포함)	어류	0.05
	근육	새우	0.05
	근육	소, 돼지, 닭	0.1
	간, 신장		0.15
	지방		0.05
	달걀	닭	0.05
Oxytetracycline (見Chlortetracycline)			
Penicillin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0.05
	근육, 간, 신장, 지방	칠면조	0.01
Piperonyl butoxide	근육, 간, 신장	소, 돼지, 면양, 산양	0.1
	근육(지방 기준), 간, 신장	가금류	0.5
	달걀		1
	우유	소	0.05
Procine Somatotropin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허용량 미정
Progesterone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허용량 미정
Ractopamine	근육	소	0.01
Robenidine hydrochloride	근육, 간, 신장, 달걀	닭	0.1
	지방(껍질포함)		0.2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ppm)
Roxarsone (calculated as As)	근육	돼지, 닭, 칠면조	0.5
	간, 신장		2
	달걀	닭, 칠면조	0.5
Salinomycin	근육, 지방	소	0.05
	간, 신장		0.5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0.1
	근육, 지방	가금류	0.1
	간, 신장		0.5
	달걀		0.02
Sarafloxacin	근육	닭, 칠면조	0.01
	간, 신장		0.08
	지방		0.02
Semduramicin	근육	닭	0.13
	간		0.4
Spectinomycin	근육	소, 돼지, 면양, 닭	0.5
	간, 지방		2
	신장		5
	우유	소	0.2
	달걀	닭	2
Spiramycin	근육	소, 돼지, 닭	0.2
	간		0.6
	지방		0.3
	신장	소, 돼지	0.3
		닭	0.8
	우유	소	0.2
	근육	어류, 새우	0.2
Streptomycin (見dihydrostreptomycin)			
Sulfadrugs	근육, 간, 신장, 달걀,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류	0.1
	우유	소, 면양	
Sulfadimethoxine(4)	근육	어류, 새우	0.1
Sulfamonomethoxine(4)	근육	어류, 새우	0.1
Testosterone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허용량 미정
Testosterone propionate	근육	황소	0.64ppb
	간		1.3ppb
	신장		1.9ppb
	지방		2.6ppb

의약품 종류	조직	동물 종류	최대 허용치(ppm)
Thiamphenicol	근육	돼지, 어류, 소, 닭	0.05
	간	돼지	0.1
		소, 닭	0.05
	신장	돼지	0.5
		소, 닭	0.05
	지방(껍질포함)	소, 닭	0.05
	지방	돼지	0.05
Tiabendazole	우유	소	0.05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산양, 면양	0.1
Tiamulin	우유	소, 면양	
	근육, 간, 신장, 지방	돼지, 가금류	0.1
Tilmicosin	근육, 지방	소, 돼지, 면양	0.1
	간	소, 면양	1
		돼지	1.5
	신장	소, 면양	0.3
		돼지	1
	근육	닭	0.075
	껍데기(지방 포함)		0.075
	간		1
	신장		0.25
Trenbolone acetate	근육	소	0.002
	간		0.01
Trichlorfon	근육, 간, 신장, 지방, 우유	소	0.05
	근육	어류	0.01
Triclabendazole	근육	소	0.2
	간, 신장		0.3
	지방		0.1
	근육, 간, 신장, 지방	면양	0.1
Trimethoprim	근육, 간, 신장, 지방	소, 돼지, 면양, 산양, 가금	0.05
	우유	소	
Tylosin	근육, 간, 신장, 지방	가축류, 가금류	0.1
	우유	소	
	달걀	가금류	0.3
Zoalene	근육	닭	3
	간, 신장		6
	지방		2
	근육, 간	칠면조	3
Zeranol	근육	소	0.02
	간		0.01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제3절 품목별 검역제도

1. 육 류

가. 「신선육의 안전위생기준(生鮮肉品類衛生標準)」

- ☐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되며 아래의 항목을 포함

항목 분류	신선육류	냉동육류	신선내장류	냉동내장류
약물 잔류량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에 의거함			
농약 잔류량	「농약 잔류량 제한 기준(禽畜產品中殘留農藥限量標準)」에 의거함			
특징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이물질, 기타 이상 등이 없어야 함			
라벨 규정	냉동 육류와 냉동 내장류도 식품관리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보관방법과 조건을 명시해야 함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됨

나. 「소, 양, 돼지 및 가금류의 중금속 함량 기준(牛羊豬及家禽可食性內臟重金屬限量標準)」

- ☐ 근거법규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로 변경함

항 목	제한치 (습윤 중량)
납	0.5 ppm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

-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름
-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시험은 표기에 사용된 마커를 포함하여 그 의약품과 의약품의 대사를 검사함

□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최대 허용치 리스트 외의 의약품은 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명단에 있는 의약품 중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의약품은 수입육류에만 적용됨

2. 농산물

가. 「잔류 농약량 안전기준(殘留農藥安全容許量標準)」

(2013년 09월 26일 部授食字第1021350575號令 수정)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름
- 기준에 따른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치와 실제 검사에서 검출된 농약잔류량은 제품의 무게기준으로 산출
- 육류와 수산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은 잔류농약 안전에 따라야 하고, 위생당국이 규정한 리스트에 없는 농약류는 검사되지 않지만 수입제품에 한해 규정된 허용치가 있으면 검사대상이 됨
- 안정성이 높은 분류에 소속된 농약들은 최대허용치 제한이 없고 검사 면제
-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금지농약 리스트에 소속된 농약들은 사용을 금함
- 관련 홈 페이지
 - <http://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나. 농산물의 중금속 제한 기준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적용대상 : 채소, 과일, 허브류

□ 적용대상의 중금속 제한 허용치

농산물 분류	카드뮴	납
작은 잎 채소류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 및 브로콜리류	0.05 ppm 이하	0.3 ppm 이하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0.3 ppm 이하
인경채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박과 및 과실 채소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콩류 및 콩과 채소류	0.2 ppm 이하	0.2 ppm 이하
딸기류 및 소형과일	0.05 ppm 이하	0.2 ppm 이하
감귤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사과 및 배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견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메론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기타 아열대 과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허브 및 향신료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버섯류	3 ppm 이하	2 ppm 이하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쌀의 중금속 허용치 : 수은 0.05ppm이하, 카드뮴 0.4ppm이하, 납0.2ppm이하

다. 한국 신선과일 수입검역 조건

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 사항
수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사과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배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복숭아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딸기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참외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포도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레몬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밀감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ding; Deli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시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사과 : 2010년10월21일 갱신. 사과 외 과일: 2010년10월1일 갱신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삽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화살깎지벌레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한국산 신선과일 대상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수입검역작업요점」 2008/7/29 수정

- 본 요점은 한국산 사과류(*Malus* spp.), 배류 (*Pyrus* spp.) 및 복숭아 (*Prunus persica*) 등 신선과일의 수입에 대해 적용하고, 기타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숙주에 감염된 신선과일은 수입을 금지함
- 공급과수원 조건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을 생산할 경우, 그 공급과수원은 생산기간에 복숭아심식나방에 대비하여 엄격한 병충해 방지조치를 진행하고 방지기록을 작성해야 함

- 한국지방정부 담당부처는 구역 내 생산자의 방지조치를 감독해야하고, 한국 농업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부른다)의 유해생물 방지이력 일체를 확보함. 그 방지이력 연도검역검사증명 시에 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방검국이라고 부른다) 검역인원에게 제공하여 확인함
- 대만으로 수송하는 배 및 복숭아 과실은 유과가 직경 2.5Cm 미달 전에 봉지를 씌우고 봉함
- 한국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고 부른다) 혹은 방검국 검역인원은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제공과수원에 대해 조사확인을 해야 하고, 신선과일의 수확 후 부터 포장장소까지 운송과정 중 복숭아 심식나방에 대한 감염을 예방관리함
- 농진청 소속 원예연구소 매년 검측방식으로써, 복숭아 심식나방의 산란기, 유충기, 신선과일 월동 준비 유충 탈피 최후 일자 등을 추산하고, 관련 자료를 식물검역소에 통지함. 검측방법은 아래와 같음
 - 기간 : 매년 9월 1일부터 복숭아심식나방 유충탈피 신선과일 월동의 최후시기 까지 추산
 - 지역 : 한국의 중부지방, 동남부지방 및 서남부지방, 각 지방마다 2개의 측정소 설립
 - 방법 : 사용성 호르몬 유인 측정기
 - 화학성분 : Z7-20-11Kt
 - 유인기 형식 : Delta trap 그리고 Wing Trap
 - 검사빈도 : 2일에서 3일마다 1회
 - 설치고도 : 지면 1M 50Cm 떨어짐
 - 설치지점 : 복숭아 심식나방의 숙주식물
- 위에 기술한 규정에 부합하는 제공 과수원은 식물검역소에 등기하여, 제공 과수원 등기 장부는 포장장소에 의해 제작 연도검역검사증명시에 방검국 검역인원에게 제공 대조 확인함. 제공 과수원 등기 장부에는 생산자 성명, 주소, 생산된 신선과일종류 및 농작면적 등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포장장소 조건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포장장소에서 포장 개시 전 식물검역소 소속 관할구역 행정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조사함
- 포장장소 시설 및 인원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은 수확에서 포장장소 이동까지 적당한 저온냉장고 혹은 밀폐식 저장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감염을 방지함
 - 포장장소는 매년 5월에서 10월간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함. 만약 창문 또는 통풍구가 있으면, 1.6mm 이하의 고르게 구멍이 있는 그물장치를 통해, 출입구 또는 문은 아래 방향으로 통풍되는 블라인드 또는 플라스틱 블라인드가 있거나 또는 기타방충시설을 설치해야 함
 - 포장장소는 신선과일 선별의 측정기구 설비를 구비해야하고, 광량이 충족되며, 신선과일의 선별 및 검사작업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 각 포장장소 내에 적어도 2개의 비호르몬 유인 측정기를 설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을 측정해야 함. 만약 복숭아심식나방을 발견 시, 포장장소 포장작업 결실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잠시 중지해야하고 이를 개정 후 다시 포장 진행을 시작함. 포장 작업 잠시 중지에 관련한 상황을 동식물방역검역국에 통지함
 - 각 포장장소에 식물검역소의 교육훈련에 합격되고, 복숭아심식나방 감염 과실을 변식(변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인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함. 그 기술인원은 모든 고정의 선별 작업에 참여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될 가능성 있는 신선과일을 축출함
- 포장장소 작업
 - 포장 장소 내 모든 대만 수입 신선과일은 방검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제공 과수원은 한국국내시장 판매와 타국으로 운반되는 신선과일을 저온저장고에 분리하여 보존되어야 함
 - 신선과일 월동준비 유충탈피 최후일자 전에 수확한 배 및 복숭아 과실은 포장장소에 진입하기 전에 포장장소 인원은 자루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만약 종이봉투가 열려 봉합되지 않거나 혹은 종이봉투 파손 혹은 종이봉투 및 과실분리의 경우, 포장장소 반입을 금지함

- 포장장소는 매일 선별 및 포장작업 진행 전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살충제를 분사해야 함
-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포장과정은 기타국가로 운반 혹은 한국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포장과정과 동시진행 할 수 없음
- 식물검역소 검역요원은 신선과일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감시해야 함
- 폐기과실은 용기 안에 담아 매일 포장장소 밖으로 내보내 소제 혹은 소각함
- 포장장소는 매년 5월에서 10월 이외의 기간에, 만약 식물검역소 인가를 통한 엄밀한 방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몰 후에 관련된 포장 작업을 집행해서는 안 됨
- 포장장소는 과수원의 복숭아 심식나방 방지기록을 보유제공하고, 연도검역검사증명 시 검사기록을 방검국 검역인원에게 제공하여 확인 함
- 위에 기술한 규정에 부합한 포장장소는 식물검역소를 통해 조사 등기를 허가 받고, 식물 검역소는 안내책자로 정리(내용은 포장장소명칭 및 대표번호, 주소, 책임자 및 포장 신선과일종류를 포함한다)하고, 년도 검역검사증명 전에 방검국에 제공하여 비교 대사 함. 대만으로 신선과일을 수송하는 기간 중 신규 증설 포장장소가 있으면, 식물 검역소는 바로 갱신 리스트를 방검국에 송달하고, 필요시 방검국은 한국이 검 증 완료한 신규포장장소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고 관련 소요비용은 한국이 부담함
- 포장재료 조건
 - 각 포장 상자 표면에는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명칭, 포장장소명칭 혹은 대표번호 및 「To Taiwan」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포장 상자 표면에는 만약 통풍구가 있으면, 구경 1.6mm 이하의 그물장치 또는 밀폐식 공구에 의하여 운송함
- 검역 합격한 과일이 재차 해충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장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함
 - 포장된 신선과일은 시설 외부에 방치하면 안 되며, 직접적으로 밖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 신선과일 운송에서 보존 장소 과정까지 구경1.6mm이하의 망사, 범포(帆布) 혹은 기타 방충 도구로 덮음
 - 검역 합격한 신선과일과 미검역 과일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해서는 안 됨

○ 원산지 검증

- 매년 신선과일 수출 전 식물 검역소는 인원을 파견하여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과수원, 포장장소 및 수출검역작업 등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에서 전담함

○ 수출검역

-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배 및 복숭아과실을 포장장소까지 운송 전에 과실 자루의 안정성을 검사해야하고, 만약 종이봉투가 열려 미봉합 혹은 종이봉투 파손 혹은 종이봉투 및 과실이 분리되면 포장장소 반입을 금지함
- 식물 검역소는 매년 사과를 수출하기 전에 방검국에 아래 열거한 시기에 통지해야함
 - 복숭아 심식나방 유충탈피의 신선과일 월동 최후 출현의 시기를 추산함
 - 대만으로 수송하는 사과 검역의 시기 처리를 시작하여 복숭아심식나방 유충탈피 신선과일 월동 최후출현 시기 후를 추산함
 - 선별 작업 기간에,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포장장소 과실을 철저히 제거 폐기할 것을 지도하고, 폐과실은 용기 안에 담아 매일 포장장소 밖으로 격리 소제 또는 소각함
- 포장작업 완료 후,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 더미에 따라 총 상자 수당 최소한 2%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1개를 절개하여 과일 내부를 검사함 ; 검사의 비율은 필요시 증가할 수 있음
- 수출검역에서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시, 그 해당 신선과일을 대만에 수입하지 않고, 검역을 다시 신청할 수도 없음. 그 제공 과수원에서 생산한 신선과일은 그해 전량 대만으로 수송하지 않음
- 수출검역에서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그 포장장소는 이미 포장한 신선과일의 대 대만 운송을 잠시 중지하고, 곧바로 원인 규명 및 채취 교정 조치하고, 검역작업을 재개하여야 함. 별도로 작업의 잠정 중지 상황을 즉시 방검국에 통지
- 검역에 합격된 신선과일에 대해, 식물검역소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 신선과일 검역을 통해 복숭아심식나방 미 감염 및 기타 방검국 지정의 검역 유해생물, 검역시기, 포장장소 대표번호 또는 명칭 등 자료를 명료하게 기재함

- 검역 합격 후 14일이 경과된 미 수출 신선과일은 반드시 재검사하여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해야만 대만으로 운송할 수 있음
- 중계 운송의 예방규정
 - 제3지역을 통한 중계운송의 신선과일은 대만 「식물 또는 식물산품운수도중경 유 특정역병충해구역 수입검역 작업방법」의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
- 수입검역
 - 수입검역의 과정, 방법 및 샘플은 대만 「식물방역검역법」 및 관련 검역규정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식물검역소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의 미 첨부 혹은 증명서상 기재사항이 본 요점과 부합되지 않는 신선과일은 수입하지 않음
 - 신선과일의 포장 상자 위의 표시가 본 요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지 않음
 - 신선과일의 수입항구 검역 시 살아있는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시, 해당 신선과일은 반송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 방검국이 수입검역으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후, 즉시 이를 식물검역소에 통지하고, 처분된 신선과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복사본, 포장상자 자료,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 등 관련자료를 제공함
- 수출작업의 잠정 중단 및 재개
 - 식물검역소가 방역검역국으로부터 최초 복숭아심식나방 검출 통지를 받은 후, 그 즉시 해당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신선과일 종류의 대 대만 수송 검역을 잠시 중지함
 - 해당 종류의 신선과일에 대해 대 대만 수송 작업 잠시 중지시기 전, 기 발급한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해당 종류의 신선과일은, 잠시 중지한 날의 명일부터 기산하여 7일내 선적(항공기)하여 대만으로 운송했지만, 엄격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기간에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할 시, 상기 “수입검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물검역소는 해당 신선과일에 대해 대 대만 수송 작업을 잠시 중지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교정조치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보고를 방검국에 송달하여 심사함
- 만일 조사결과 작업에 오류가 있음이 뚜렷하고 교정조치를 해야 할 경우, 식물검역소는 확인교정의 보고를 제출해야 함. 방역검역국은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집행 교정 조치의 인증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함
- 방검국을 통해 심사 인가한 식물검역소의 보고 또는 현장 검사증명 교정 조치 후, 해당 신선과일의 대 대만 수송에 대해 잠시 중지한 조치를 취소함

라. 한국 신선 채소 수입검역 조건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i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 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삼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공 통 제 한 사 항

-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화살각지벌레
-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구근진드기
-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감자나방
- *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감자 역병균 A2타입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인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옥수수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年9月6日
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8月15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호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시금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당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앞이 달린 경우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추가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2010年10月1日
브로콜리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파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마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양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고추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오이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마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年5月6日
느타리버섯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09年8月14日
가지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10月1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토마토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3. 수산물

가. 수산물의 위생기준 (2009.11.30 발표)

-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 수산물류의 최대 중금속 허용치는 아래와 같음

중금속 분류	메틸 수은	카드뮴	납
고래, 상어, 황새치, 참치, 심해어	2 ppm	0.3 ppm	0.3 ppm
줄비늘치, 가다랑어, 쌍각류, 대서양 메기, 아귀, 돔, 송어, 가오리, 갈치, 고등어, 참다랑어, 장어, 창꼬치어	1 ppm		
그외 어류	0.5 ppm		
조개류	0.5 ppm	2 ppm	2 ppm
두족류(내장 제외)	0.5 ppm	2 ppm	1 ppm
갑각류	0.5 ppm	0.5 ppm	0.5 ppm

자료 : 식품약물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나. 해조류의 위생기준 (2013.8.21 발표)

- ☐ 해조류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조류식품위생표준안 확정(붙임 1)(2013년 8월 21일 部授食字第1021350295號令 공포)
 -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 「판매의 식품, 식품용 세척제 및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안전 및 품질의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표준은 중앙관리가관이 정한다」
 - 해조류식품의 적용범위 확대
 - 관리 범주를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남조, 녹조, 갈조 및 홍조류 등 제품으로 확대
 -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 규정
 - 해조류 식품의 중금속 제한량 규정
 - 해조류 식품의 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규정
 - 본 표준의 시행일자 : 공포일 기준(2013.8.21.)

■ 해조류(藻類) 식품위생표준초안 조문설명 ■

조 문	설 명											
제1조 본 표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한다.	본 표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2조 본 표준은 식용 가능한 남조류, 녹조류, 갈조류 및 홍조류 등 식품에 적용된다.	본 표준에서 칭하는 해조류 식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3조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은 식품 형태(신선 또는 가공 등)에 따라 「일반식품위생표준(一般食品衛生標準)」 「생식용식품류위생표준(生食用食品類衛生標準)」 또는 「생(生)·숙(熟)식혼합즉석식품류위생표준(生熟食混合即食食品類衛生標準)」으로 적용한다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제4조 해조류 식품 중금속함량은 아래 제한 표준량에 부합해야 한다.	해조류 식품의 중금속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table><tr><th>항 목</th><th>제한량(ppm)</th></tr><tr><td>납</td><td>1.0</td></tr><tr><td>카드뮴</td><td>1.0</td></tr><tr><td>수은</td><td>0.5</td></tr><tr><td>무기비소</td><td>1.0</td></tr><tr><td colspan="2">비고 : 85% 수분 포함된 신선 해조류 기준</td></tr></table>		항 목	제한량(ppm)	납	1.0	카드뮴	1.0	수은	0.5	무기비소	1.0	비고 : 85% 수분 포함된 신선 해조류 기준
항 목	제한량(ppm)											
납	1.0											
카드뮴	1.0											
수은	0.5											
무기비소	1.0											
비고 : 85% 수분 포함된 신선 해조류 기준												
제5조 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해조류 식품의 페어포바이드 제한량을 명확히 규정한다.											
<table><tr><th>종 류 항 목</th><th>녹조류</th><th>남조류</th></tr><tr><td>기존 페어포바이드</td><td>60 mg/100g</td><td>50 mg/100g</td></tr><tr><td>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td><td>80 mg/100g</td><td>100 mg/100g</td></tr></table> (비고) 1. 본 표는 수분함량 7% 이하의 녹조류 및 남조류(건조량 기준)에 적용되고 신선식품 및 홍조류, 갈조류 제품은 적용되지 않음 2. 「mg/100g」은 100g 당 제품 중 기존 페어포바이드 또는 총 페어포바이드의 함량을 가리킴		종 류 항 목	녹조류	남조류	기존 페어포바이드	60 mg/100g	50 mg/100g	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	80 mg/100g	100 mg/100g		
종 류 항 목	녹조류	남조류										
기존 페어포바이드	60 mg/100g	50 mg/100g										
총 페어포바이드 (기존 페어포바이드 +엽록소분해활성도)	80 mg/100g	100 mg/100g										
제6조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 된다.	본 표준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한다.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4. 유아식품 및 유제품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기준〉

□ 유아식품의 위생기준 (2009.07.09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 적용대상 : 분유 및 씨리얼이나 콩으로 제조된 보조식품류
- 유아식품의 총 일반세균수는 1g당 50,000을 초과하면 안 됨
- 유아식품에는 대장균류 검출불가
- 영아용 조제분유에는 사카자키균 검출불가
- 유아식품은 호르몬, 향생제, 방사능 물질, 농약, 아플라톡신, 또는 다른 오염과 혼합되면 안 됨
-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와 제한기준에 따름

□ 유제품의 위생기준 (2008.07.16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규정됨
-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기준

유제품 종류		특징	산도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 대장균수 (MPN/g)	식품첨가물	참고
액상우유	전지우유	부패, 변색, 악취, 이취가 없어야 함	0.18% 이하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첨가 불가	리스테 리아균, 살모넬 라균, 포도상 구균은 검출 불가
	저지방우유							
	탈지우유							
	살균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영양 강화 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영양첨가제 -와카세인 첨가 가능	
분유	전지분유	부패, 변색, 악취, 이취가 없어야 함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식품첨가 물의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부합	
	탈지분유							
	조미분유							
	조제분유							
연유	무당 연유	살균우유는 응고나 침전이 있으면 안됨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연유							
가미액상우유	가미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살균가미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			
크림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버터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5. 음료 및 식수

□ 음료류의 위생기준 (2013.08.20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은 식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 기준

음료 항목	카페인 함유량 조건
커피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된 커피는 카페인 함량 기준치 2 mg/100 mL(20ppm)를 초과하면 안 됨
차와 코코아	카페인 함유량이 50 mg/100 mL (500 ppm)을 초과하면 안 되고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된 것은 2 mg/100 mL(20ppm)를 초과하면 안 됨
기타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량 32 mg/100 mL(320 ppm)을 초과하면 안 됨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음료의 중금속 최대 허용치

중금속 항목	제한량
비소	0.2 ppm
납	0.3 ppm
구리	5.0 ppm
주석	150 ppm (캔 제품류)
안티몬	0.15 ppm

*신선/농축 과일주스와 야채주스는 제외됨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미생물 허용치

음료 분류	일반세균수 (cfu/mL)	대장균수 (MPN/mL)	병원성대장균수 (MPN/mL)	살모넬라
탄산음료	10 ₄ 이하 (포장 시 100 이하)	10 이하 (포장시 음성)	음성	음성
생과일즙, 생야채즙 (살균처리 무)	—	10 ₃ 이하	10 이하	음성
환원 과즙, 환원 야채즙, 퓨레	10 ₄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10 ₃ 이하	음성	음성
발효 과즙 또는 야채즙	—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음성	음성
커피, 코코아, 차, 씨리얼, 콩 등을 포함한 음료	10 ₄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음성	음성
유제품을 포함한 산성 음료	—	10 이하 (포장시 음성)	음성	음성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수의 위생기준(2009.09.17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적용대상 : 소비 목적인 포장된 식수
- 포장된 식수의 제조에 사용된 원천수는 「식수를 위한 원천수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함
- 브론산염의 최대 허용치는 0.01ppm임
- 중금속 허용치

중금속 종류	최대 허용치 (ppm)
비소	0.01
납	0.05
아연	5.0
구리	1.0
수은	0.001
카드뮴	0.005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미생물 허용치

미생물 종류	제한
대장균	음성
분원성연쇄상구균	음성
녹농균	음성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6. 주 류

□ 주류 관리법

- 주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7일 「담배 주류 관리법」을 수정 공표하였고 수입주류와 관련한 제39조 3항이 추가됨
- 수입주류는 위생기준에 따라 중앙주요기관이 집행하는 검험에 부합해야 수입이 가능함
- 2005년 7월 27일에 「수입주류검험방법」을 공표하여 수입주류의 검험은 본 규정에 근거함
- 수입주류의 검험은 재정부국고서에서 신고접수를 담당하고 샘플링과 검사작업은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위탁함. 검사항목은 메탄올, 납, 이산화황의 함량을 포함함

□ 수입주류의 검험·검사

- 법률 근거 : 「수입주류 검험방법」 2007년 06월 04일 수정
- 검험 방식 : 서류검사, 일반검험, 전수검험
- 서류검사의 조건
 - 이전에 위생기준에 부합하여 검험 통과한 기록이 있는 제품. 일반 검험 시 표본으로 채취되지 않은 제품
 - 당국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험한 시험성적서, 검역증명서, 또는 관련 검험증명 등을 제출하는 제품

- 검험신청서류
 - 검험신청서
 - 세관 수입신고서 복사본
 - 수입제품의 기본자료 보고표
 - 원산지 증명서
- 검험비 : CIF 가격의 화물가치의 0.1% (각 배치별 적용). 각 배치별 최소 검사비용은 NT\$200, 최대 검사비용은 NT\$50,000

□ 주류의 위생기준 (2008.01.01 수정)

- 본 기준은 「담배주류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름
- 주류의 첨가물은 다음 규정에 따름
- 메틸 알코올의 용량은 주류에 따라 규정함(소주와 맥주는 리터당 1000mg이하)

잔류 첨가물 분류	내 용
sorbic acid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2g 이하
benzoic acid	알콜도수 15%이하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색소	주류에서 리터당 Lutein잔류량이 10mg 이하
Sulfur dioxide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맥주와 곡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03g 이하 다른 주류에선 검출불가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주류의 리터당 납 허용치는 0.3mg 이하
- 주류의 첨가물은 유독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것을 포함하면 안 되고, 식품이나 음료에 한 번도 사용한 전례가 없거나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음

7. 중약재(한약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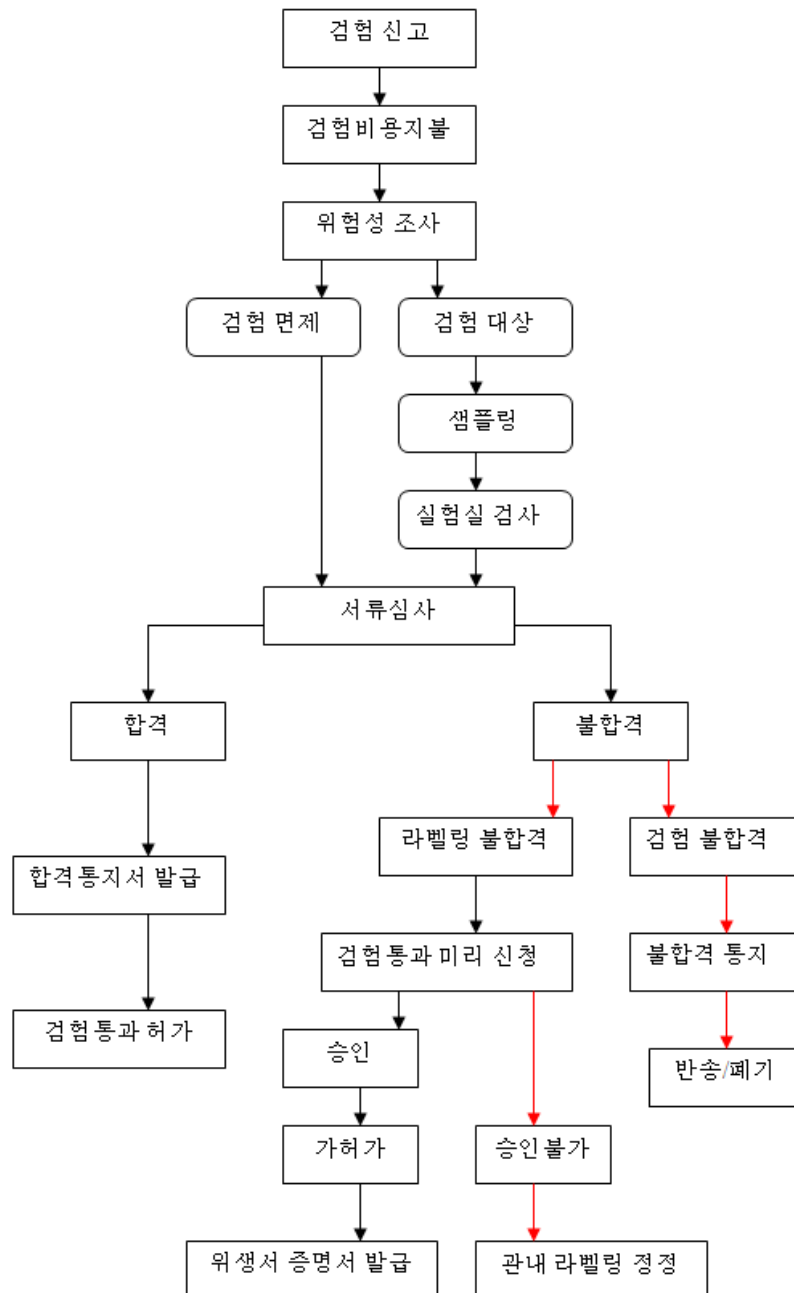
□ 관리 기관

- 중약재의 검험은 행정원 위생서와 중의약위원회(이하 중의약위원회) 협의 아래, 경제부 표준검역국에 위탁하여 검험 검역을 집행함
- 중약재의 검험신청은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에서 접수하고 중의약위원회가 발포한 CCC코드, 검험기준, 검험항목 및 검험방법에 따라 표준검역국이 검험을 진행함

□ 중약재의 검험

- 법률근거 : 「중약재수입검사작업규정」
- 검험신청서류 : 검험신청서,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중약상 자격증 복사본,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 검험방식 : 모니터링검사, 건대추, 황기, 당귀, 감초뿌리, 서귀, 귀미 등 5%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포장, 외관, 라벨링을 포함한 일반검사를 하고 그 외 기타 중약재는 서류심사만 함. 단 필요시 일반검사 진행(건조 중약재들은 식물검역면제)
- 검험비용 : 수입화물 CIF가격의 0.15%. 배치별 최소비용은 NT\$200. NT\$100,000 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수입 중약재 검험과정 절차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8. 일반 가공식품

□ 일반식품의 위생기준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은 본 규정에 따름
- 제품은 그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 제적 이슈, 기생충이 발견되면 안 됨
- 미생물 제한치

제품 분류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 수 (MPN/g)
준비처리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10 ³ 이하	음성
준비처리 후에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	—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진균독 제한기준(食品中真菌毒素限量標準)」(2013.08.20 수정)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름
-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허용치

식품 분류	아플라톡신 허용치 (아플라톡신 B ₁ , B ₂ , G ₁ , G ₂ 포함)
식용 기름과 지방	10 ppb 이하
우유	0.5 ppb 이하 (아플라톡신M ₁)
분유	5.0 ppb 이하 (아플라톡신M ₁)
다른 식품	10 ppb 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오크라톡신(Ochratoxin A) 허용치

식품 분류	오크라톡신 허용치
로스팅한 커피빈과 커피분말	5 ppb 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파툴린(Patulin) 허용치

식품 분류	파툴린 허용치
사과주스와 사과주스를 포함한 혼합 음료	50 ppb 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시트린닌(citrinin) 허용치

식품 분류	시트린닌 허용치
홍국적색소	200 ppb 이하
Red yeast rice	5 ppm 이하
Red yeast rice를 포함한 복합식품	2 ppm 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냉동 식품류의 위생기준 (1998.06.16 수정)

- 제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없어야 함

○ 식품분류별 위생기준

식품 분류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대장균수 (MPN/g)	VBN 측정치 (mg/100 g)
냉동 어패류 (익힌 것)	300만 이하		10 이하	25mg 이하 (판새류는 50mg 이하)
냉동 즉석제품 (조리 불필요)	100,000 이하	10 이하	음성	
냉동 식품 (조리 필요)	냉동 전 열처리 된 것: 10만 이하	10 이하	음성	15mg 이하
	냉동 전 열처리 안된것: 300만 이하		50이하	

자료 : 식품약품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제4절 검역사례

1. 최근 검역 사례

■ 5월 대만 검역 불합격 식품 사례 ■

(단위 : 잔류농약-ppm, 중량-kg)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
5/1 (4/10)	미국	체리당	방부제	벤조산나트륨 0.68g/kg 소르빈산 0.78g/kg	0.6g/kg 0.5g/kg	반송 폐기	12.64
5/1 (4/10)	인도	고추	잔류농약	트라이조포스 0.62 에티온 1.45	0.02 미허용	"	7,000
5/7 (4/8)	미얀마	EAGLE 녹두	잔류농약	아세페이트 0.07 메타미도포스 0.07	0.05 0.03	"	125톤
5/7 (4/8)	이태리	아루굴라 (지마채)	잔류농약	보스칼리드 3.85 피라클로스트로바 0.4	미허용 미허용	"	29
5/7 (4/8)	중국	연자	발암성독소	아플라톡신 22.8	미허용	"	2,500
5/7 (4/8)	중국	산사	잔류농약	말라티온 0.1 터브코나졸 0.08	0.01 0.01	"	7톤
5/7 (4/8)	중국	화초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13 클로르피리포스 0.11	0.01 0.01	"	1톤
5/14 (4/19)	미얀마	녹두	잔류농약	말라티온 0.04	0.03	"	48톤
5/14 (4/19)	네덜란드	지마채	잔류농약	아세페이드 2.08	0.01	"	36
5/14 (4/18)	일본	냉동목어	중금속	카드뮴 5ppm	2ppm	"	9
5/14 (4/18)	오스트 리아	랍스터	중금속	카드뮴 1.5ppm	0.5ppm	"	405
5/14 (4/16)	스웨덴	초코렛아몬드 크림케익	대장균	대장균 23MPN/kg	10MPN/kg	"	168
5/14 (4/12)	베트남	조미료	식품 첨가물	사카린 0.23/kg	미허용	"	100
5/14 (4/12)	칠레	신선 복숭아	잔류농약	Cyprodinil+Fludioxonil 0.03	미허용	"	23톤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 기준	결과	중량
5/14 (4/12)	일본	건조 무임(과립)	잔류농약	플루페녹수론 0.08	0.01	반송 폐기	18
5/14 (4/9)	칠레	신선포도	잔류농약	보스칼리드 1.2	1.0	"	14톤
5/14 (4/12)	미국	블루베리	잔류농약	사이프로디닐 0.04	미허용	"	360
5/21 (4/23)	중국	흰목이버섯	잔류농약	투린지엔스스균 0.02	미허용	"	4톤
5/21 (4/22)	중국	구기자	잔류농약	클로르페나피르 0.06	0.01	"	54
5/21 (4/22)	베트남	NGOCCIE 스프링롤 소스	방부제	소르빈산 1.2g/kg	1.0g/kg	"	180
5/21 (4/22)	일본	신선딸기	잔류농약	사이플루메토펜 0.67	미허용	"	34
5/21 (4/22)	태국	小老關 김 (토마토 맛)	식품 첨가물	사카린 0.09g/kg	미허용	"	691
5/21 (4/22)	일본	감귤	잔류농약	Tolfenpyrad 0.8	미허용	"	10
5/21 (4/22)	인도	계(활)	중금속	카드뮴 0.8ppm	0.5ppm	"	70
5/21 (4/22)	오스트리아	완두	잔류농약	플루트리올 0.32	0.01	"	72톤
5/28 (5/1)	중국	화초	잔류농약	크로르피리포스 0.28	미허용	"	13톤
5/28 (4/29)	중국	무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 2.52	0.01	"	25톤
5/28 (4/30)	일본	시금치	잔류농약	플루페녹수론 0.08	0.01	"	12
5/28 (4/29)	인도	건고추	잔류농약	트라이아로포스 0.25 카벤다짐 1.24	0.02 1.0	"	4.5톤
5/28 (4/29)	프랑스	옥수수분말	잔류농약	델타메스린 0.15	0.05	"	22톤
5/28 (4/29)	베트남	완두콩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 0.07 타브코나졸 0.02	0.01 0.01	"	5,600+ 7,824
5/28 (4/29)	호주	소맥(밀)	잔류농약	페니트로티온 0.64	0.5	"	125톤

Ⅱ 6월 대만 검역 불합격 식품 사례 Ⅱ

(단위 : 잔류농약-ppm, 중량-kg)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
6/4 (5/6)	중국	조미료	잔류농약	Acetamiprid 0.43 carbofuran 0.15	0.05 미허용	반송 폐기	56
6/4 (5/6)	일본	pet병전용 녹차티백	잔류농약	Thiacloprid 0.24	미허용	"	36
6/4 (5/7)	일본	pet병전용 우롱차티백	잔류농약	Fipronil 0.22	0.005	"	60
6/4 (5/7)	태국	건고추	잔류농약	Flusilazole 0.22 Triazophos 0.5	미허용 0.1	"	1,250
6/4 (5/20)	일본	레몬향료	잔류농약	Carbendazim 0.04	0.01	"	684
6/4 (5/12)	인도네시아	쌀과자	식품첨가물 (가미제)	Cyclamate 0.87g/kg	미허용	"	2,975
6/4 (4/19)	미얀마	녹두	잔류농약	Methamidophos 0.05	0.03	"	240톤
6/11 (5/16)	일본	온주 감귤	잔류농약	Fenitrothion 1.1	0.5	"	266
6/11 (5/14)	베트남	조미료	식품첨가물 (가미제)	Saccharin 0.15g/kg	미허용	"	100
6/11 (4/23)	미국	에너지GEL 기능성식품	방부제	Sodium Benzoate 0.8g/kg Sorbic Acid 0.6g/kg	0.6g/kg 0.5g/kg	"	92.16
6/11 (5/9)	중국	관엽어	동물의약품 검출	Nitrofurans 대사물 14.8ppb Malachite green 1.6ppb	미허용 미허용	"	6,885
6/11 (5/13)	중국	화초	잔류농약	Chlorpyrifor 0.11	미허용	"	1,200
6/18 (5/22)	일본	AGF 녹차분말	잔류농약	Thiacloprid 0.37	미허용	"	1.1
6/18 (5/22)	미국	지마채	잔류농약	Bioscalid 0.03 flinlicamid 1.6	미허용 미허용	"	27.15
6/18 (5/16)	미국	냉동닭다리	동물의약품 검출	Nicarbazin 0.56ppm	0.2ppm	"	907
6/18 (5/16)	미국	신선딸기	잔류농약	Nicarbazin 0.57ppm	0.03	"	1,219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
6/18 (5/16)	스웨덴	아몬드초코렛 크림케익	미생물	대장균 150MPN/g	10MPN/g	반송 폐기	144
6/25 (5/21)	프랑스	냉동 복분자과립	잔류농약	Cyprodinil 0.04 Fludioxonil 0.04	미허용	"	120
6/25 (5/21)	파키스탄	건조 호로파	잔류농약	Chlorpyrifos 0.18	미허용	"	66
6/26 (5/13)	인도	고추가루	잔류농약	Tebuconazole 0.19	0.1	"	5,000
6/26 (5/27)	미얀마	녹두	잔류농약	Methamidophos 0.05	0.03	"	24톤
6/26 (5/30)	중국	율무 추출물	방부제	Sodiumbenzoate 0.1g/kg	미허용	"	25

7월 대만 검역 불합격 식품 사례

(단위 : 잔류농약-ppm, 중량-kg)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 기준	결과	중량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Endosulfan 0.02 Fipronil 0.003 Fenoxazin 0.05	0.01 0.001 0.01	반송 폐기	12,000
7/16 (6/21)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rodiclofen 0.06	미허용	"	2,676
7/16 (6/21)	일본	감귤	잔류농약	Tolfenpyrad 0.59	미허용	"	55
7/16 (6/17)	태국	염장죽순	방부제	Butylparaben 0.032/kg	미허용	"	52,200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Spridiclofen 0.02	미허용	"	12,500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Fenobucarb 0.02	미허용	"	13,000
7/16 (6/17)	태국	건고추	잔류농약	Tebuconazole 0.25 Triazophos 0.28 Ethion 1.9	0.01 0.02 0.5	"	150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Pyriproxyfen 0.05 Fipronil 0.004 Fenobucarb 0.22	0.01 0.001 미허용	반송 폐기	13,000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분야	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
7/16 (6/17)	중국	고추	잔류농약	Tenbucoazole 0.03	0.01	"	6,384
7/23 (6/25)	베트남	조제 국물(조각)	표백제	이산화황 0.109/kg	0.03	"	1,278.7 2
7/23 (6/29)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Methoxyfenozide 0.06	미허용	"	1,113
7/23 (6/28)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irodiclofen 0.06	미허용	"	1,690
7/23 (6/29)	중국	고추	잔류농약	Difenoconazole 0.12	미허용	"	13,800
7/23 (6/28)	말레시아	깨스닉	가미제	Cyclamate 0.39/kg	미허용	"	13,326
7/23 (6/25)	이태리	탈수건조 버섯가루	잔류농약	Carbendazim 0.27 Carbofuran 0.08	0.05 미허용	"	200
7/23 (6/28)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irodiclofen 0.06	미허용	"	16,353
7/23 (6/28)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irodiclofen 0.04	미허용	"	3,944
7/30 (7/3)	말레시아	파리퐁 딸기잼스닉	가미제	Cyclamate 0.05/kg	미허용	"	1,376.1
7/30 (7/2)	프랑스	냉동특급 라즈베리	잔류농약	Cyprodinil 0.04 Fludioxonil 0.06	미허용 미허용	"	200
7/30 (7/3)	베트남	TAI THUAN 액젓	가미제	Saccharin 0.02	미허용	"	390
7/30 (7/3)	베트남	TAI THUAN 액젓	가미제	Saccharin 0.04	미허용	"	234
7/30 (7/2)	중국	호초열매	잔류농약	Acetamiprid 0.28	0.01	"	1,900
7/30 (7/1)	미국	블루베리	잔류농약	Malathion 0.07	0.01	"	612
7/30 (6/27)	미국	블루베리	잔류농약	Cyprodinil 0.02	미허용	"	653.76

Ⅱ 8월 대만 검역 불합격 식품 사례 Ⅱ

(단위 : 잔류농약-ppm, 중량-kg)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분야	불합격사유	허용 기준	결과	중량
8/6 (7/11)	중국	마	표백제	이산화황 0.81g/kg	0.50g/kg	반송 폐기	3,090
8/6 (7/9)	중국	냉동 파프리카	잔류농약	피리프로시펜 0.02 피프로닐 0.011 웨노브카브 0.04	0.01 0.001 미허용	"	2,007
8/6 (7/8)	중국	산사(절편)	잔류농약	말라티온 0.03 터브코나졸 0.06	0.01 0.01	"	7,428
8/6 (7/8)	일본	감귤 (도쿠시마)	잔류농약	펜토에이트 0.09	0.02	"	100
8/6 (7/4)	베트남	죽순절임	방부제	파라벤 0.04	미허용	"	26,100
8/6 (6/30)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스피로디크로펜 0.08	미허용	"	5,103
8/13 (7/15)	태국	두리안	잔류농약	프로시미돈 0.85	0.05	"	14,850
8/13 (7/17)	일본	배추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5	미허용	"	150
8/13 (7/17)	베트남	녹차	잔류농약	피프로닐 0.013	0.005	"	5,550
8/13 (7/17)	네덜 란드	와거(莴苣)	잔류농약	티아벤다졸 0.05	미허용	"	75
8/13 (7/17)	일본	블루베리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2	0.01	"	10
8/13 (7/15)	베트남	재스민차	잔류농약	엔도설판 0.18	0.05	"	19,080
8/13 (7/10)	중국	산초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50 카보퓨란 0.35 클로르피리포스 0.23 이미다크로프리드 0.37	0.01 미허용 미허용 0.01	"	"
8/13 (7/08)	캐나다	홍차	잔류농약	엔도설판 0.14	0.05	"	"
8/13 (7/16)	태국	조미매실	식품 첨가물	타이클라민산나트륨 1.5g/kg	1.0g/kg	반송 폐기	14,544
8/13 (7/12)	이탈리아	노란치커리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12	0.01	반송 폐기	20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
8/13 (7/05)	중국	건조박하잎	잔류농약	카벤다짐 0.08 디메토모르프 0.09 펜시큐런 0.74	0.01 0.01 0.01	반송 폐기	20
8/13 (7/03)	스리랑카	실론시나몬 말이	표백제	이산화황 0.152g/kg	0.30g/kg	반송 폐기	150
8/20 (7/24)	캐나다	신선체리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 0.05	0.01	반송 폐기	3,266
8/20 (7/24)	미국	불고기양념	방부제	소르빈산 1.4g/kg	1.0g/kg	반송 폐기	1,190.7
8/20 (7/23)	베트남	녹차	잔류농약	피프로닐 0.018	0.005	반송 폐기	7,380
8/20 (7/22)	태국	고춧가루	잔류농약	트라이아조포스 0.38	0.02	반송 폐기	500
8/20 (7/19)	태국	야자	잔류농약	카벤다짐 0.2	0.1	반송 폐기	24,300
8/20 (7/24)	캐나다	체리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 0.02	0.01	반송 폐기	3,266
8/20 (7/19)	남아공	오렌지	잔류농약	클로란트라닐리프롤 0.05	미허용	반송 폐기	23,680
8/20 (7/24)	싱가포르	건고추	잔류농약	에티온 0.27	미허용	반송 폐기	7.5
8/27 (7/31)	미국	시금치	잔류농약	페메트린 4.9 플루오피콜라이드 0.02	2.0 미허용	반송 폐기	9
8/27 (7/31)	인도네시아	로브스터 (사슴무늬닭새우)	항생제	니트로푸란 8ppb	미허용	반송 폐기	33
8/27 (7/29)	중국	건조 조미복숭아	방부제	살리실산 0.13g/kg	미허용	반송 폐기	2,040
8/27 (7/22)	미국	칠리소스	표백제	이산화황 0.16g/kg	0.030g/kg	반송 폐기	171.3

9월 대만 검역 불합격 식품 사례

(단위 : 잔류농약-ppm, 중량-kg)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
9/3 (8/8)	중국	냉동새우	금속	카드뮴1.18ppm	0.5ppm	반송 폐기	480
9/3 (8/6)	베트남	죽순절임	방부제	파라벤0.026g/kg	미허용	반송 폐기	26,100
9/3 (8/3)	미국	신선시금치	잔류농약	퍼메트린6.0	2.0	폐기	9
9/3 (8/2)	미국	KRAFT 바비큐소스	방부제	소르브산1.3g/kg	1.0	반송 폐기	1,360.8
9/10 (8/8)	일본	와사비가루	잔류농약	테부페노자이드0.35	미허용	반송 폐기	400
9/10 (8/14)	말레이시아	김맛과자	첨가제	사이클라민산나트륨 1.28g/kg	미허용	반송 폐기	2,094
9/10 (8/12)	베트남	말린홍차잎	잔류농약	피프로닐0.008	0.005	반송 폐기	9,420
9/10 (7/26)	세르비아	냉동복분자	잔류농약	싸이프로디닐0.06 플루디옥소닐0.10	미허용 미허용	반송 폐기	300
9/17 (8/22)	일본	온실밀감	잔류농약	이프로드아이온0.16 Tolfenpyrad0.28	0.05 미허용	반송 폐기	48.6
9/17 (8/19)	태국	울무	독소	아플라톡신53ppm	10	반송 폐기	46,644
9/17 (8/19)	일본	AGFAGF 녹차가루	잔류농약	티아클로프리드 0.23	미허용	반송 폐기	9.22
9/17 (8/18)	중국	산사(山楂)	잔류농약	말라티온0.06 터브코나졸0.03	0.01 0.01	반송 폐기	918
9/17 (8/19)	태국	고춧가루	잔류농약	트라이아조포스2.22	0.02	반송 폐기	168
9/17 (8/18)	중국	건백합	식품첨가물	이산화황0.93g/kg	0.30g/kg	반송 폐기	1,127.1
9/17 (8/17)	오스트리아	신선감귤	잔류농약	이프로드아이온0.28	0.05	반송 폐기	23,040
9/17 (8/13)	중국	흰목이	잔류농약	엔도설판0.03	0.01	반송 폐기	3,213
9/17 (8/13)	스페인	CEBOLLA BOMBA 쌀	잔류농약	델타메틀린0.34	0.05	반송 폐기	200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 기준	결과	중량
9/17 (8/12)	인도네시아	샌드	식품첨가물	이산화황0.044	0.030	반송 폐기	1,745.28
9/24 (8/30)	일본	신선배	잔류농약	사이플루메토펜0.03	미허용	반송 폐기	250
9/24 (8/29)	인도	여주(BITTER MELON) 추출물	방부제	메칠파라벤0.057g/kg	미허용	반송 폐기	25
9/24 (8/26)	미국	냉동소고기	동물용 약품	zilpaterol1.1	미허용	반송 폐기	13,284
9/24 (8/26)	일본	유자껍질	잔류농약	크레속심메틸(액상수화제) 0.07 사이플루메토펜0.02	0.01 미허용	반송 폐기	30
9/24 (8/22)	중국	고추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0.09	미허용	반송 폐기	15,750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2. 주요 국가별 사례

가. 한국산

☐ 사례 없음

나. 미국

☐ 뼈 없는 냉동쇠고기

제품명	뼈 없는 냉동소고기 (2013.10.29 발표)
CCC Code	0202.30.90.90.2
제조업체	TYSON FRESH MEATS, INC.
중량	21,802 KG
불합격 원인	질파테롤 검출 : 0.6 ppb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뼈 없는 냉동쇠고기

제품명	뼈 없는 냉동소고기 (2013.10.08 발표)
CCC Code	0202.30.90.90.3
제조업체	3D
중량	16,824.7 KG
불합격 원인	질파테롤 검출 : 0.5 ppb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신선 복숭아

제품명	신선복숭아 (2013.10.01 발표)
CCC Code	0809.30.00.10.5
제조업체	KINGS RIVER, INC.
중량	5,552 KG
불합격 원인	잔류 농약 스피로디크로펜 검출 : 0.04 ppb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11일 홍콩으로 반송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신선감자

제품명	신선감자 (2013.09.24 발표)
CCC Code	0701.90.00.00.3
제조업체	ROWLAND TRADING INC.
중량	23,496.48 KG
불합격 원인	잔류 농약 메칠펜타클로로페닐설파이드 (0.01 ppb) P.C.A (0.02 ppm), PCNB (0.05 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신선블루베리

제품명	신선블루베리 (2013.07.30 발표)
CCC Code	0810.40.10.00-0
제조업체	RAYMOND EXPRESS INTERNATIONAL, LLC
중량	612 KG
불합격 원인	잔류 농약 말라티온 검출 : 0.07 ppb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5일 홍콩으로 반송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다. 일 본

☐ 신선 복숭아

제품명	신선복숭아 (2013.10.29 발표)
CCC Code	0809.30.00.20.3
제조업체	FRUTTA BEARE
중량	135 KG
불합격 원인	잔류 농약 페인트로티온(0.38 ppb) 사이플루메토펜(0.06 ppm) 각각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잔류 농약 안전허용 기준」 위반 농약 사이플루메토펜 허용치 0.01 ppm, 사이플루메토펜 검출되어서는 안됨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밀감

제품명	밀감 (2013.10.01 발표)
CCC Code	0805.20.10.10.9
제조업체	RISSYOU CO., TLD.
중량	634 Kg
불합격 원인	Iprodione 0.40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잔류 농약 안전허용 기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밀감

제품명	밀감 (2013.08.06 발표)
CCC Code	0805.20.10.10.9
제조업체	RISSYOU CO., TLD.
중량	100 Kg
불합격 원인	CIPAC No. 108 0.09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잔류 농약 안전허용 기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보존 용기

제품명	보존용기 (2012.09.17 발표)
CCC Code	3924.10.00.20.1
제조업체	주식회사 大創産業
중량	1.42 Kg
불합격 원인	내열 검사 결과 이상
법정 제한 표준	상품의 「내열온도」와 상품 표시가 부합되지 않음, 식품위생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라. 기타 국가

□ 베트남산 냉동 블랙 타이거 새우

제품명	냉동 블랙 타이거 새우 (2012.10.09 발표)
CCC Code	0306.13.00.40.8
제조업체	CONG TY CP CBTS SANG YI-VN
중량	8,568 Kg
불합격 원인	Ciprofloxacin 0.01 ppm, Enrofloxacin 0.05 ppm 각각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관련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필리핀산 샌드위치 잼

제품명	샌드위치 잼 (2013.10.22 발표)
CCC Code	2103.90.90.90.5
제조업체	UNILEVER PHILS INC.
중량	158.4 Kg
불합격 원인	방부제 (Benzoic Acid 0.6 g/kg, Sorbic Acid 1.2 g/kg)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와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Benzoic Acid 허용치는 1.0 g/Kg, Sorbic Acid 1.0 g/kg임. 또한 혼합 사용하는 방부제의 경우 다른 한 종의 방부제 사용량과의 합산하여 1을 넘을 수 없음. 식품위생관리법 제18조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3. 최근 위생 검사 관련 이슈

□ 공업용 화학전분 무수말레산 검출 사건

- 5월 초기조사에서 시판 전분류 상품 25건 및 관련 제품 49건(총 74건) 중, 관련 제품 5건에서 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불법 화학전분 성분이 검출됨
 - 고구마가루, 튀김가루, 어묵용 분말, 타피오카 전분, 일반 전분, 굵은 전분 등 원료
 - 버블류(粉圓 芋圓 地瓜圓), 굵은 쌀국수류(板條), 어묵류, 고기 완자류(肉圓), 두부빙수(豆花), 떡류, 만두, 육류갱탕(肉羹) 등 전분성분 첨가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됨
- 전분 사용 업체 및 관련 식품에 대한 전면 조사
 - 회수 및 봉쇄처리 건 총 639.99톤, 기 폐기처리 건 446.15톤
 - 관련업체 : 무수말레산 대도매상 1개 업체, 중도매상 3개 업체, 무수말레산 화학전분 9개 제조업체 및 71개 소매상이 연관된 것으로 최종 집계됨
- 「順丁烯二酸化製澱粉污染食品之處理原則(무수말레산화학전분오염식품의 처리 원칙)」5월 28일 공포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 방법 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6월 19일 개정 공포 (일부조항제외 6/19일 당일부터 실시)
- 2013년 8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은 수입신고서 상 “물품명칭”란에 「식품용」 「식품첨가물」을 기입하여야 하며, “규격”란에는 「생산 LOT NO」 기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고 공고
- 6월20일부터 시판 전분 관련 상품은 원료안전보증 라벨 부착 의무화 실시
- 전분성분 관련 상품 수출 시 검역 강화, 검역 합격상품에 한해 수출 가능 (식품약품관리서 공고란 5.13/5.31/6.9/6.20, 聯合報 5.22/6.1/6.6)

□ 식용유 관련 식품 표기 위조 및 저급 식용유 사용 사건 대만 전국적 이슈화

- 올리브유의 저가 식용유 혼합 및 동-클로로피 성분을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사건이 적발되어 큰 논란이 됨.
- 지난 10월 16일 장화현(彰化縣) 위생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 식품 전문 브랜드업체인 대통장기(大統長基)업체는 면실유 또는 해바라기유 등 저급유 60%, 올리브유 40%인 상품을 “100% 수입특급올리브유” 상품으로 거짓 표기하여 7년간 판매하였고 식용유 제품 상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동-클로로피(Copper Chlorophyll)을 불법 첨가하여 대만 식품 불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킴
- 유명한 식품 브랜드 업체이면서 7년간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관할 검찰은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장화현 위생국은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련 상품을 봉쇄 및 시판 금지령을 내림
- 조사당국에 따르면 대통장기(大統長基)사의 금년 3월부터 10월 16일까지의 “100% 수입특급올리브유”의 판매총량은 29만 리터에 달하고, 1리터당 적어도 NT\$30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전련사(全聯), 대운발(大潤發)등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었으나 이미 폐기 및 시판 유통 금지 처분함
- 대만 시판 식용유는 「식용유지류위생표준(食用油脂類衛生標準)」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 첨가물은 「식품첨가물사용범위 및 제한량 및 위생표준(食用油脂類衛生標準)」 규정에 부합해야함
- 동-클로로피(Copper Chlorophyll)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유럽동맹, 뉴질랜드, 호주, 일본 및 중국 등 국제 규정 상 허가가 된 식품첨가물(착색제)이나 식용유지류 상품 상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국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류 상에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국제첨가물데이터베이스(JECFA)에 따르면 동-클로로피(Copper Chlorophyll)의 1일 섭취 허용량(ADI)은 1인 1kg당 15mg이다(60kg으로 계산하면 900mg)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2013/ 10/ 17)

4. 한국 · 대만 간 검역관련 주요이슈

□ 함육(含肉)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 - 「즉석면(라면 등)」 시행 공고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공문(2004.7.28.) 農授防字 제0931478785 호(2005.1.1.부터 시행)에 근거하여 2013년 6월 18일 동식물방역검역국 공문 防檢二字1021481326호를 공고한 뒤 6월 25일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대만 관무서에 요청
-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함육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을 중화민국 93년(2004년) 7월 28일 공고, 중화민국 94년(2005년) 1월 1일 시행
 - 당시 농업위원회에서 수입검역 조건을 세관(재정부 산하)에 통보하였으나 세관은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 행정원에서 원칙을 왜 준수하지 않느냐는 압력행사로 절충기간 없이 즉시 공포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은 최근 시판되는 수입산 라면(즉석 면류)에 일부 육류 또는 관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고 있다하며 대만 관세청에 즉석 면류의 수입신고 접수 시 「즉석 면류, 함육인 것」으로 분류하여 줄 것으로 협조요청 (2013.06.18.)
- 공고 후 관계당국의 조치
 - 2013. 7월 초(농심 관계자 정보 제공) : 일본 라면(日青)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함유 제품 기 반송처리
 - 2013.07.08.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과 해순서 (海巡署)에서 관련 수입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관련 제품 봉인 및 폐기처분 명령
- 업계 현황
 - 농심 : 농심 제품 중 해당되는 제품은 신라면 블랙으로 호주산 고기원료를 사용했음을 대만 관련 당국에 증명하고 수입을 진행하였으나 갑작스런 검사에 해당제품을 봉인하고 매장에서 입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전량 회수조치 및 폐기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음
 - 팔도 : 팔도라면 2개(곰탕면, 치킨면), 베트남 공장제조 3개가 출고 금지명령

- 을 받은 상태이며,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 받음
- 오투기 : 1컨테이너 반송 및 선적작업 보류
- 농업위원회 측으로부터 한국이 AI건은 기 제출을 해서 대만에서 심사 중에 있지만 구제역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함

○ 함육가공제품수입검역조건 관련 최종 결과

- 7월 16일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防檢二字第1021481491號 공문 송부
=> 즉석면(라면류)을 함육가공제품으로 귀속하여 수입검역 실시(防檢二字第1021481326號) 에 대한 처리 방안 수정
- 동물전염병원체가 활성화 되지 않도록 고온가열 처리하거나 분무건조 제조과정을 거친 분말 상태의 제품(예 : 상온 보존 가능한 건조 추출물, 육류 분말, 뼈 가루, 풍미제 등)은 위험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하여 검역범위에서 제외함
- 상기와 같이 고열처리 및 분무건조과정을 거친 분말 상태의 가공제품은 동물수입검역 실시제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서의 “수입허가증”란에 「VP999999999999」 기입
- 수입규정 「B01」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일반 심사 방식으로 통관함. 즉 동식물방역검역국 분국의 서면검사 또는 임시장소 검역 후 검역 불필요 대상으로 판정되면 「非수입검역실시대상」으로 분류되어 즉시 통관 완료됨

날짜	CCC Code	제품명	관리 조건	중점 관리항목	비고
2012. 10.04	0307.91.90.19-0 0307.91.90.29-8 0307.10.19.00-7 0307.10.20.00-4 0307.21.00.00-5 0307.29.10.00-5 0307.31.00.10-1 0307.31.00.20-9 0307.39.10.00-3 0307.60.10.10-3 0307.60.10.20-1 0307.60.20.00-3 0307.91.20.00-6 0307.91.31.10-1 0307.91.31.20-9 0307.91.32.00-2 0307.91.60.10-5 등	조개류		장염비브리오균, 콜레라균,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항목 추가.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연구소의 협조 부탁	2012.10.31 까지 (수입일 기준) - 기타 CCC CODE - 0307.91.60.20-3 0307.91.70.10-3 0307.91.70.20-1 0307.91.80.10-1 0307.91.80.20-9 0307.91.90.11-8 0307.91.90.13-6 0307.91.90.21-6 0307.99.11.00-9 0307.99.12.00-8 0307.99.13.00-7 0307.99.16.00-4 0307.99.17.00-3 0307.99.18.00-2 0307.99.19.00-1 0307.99.20.10-6 0307.99.30.00-6 0307.99.31.00-5
	2008.09.30	유제품, 카세인, 커피크림맥아추 출물, 코코아분말, 캐러멜, 귀리 등	강화 검사 20%	멜라민 검사	
2012. 07.12	Corn Products Korea	galactooligos accharides	일반 검사	살모넬라균	2013.7.12 까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수입 후 문제가 발견되어 강화된 조건으로 검역검험을 적용하는 제품들임

제5절 검험검역부처 연락처

1.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구역	사무처	전화	팩스
북구관리중심	기룡항사무처	(02)89788416	(02)24226188
	대북항사무실	(02)89788416	(02)24226188
	송산공항사무실	(02)89788416	(02)24226188
	마주대행사무처 (연강현 위생국)	(0836)22095	(0836)25024
	도원공항사무처	(03)2868300	(03)3833533
	중역사무실	(03)2863861	(03)2868364
중구관리중심	대중항사무처	(04)23692401	(04)26569687
	대중공항사무실	(04)23692401	(04)26569687
남구관리중심	까오송사무처	(07)2622501	(07)8121379
	까오송일항사무실	(07)2622520	(07)5217779
	까오송공항사무실	(07)2622527	(07)8011808
	금문대행사무처 (금문현 위생국)	(082)330697	(082)332065

2. 경제부 표준검역국

구역	전화	팩스
대북총국	(02)2343-1700	(02)2393-2324
기룡분국	(02)2423-1151	(02)2422-8910
신죽분국	(03)542-7011	(03)532-5979
대중분국	(04)2261-2161	(04)2262-9193
대남분국	(06)226-4101	(06)226-5809
까오송분국	(07)251-1151	(07)251-5038
화련분국	(03)822-1121~3	(03)822-1023, 5133

3.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구역	전화	팩스
대북총국	(02)2343-1401	(02)2343-1400
기륭분국	(02)24247363	(02) 2424-7364
신죽분국	(03)398-2663	(03)398-2313
대중분국	(04)2285-0198	(04)2285-8147
까오슝분국	(07)972-0599, 536-0070	(07)5360027

라벨링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관리 및 법률체계

□ 관리체계

- 위생복지부의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건강식품, 유기농식품, 수입식품, 약물 등을 포함한 시중의 유통되는 식품 및 식품 용기, 식품기기, 세정제 등 국민 건강 및 위생 관련 부분을 관리함
- 수입 식품 검역은 식품약품관리서가 표준검역국에 업무 대행을 위탁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은 식품약품관리서 발표한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 및 「수입식품작업요점」에 근거함

□ 법적체계

-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檢驗作業要點)」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 「식품위생관리법시행세칙(食品衛生管理法施行細則)」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품 관리 방법(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品加工品管理辦法)」
-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
- 「식품첨가물관리법(食品添加物管理辦法)」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2. 식품 라벨기준 개황

가. 「식품위생관리법」의 개요

□ 「식품위생관리법」의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 범위

- 「식품위생관리법」에서 일컫는 <용기 및 포장 식품>이란 고정 밀봉된 원 상태로 장기간 보존 가능한 식품을 말하며, <고정 밀봉 포장>은 미 개봉된 포장 식품으로, 이미 개봉된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별도 표기 관리함
- 식품의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출입 등의 위생관리 부분은 <식품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 관리함. 해당범위는 아래와 같음
 - 일반식품 : 음식 및 씹는 음식 상품의 원료(신선 육류, 신선어류, 채소, 과일, 가공식품 포함)
 - 특수영양식품 : 영아 및 유아의 분유, 특정 질병의 처방 식품 및 기타 정부기관에서 허가한 특수한 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
 - 식품첨가물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향산화 혹은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 또는 접촉되는 물질
 - 식품 도구 : 식품제조 도구, 식품 용기, 식품 포장기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용기 및 포장 :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용 세정제 : 소독 및 세정제품, 식품기구, 식품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하기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

- 변질 및 부패 식품
- 미숙성 또는 인체 건강 위해 식품
- 유독성 및 인체 건강 물질이 발견된 식품 (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 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육류 등을 포함)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잔류농약 및 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 방사선 오염 물질, 그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 위조 식품
- 유효기한 초과 식품
-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 수입허가인증

- 위생서가 지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식품기구 및 용기 등은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고, 그 허가증은 5년 기한으로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이전 연장신청이 가능함.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失效)되며, 그 갱신, 교환, 재발급 등은 모두 위생서가 관할함

□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위생관리법 제22조 명기)

- 품명

- 내용물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주성분은 백분율 표기, 표기상품, 주성분항목, 표기내용, 방식 및 각 상품의 실시 일자는 중앙담당기관이 지정한 것으로 함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 2가지 이상 혼합이고 기능성 식품인 경우 식품첨가물을 각각 분리 표기
 -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주소
 - 원산지(국)
 - 유효일자
 - 식품영양표시
 -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
 - 식품영양표시는 그 준수사항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그 것으로 함
- ☐ 라벨링 표기 예외사항 별도 규정(위생관리법 제23조 명기)
- 식품 용기 또는 외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 사항으로 인해 전항 규정대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은 주관담당기관이 일부 미표기 승인 공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기
- ☐ 식품첨가물의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4조 명기)
- 식품첨가물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및 「식품첨가물」 글자 기입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중량, 용량, 수량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유효기한
- 사용범위, 용량표준 및 사용제한
- 원산지(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6조 명기)

- 중앙담당기관의 공고한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관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7조 명기)

-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 주요성분의 화학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 표기

- 중량, 용량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대상 및 용도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 표시와 광고성

- 식품위생관리법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시, 선전,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됨
-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 선전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위생서는 특수 영양식품의 광고범위, 방식 및 장소를 제한하는 공고를 할 수 있음. 권한 위임을 받아 기계 및 방송하는 전파업자는 광고 시작일로 부터 6개월 동안 광고 위탁자의 성명 (법인 및 그룹명칭)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됨
- 사용 금지 식품 표기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
예)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예) 갱년기 장애 개선, 예) 신장 기능 보강(한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 출판물, 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

- 허위 과장 및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표현
 -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
예) 세포 기능 강화 등
 - 한약재 효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장육부 등의 기관에 대한 표현
예) 간 보호 등
 - 신체외관 변화에 대한 표현
예) 가슴풍만 등
 - 본 위생서 관련 규정 번호만을 언급하고, 그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은 경우
예) 위생서자호 880012345등

□ 위법 제제 조치

-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범위, 제한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는 폐기 및 몰수함. 단, 폐기 및 몰수 이전 소독 및 적당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함
- 중문 라벨링 규정 위반자는 기한 내 회수, 수정 통지하고, 수정 이전에는 판매가 금지됨

나.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검사

- 수입식품검역은 위생서가 발표한 「위생관리법」, 「위생관리법세칙」, 「수입식품검사방법」,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 등에 따라 관리되며, 표준검사국 및 그 직할 분국에서 검역작업을 실시함
- 수입식품검역기록표의 〈외관검사〉 필수상품으로 등록된 물품 외에도 현장검사 필수물품은 검역검험 신청 및 실시 이후 수입 가능. 외관 검사 중 라벨링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관검사 해당 품목은 아래사항을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불량사실은 기록을 남기게 됨

- 포장 및 표기 완전 여부, 청결 여부, 파손 여부
- 상품 외부 누출 및 부패, 해충 및 이물질 감염 여부
- 불쾌한 냄새 유출 여부
- 기타 식품안전에 유해한 현상 여부

☐ 식품첨가물은 수입신고서 상 “물품명칭”란에 「식품용」 「식품첨가물」을 기입하여야 하며, “규격”란에는 「상품생산 LOT NO」 기입 의무화

- 빠른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는 반드시 행정원 위생복리부의 공고에 따라 실시
- 행정원 위생복리부 공고 署授食字第1021301656號 (2013년 6월 19일 공고)
-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 수입식품 라벨링 검사 작업

-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행세칙, 건강식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
 - 중문표기 미완성 또는 중문원본 표기내용이 식품위생관리법에 위반될 시 <표기불합격처리>를 함
- 중문표기 면제품
 - Bulk형태 수입 : 최소단위 포장 중량이 3KG 이상,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재포장, 포장 변경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타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표기 면제 동의 물품 :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동의서 복사본 제출
-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검사 주의사항 및 그 처리 방식
 - 원 포장상에 직접 인쇄 방식 : 인쇄된 유효기간 글자의 탈색 및 불명확함이 없어야 하고, 스티커로 단독 부착해서는 안 됨
 - 전체 중문 라벨이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된 물품 : 그 모든 표기 항목이 원포장 인쇄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유통일자는 단독 라벨로 부착해서는 안 됨
 - 유통기한 표시 : 년/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경우 년/월만 표시하여도 되나, 그 일자는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를 나타내야 함

- 검험검역 이후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은 검역허가증이 발행되지 않음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 남은 물품은 그 검사 증명의 유효기한도 상품의 유통기한 내로 제한함.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물품은 검사증명 발행 이후 즉시 행정원 위생서로 통지하여 그 물품의 유통과정을 지속 관리함
- 중문표기 부착 시 원문 표기내용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위생관리법 제 22조 위반으로 간주함
-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 상에 <대만 제조>등과 같은 내용 및 글자를 표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만 국내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 등이 표시되어야 함
- 포장 상에 표기 시 표기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cm²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 유효기한 이외 기타 항목은 2mm 이하로 해도 무방함

○ 중문표기라벨 부착면제 심사

- 일반적으로 분리 포장, 포장 변경 또는 기타 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식품 원료는 중문라벨 부착이 면제됨
- 분리 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상세 설명
 - 식품가공공장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 식당경영업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가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경우
 - 수입업체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 기타 위생서의 특별 동의 물품
- 식품가공업체 해당 시 아래 열거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을 함
 -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기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具結書: 제출된 자료 모두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보증서)
 - 상품의 원포장 및 제조업체 원포장 상의 표시와 관련된 자료
 - 포장 변경 및 분리물품의 최종 상품 외포장을 첨부해야 함
- 식당,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 원상품의 외포장
- 일반 수입업체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 원상품의 외포장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공장 등기증 복사본, order sheet 또는 인보이스 복사본
- 수입식품의 최소단위 포장은 1KG 이하이고 그 포장을 밀폐 처리한 물품은 포장변경 및 분리 포장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중문표기 면제신청 상품은 수입 시 포장 상 원료명칭, 제조업체, 내용물, 유효기한 등 제조관련 사항이 원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험·검역 작업의 근거로 삼음
- 표준 검역국 및 그 관할 분국이 수입식품 중문표기 면제를 동의한 경우, 그 동의서를 위생서로 통지함
- 수입식품 중문 표기 면제 대상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그 동의서 일자 기록함)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만기 3개월 전 연장 신청을 함
- 중문표기가 면제된 수입식품은 표준검역국 및 그 관할국 조사하여 실제 물품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모든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입식품 중문 라벨링 불합격 기준

- 수입 식품 포장 상, 원문 및 중문 라벨링 未표기
- 유효 일자
 - 원문 및 중문 유효기간 未표기
 -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 초과

- 표기된 기한이 인정할 수 없는 유통일자일 경우
- 표기된 기한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글자 표기가 모호하여 내용 분별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未표기
- 표기된 수입업체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 10KG 이상 유제품 상 〈식용〉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수출국 위생기관 및 농업관련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치료 효능 등 과대 및 허위 표기인 경우
- 〈경고〉 특정 경고표시 식품이나,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다. 특별 품목

□ 유기농 농산품

- 유기농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표시된 문자는 중문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및 통용부호는 보조용으로 표기
- 판매 시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 규정
 - 품명 (“유기농” 문자를 표시해야 함)
 - 원료 명칭(품명과 일치하면 생략해도 상관 없음)
 - 수입업자 명칭 및 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여 원산지(국)을 표기한 경우에는 표기 면제
 - 검증기관 명칭
 - 유기농 표시 동의서 일련번호
 - 기타법규로 정해진 표시사항 및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표시사항
- 원료에 관한 표시규정
 - 두 종류 이상 혼합된 원료를 가공할 시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함. 단 10% 미만

일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됨

- 물과 소금이외 원료에는 “유기농” 문자 또는 기타 수식 부호를 사용해도 되고 유기농 원료 항목에도 추가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 규정

- 「수입화물 원산지인정표준」에 의거한 원산국 표시
- 표시글자의 길이 및 폭이 6mm 이하는 안됨
- 포장용기의 정면, 중간, 하단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

○ 검증기관 표시규정

- 표시 글자 길이 및 폭은 6mm이하는 안됨
- 포장용기의 정면 중간 하단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

○ 벌크 형태로 판매 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판매처에서 게시판 또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품명 및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기농표시 동의서 사본을 전시해야 함(글자 길이 및 폭은 3cm 이상으로 표기)

○ 품명 및 원료 표시 이외에는 현지어 또는 외국어로 된 “유기농” 문자 표시를 해서는 안 됨. 단 유기농 마크 사용제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수입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가공품 사용 마크는 아래 규정에 한함

- 중앙당당기관이 공고한 국가 및 국제인증조직의 유기농 마크
- 검증기관의 마크

□ 건강식품

○ 건강식품은 건강에 무해함과 보건기능이 증명된 식품으로 그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효능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음. 단, 질병 치료 및 교정하는 의료적 효능을 말하는 것은 아님

○ 「건강식품관리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됨

○ 제조 및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그 성분, 규격, 작용, 효능, 제조과정 개요, 검사규격 및 방법 등의 자료, 라벨 및 샘플을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에 수입허가인증

및 제조허가인증 발급을 신청함. 허가인증을 받은 후 제조 및 허가를 할 수 있음

- 건강식품 포장 및 용기 상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품명
 - 내용물 명칭 및 그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의 명칭
 - 유통기한, 보존기간
 - 국내 업체명칭, 주소
 - 허가 비준된 효능
 - 허가인증번호, <건강식품>글자 표시 및 표준마크표시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기타 필수적인 경고사항
 - 영양성분 및 함량
 - 기타 관련기관이 공고한 표기 사항
- 건강식품의 표기 및 광고는 허위사실 및 과장, 보건기능 허용 기준량 초과, 의 효기능을 표시해서는 안 됨
- 중앙관련기관이 파견한 건강식품 검사 시 고의적으로 거절 시에는 제조, 가공, 시판 등이 잠정 중단됨
- 허가증을 통해 수입 및 제조하였으나 중대한 위해함이 발견되었을 시 허가 인증 폐지 및 제조, 수입을 금지시키고 필요 시 식품 몰수 및 폐기됨

□ 주류 라벨링 검사

- 주류 브랜드 및 명칭은 크게 표기해야 하며, 기타 문자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함
- 수입산 주류의 농도는 섭씨 20도에서 원 내용물 중에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함. 즉 100ml 음료 중 포함된 알코올 농도임. 즉 %, %vol 혹은 % by volume으로 표기함. 오차허용범위는 ± 0.5 도 이하임
- 중문 표기사항
 - 주류의 상품명 및 종류 표기
 - 성분 및 농도 표기

- 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주류는 원산지 표기 및 원산지 증명 제출
- 유통기한은 년/월/일 표기, 단 3개월 이상일 경우 년/월로 쓰나 유통기한은 당월 말일로 함
- 용량 단위 l, ml cl로 표기
- 경고 표시
 - “음주 후 운전 안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 “과다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해가된다”
 - “미성년자는 음주 금지”
 - “화재 발생 시 분리하여 놓으시오”
 - “눈과 피부 호흡기관을 자극할 시 반드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반드시 마개를 덮으시오”
 - 기타 중앙기관이 지시한 경고를 표기해야 함
- 주류 생산 연도
- 생산적 지리 표기

3. 식품 라벨 표준 내용

가. 중문표기 및 통용부호 사용규정 설명

- ☐ 용기나 포장에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대한 세칙 규정
 - 포장 상 표기 시, 표기 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cm²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칭, 유효기한 이외 기타항목은 2mm 이하로 해도 무방함
 - 국내 제조업자가 외국어 표시도 함께 할 경우 중문을 주(主)로하고 외국어는 부(輔)로 함. 단, 해외 판매용은 제한 없음
 - 수입품은 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어 표기를 해야만 수입 할 수 있

고, 포장 변경, 분리포장,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판 전에 반드시 최종 식품 포장 상 중문 표기를 해야 함

- 큰 포장 안에 작은 포장이 있는 식품은 즉 개별 포장으로 소매 할 수 있는 것은 식품 위생 관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 하여야 함
- 포장 식품 표기의 관리에서 「식품 위생 관리법」에 미 규정된 식품은 상품 표기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식품 위생관리법을 적용시켜야 함
- 수입업체, 제조일자 등 자료가 불분명하며 세관을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식품은 업체가 명확한 제조업자 및 제조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진열 판매를 할 수 없음
-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의 [중문 및 통용부호]를 표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중문 번체자로 해야 하며, 간체자 표기는 다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고 고유의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 할 수 없음. 이는 소비자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식품 가공용의 신선 농산품 수입과 관련하여 마대나 편직마대(비닐 실로 짠 부대)의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문표기 및 유효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원문 표기항목에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등을 표기해야 함. 이는 통관할 때 화물검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는 확실한 수입품이라는 것만 표기되어지면 원문표기는 그대로 통과 할 수 있음
- 대형 포장식품은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표시는 원문 표기를 해야 함
- 대형포장 원료가 제 22조 항목의 중문표시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사후 관리를 위해 수입업체는 가공업자에게 관련 특정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함. 이 서류들은 검사기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통관 시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음
- 신선한 야채류는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

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 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포장 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슈퍼마켓 업자가 판매하는 팩이나 랩으로 간편 포장을 하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시포장은 그 목적이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장 주인이 현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판매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완전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샴브샴브용 식품표기 관리 : 대형 매장업체에서 스티로폼 통이나 랩으로 싸서 파는 샴브샴브용 재료는 그 목적이 소비자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 따로 포장해 놓은 것으로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은 아님. 소비자가 직접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다는 행위는 소비자가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도 위생관리법 제 22조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이 아님
- 수입 냉동피자를 냉장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후 저장, 운송, 보관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품질 보증과 유통기한이 재설정되어야 판매가 가능함(해동, 냉장, 유효기한 설정, 포장, 중문표기 등 가공 및 품질보증 절차를 포함)
- 즉석식품류는 냉장과 냉동의 성질을 고려해,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표시 의무화 ; 비즉석식품류(신선농축수산물제외)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 표시 의무화,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은 1cm이상 ;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는 5cm이상,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또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의 글자체와 글자색이 상품의 외관 포장색과 선명하게 다르며, 쉽게 눈에 띄어야함
- 지금까지의 식품위생관련 법령은 제품의 보험책임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만약 업체가 이 항목을 소비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여도 부당하지는 않음. 하지만 허위 및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생관리법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

- 제품의 속성이 확실히 식품이라면 증정품일 경우에도 그 표시 내용은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규범에 따라야 함
- 위생서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허가증은 국내 기업의 수출 식품이 국외에서 통관 시 사용하는데 협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제품의 표기심사 진행 시 사용해서는 안 됨. 업체는 여전히 식품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함
- 판매방식이 만약 소비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단 후 봉합하는 포장방식 이라면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식품이 아님. 표시는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 시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품명, 맛, 가격, 유통기한 등 표시)를 제공하여 제품 용기 포장 및 판매의 위생 안전이 식품위생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여전히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됨

나. 내용물 표시

□ 내용물 표기 세칙 규정

- 중량, 내용량의 표시는 공식 규정된 표기 단위를 사용함
- 액체와 고형물질의 혼합 식품은 내용량과 고형량(고체의 중량)을 구분하여 표기함
- 내용물 함량은 식품의 성질이라고 보고 함량의 최고, 최저임을 표기함
- 내용물이 2종 이상일 때 함량의 다소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표기해야 함
- 「식품원료사용가능일람표(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를 참고로 원료명칭 표기, 중문 명칭 표기, 식품사용 가능원료 확인 후 내용물 표기를 해야 함
- 캔 식품은 캔 겉면에 표시한 내용량 및 고형량의 오차범위는 중국국가 표준 CNS974 식품 캔 검사법(캔 포장)의 규정에 의함
- 식품 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2항은 중량, 용량 혹은 수량의 표기에 관한 규정은

제품의 각 포장물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말하는 것임. 제품에 들어간 원료별
성분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말하는 것은 아님

- DHA는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아닌 어류 원료의 일종 성분임. 따라서 직접 DHA를 표기해서는 안 됨
- 최근 원료 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원료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함량을 표기 하여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면 표기해서는 안 됨
- 보통 고체 상태의 제품은 중량을 표기하고 액체 상태의 제품은 용량을 표기하고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은 수량으로 표기 함
- 노니 주스(열대과일의 일종) 성분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중국국가표준 CNS2377의 규정에 따라 그 원료 함량을 표기해야 함

다. 식품첨가물

□ 식품 첨가물 표기 세칙 규정

- 식품 첨가물의 정의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향산화 혹은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 또는 접촉되는 물질
- 식품 첨가물의 종류 : 방부제,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착색제, 살균제, 영양첨가제, 향료, 조미제, 점조제, 결착제, 유화제, 식품공업화학약품, 향산화제, 보색제, 팽창제, 표백제, 유화제 등
- 식품 첨가물의 표기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품 첨가물 명칭은 본법 제 12조에서 공포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그 규격 및 사용범위의 제한표준은 중앙기관이 정한 것으로 함
 - 조미제(인공감미료, 맛 술, 카페인 포함되지 않음),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용 응고제, 광택제에 속한 것은 용도에 따라 명칭을 표시한 것이고, 향료는 향료로 천연 향료는 천연 향료로 표시 함

- 방부제, 향산화제, 인공감미료에 속한 것은 동시에 용도 명칭과 품명 혹은 통용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식품성분에 [식용색소E133] 표시한 것은 검사결과 그 명칭이 법적으로 수록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식품 중 식품 첨가물을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료에 첨가하나, 제품이 완성 될 때까지 그 잔류 함량이 극히 적고 최종 식품에 큰 작용이 없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음
- 식품 첨가물 명칭은 식품위생관리법 제 12조에서 공고한 식품첨가물 품명 및 통용 명칭에 따라 사용해야 함. 방부제, 향산화제, 인공 감미료 등에 속한 것은 동시에 그 용도 명칭 및 품명 또는 통용 명칭을 표기해야 함. 상품에 [안식향산(방부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안식향산이 [벤조인]의 통용 명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라. 유효일자

□ 유효일자 표기 세칙 규정

-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 , 제 7항에서 정한 일자의 표기는 용기나 포장지 위에 인쇄 하여야 하며, 습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년, 월, 일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단,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년, 월만 표기해도 되나, 그 일자는 당월 말일로 추정함
- 유통일자의 정정은 업체에서 그 제품에 대한 포장과 보관 상황 등에 따라 자체 결정해야 함. 이 기한 내에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기타 식품 위생관리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 기한 내에 모두 일에 책임져야 함
- 유통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식품 위생관리법에 어긋나지 않음
- 생우유, 탈지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 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반드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표기해야 함

- 식품의 제조일자를 기원 년 월 일 (양력)로 표기 할 때는 앞의 두 자리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수입업체는 연도 국력(민국표기) 양력 인지 구분 표시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음 예) 西元 年, 月, 日
- 냉동, 냉장제품의 제조일자는 식품의 정상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에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식품의 제조일자나 보관기한을 [03.12.1991]이라고 표기했을 때 [월. 일]의 순서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월. 일. 년] 또는 [일. 월. 년]을 추가 표기해야 함
- 식품에 [7℃ 이하에서 냉장 30일, -18℃에서 냉동 90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유통기한 단일 방식으로 통합 표기해야 하므로, 제조일자는 유통일자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두 가지 유통일자를 표기하면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냉장·냉동 판매품을 분리 포장하여 별도 유통일자를 관리하도록 함
- 업체가 수입한 제품이 유통일자를 초과하여도 회수되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제조일자나 유통일자가 수정되어 시장에 유입 되었을 경우, 업체나 유입 시킨 자 모두 식품 위생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아야 함
- 식품의 보존 기한은 원료, 가공과정, 살균방법, 포장재질 및 보관조건 등 요소의 영향을 받음. 제조업자는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에 대해 보관 실험을 거쳐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제정해야 함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중문 표기를 직접 原 포장 위에 인쇄할 경우 [유통기한]을 퇴색하지 않는 유성잉크로 날인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유통기한만 별도로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은 안 됨. 만약 중문라벨을 스티커방식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지면에 인쇄하여 표기해야 함
- [유통일자]가 법적 정식표기이므로 [유통기한]을 [유통일자]로 수정 표기해야 함
- 유통일자를 [02MAR02]로 표기한 것은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기가 원 포장에[DOMAUG2001] 및 [DOEAUG 2004]라고 찍혀 있으면 외국어 날짜 밑에 [DOM=제조일자 DOE=유효기간 AUG=8월]

이라고 영문해석의 라벨을 붙여야 함. 붙일 때는 쉽게 떨어지는 재질의 것으로 붙이면 안 됨

-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된 식품에는 반드시 [유효일자]가 표시 되어야 함. [유효일자]와 [보존기한]은 다른 것임
 - [유효기간]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예를 들면[유통기한 년 월 일]이 명기 되어야 함
 - [보존기한]은 시간의 범위임. 예를 들면 [보존기한 2년] 이라고 해야 함
- 생우유, 탈지우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우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유효일자] 외에 [보관조건]도 명시해야 함. 유효일자 없이 제조일자와 보존기한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 되며,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보존기한과 유효일자를 동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됨
- 식품에 동시에 다른 보존 조건과 보존 기한을 표시해서는 안 함

예) [상온에서 30일, 냉장보관 시에 180일, 영하 18도℃에서 365일]같은 경우는 다중 표시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유효기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제품을 상온에서 냉장 보관 하다가 기한이 지나서도 냉동보관 하여 판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마. 식품영양표시

□ 시판포장식품 영양표시 방법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판포장식품 상에는 동시에 식품영양표시가 되어야 함
- 식품영양표시 방식 : 시장판매의 포장식품의 영양표기 방식은 포장용기 외면, 눈에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함
 - 표시항목
 - 제목 : [영양표시]

- 영양 필수 표시 항목 :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탄수화물(식이섬유포함), 나트륨 함량
- 기타 선언된 영양소 함량
 - 예) 고칼슘, 콜레스테롤 zero, 저나트륨, 저당 등 표기
-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 열량, 영양소 함량의 표시기준 : 고체(반고체)는 100Kg 및 Kg을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시, 액체(음료)는 100ml를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시
- 열량 영양소 및 트랜스 지방 함량표시 단위 : 식품 중에 함유하고 있는 열량에 대하여는 칼로리(kcal)로 표시하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트랜스 지방은 Kg , 나트륨은 mg으로 표시하고 기타 영양소는 kg, mg으로나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해야 함
- 1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 : 각 영양소의 1일 필요 영양소 섭취량의 백분율로 증가하여 표시해야 함. 다음과 같은 항목의 수치를 표시하여 매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로 함

■ 1일 필요 섭취량 기준치 ■

열량	2000kcal	나트륨	2400mg	비타민 A	600g
단백질	60g	포화지방산	18g	비타민 B1	1.4mg
지방	55g	콜레스테롤	300mg	비타민 B2	1.6mg
탄수화물	320g	섬유질	20g	비타민 C	60mg
칼슘	800mg	철분	15mg	비타민 E	12mg
포화지방산	18g				

자료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 수치 수정방식 : 영양소는 유효 숫자가 세 자리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매 분량,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나트륨은 정수로 표시하거나 소수점 아래 첫 자리 수까지만 표시 함
- 영양 표기 방식 규정 : 총 5종의 방식으로 표기 가능함

영 양 표 시(1)

매1 분량 240ml 포장 포함량: 4분량	
	매 분량 당
열량	116 kcal
단백질	8 g
지방	4 g
포화지방	0.4g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2g
나트륨	115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2)

	매 100ml당
열량	43.2kcal
단백질	1.0 g
지방	0.8 g
포화지방	0.4g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8.0 g
나트륨	35.2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3)

매1 분량 30g 본 포장 포함량: 7분량		
	매 분량	매100g당
열량	172.3kcal	574.2 kcal
단백질	1.6g	5.2g
지방	11.6g	38.6g
포화지방	0.4g	1.1g
불포화지방	0.2g	0.5g
탄수화물	15.5g	51.5g
나트륨	115mg	383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4)

매 분량 30kg 본 포장 포함량: 5분량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172.3kcal	4.7%
단백질	1.6g	5%
지방	11.6g	7.6%
포화지방	0.4g	%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5.5g	3.4%
나트륨	115mg	1.3%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5)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172.3kcal	4.7%
단백질	1.6g	5%
지방	11.6g	7.6%
포화지방	0.4g	%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5.5g	3.4%
나트륨	115mg	1.3%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식품영양 표기 세부 규정

- 소위 <영양 선언>은 설명, 은유, 암시의 방식으로 식품의 특정 영양성질(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A, 고 칼슘, 저 나트륨, 무 콜레스테롤, 고 섬유 선식 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식품 원료성분에 대하여(예를 들면 이 식품 성분이 맥아젤리, 옥수수유, 레시틴, 탄산칼륨, 비타민A 종려산, 비타민 B2, 비타민 D3등) 서술하는 것은 영양 과대광고에 속하지 않음
- <영양 선언> 高/低/多/少 등의 표현에 대한 기준 : 적당섭취량필요(需適當攝取), 보충가능섭취량(可補充攝取) 2가지 부류로 나뉨
- 적당섭취량필요(需適當攝取)
 -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등은 적당량을 섭취해야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류임
 - “0” 영양표시 조건,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0” 영양표시 가능

열 량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4kcal 미만인 경우
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미만인 경우
나트륨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콜레스테롤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포화지방산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1g 미만인 경우
당 성분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低〉, 〈少〉, 〈略含〉 ; 약간포함〉 영양표시 가능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열 량	40kcal	20Kcal
지 방	3g	1.5g
나트륨	120mg	120mg
콜레스테롤	20mg	10mg
포화지방산	1.5g(1.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0.75g(0.7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당 성분	5g	2.5g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보충가능섭취량(可補充攝取)

- 섬유질,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은 섭취량 부족 시 인체에 해를 끼침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高〉, 〈多〉, 〈強化〉, 〈富含〉 ; 풍부〉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6g	3g	3g
비타민A	180mg	90mg	60mg
비타민B	0.42mg	0.21mg	0.14mg
비타민B2	0.48mg	0.24mg	0.16mg
비타민C	18mg	9mg	6mg
비타민E,	3.6mg	1.8mg	1.2mg
칼슘	240mg	120mg	80mg
철분	4.5mg	2.25mg	1.5mg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來源：근원〉, 〈供給〉, 〈含有〉, 표기 가능함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3g	1.5g	1.5g
비타민A	90mg	45mg	30mg
비타민B	0.21mg	0.11mg	0.07mg
비타민B2	0.24mg	0.12mg	0.08mg
비타민C	9mg	4.5mg	3mg
비타민E	1.8mg	0.9mg	0.6mg
칼슘	120mg	60mg	40mg
철분	2.25mg	1.13mg	0.75mg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바. 중앙관할기관이 지시한 표시사항

□ 식품 및 4개월 이상 영아용 분유 표기 사항

○ 영아 조제식품 용기 상 표기사항

- 「嬰兒配方食品」 영아조제식품 표기 필수
- 100kcal당 철분함량은 1mg 이상인 제품은 〈철분첨가 영아조제식품〉류의 표시를 함
- 100kcal 당 포함된 철분 함량이 1mg 이하인 제품은 〈3개월 이상 영아 섭취 시 철분 보충〉류의 표시를 함
- 내용물의 주요 원료는 그 중량의 과분 순서(중량의 크기순서)에 따라 배열함. 비타민과 광물질은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이란 표기를 할 수 있음. 업자는 또한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상세 나열해도 됨
- 중량, 용량 혹은 열량단위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지방, 탄수화물, 수분 및 열량 등 각종 함량 영아조제식품 및 4세 이상 영아식용 완전조제식품 검험수치와 오차 범위를 표기해야 함

항 목		오차허용범위	비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수분, 열량		+/-20%	영아조제식품 및 성장 영아조제식품검험 수치 는 중국국가표준 CNS을 기준으로 함
비타민	비타민A, D, E, K	80~180%	
	비타민 B1 B2 B6	80~250%	
	비타민C 비타민B12 엽산	80~300%	
각종 광물질		80~150% 80~200%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특수 영양이 필요한 영아식품에는 적용대상 및 상품특성을 표기해야 함
- 상품의 개봉 전후에 대한 보존 방법을 표기해야 함
- 액체 상품은 “개봉 전 병을 흔들어 용액이 균등하게 혼합되면 식음하시오”의 표기를 함
- “조제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영아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내용 표기
- “6개월 이상 영아는 본 상품 섭취 시 보조식품을 첨가하여 섭취한다”는 내용 표기
- 모유 수유의 우수점을 표기해야 하나, 〈人乳化〉〈母乳化〉 등의 모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함을 표기해서는 안 됨
- 용기 및 라벨에는 영아사진 또는 영아 조제식품 섭취가 이상화된 사진을 부착해서는 안 됨
- “사용자는 의료전문인 영양사의 의견에 따라 영아조제분유 식용 필요성 및 식용방법 여부를 결정한다”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 몇 통의 영아 조제분유를 담은 상자 외관에도 각 항의 표기를 해야 함

○ 조제분유 설명서 상 표기해야 할 사항

- 영양 함량 순서 중 5대 영양소는 100g/ 100kcal당 함량을 표기
- 1스푼 당 중량을 표기
- “조제 시 물, 젖병, 젖병 꼭지는 반드시 소독해야 함”의 표기를 해야 함
- 섭취표 내 영아 체중을 추가 기입해야 함
- 분말 조제분유일 경우에는 희석 시 필요한 물과 분유량을 표기해야 함
- 농축상품은 〈음용 전 물 추가〉의 표기를 해야 함

4.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제22조 제2항 수정에 따른 세부 규정 변경

- 제 22조 내용 : 식품의 용기 및 포장은 반드시 중문 및 통용되는 부호로 표시함
 - 제2항 내용물 명칭
 - 2종류 이상 혼합물인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주성분의 백분위 및 항목, 표시내용, 방식 및 상품의 제조일자는 반드시 정부기관이 정한 바와 같이 표기해야 함.
 - 기타 정부기관에서 공고한 사항

	제22조 제2항 변경에 따른 세부 규정 변경	문서번호	공포 시기/ 시행 일자
1	식품영양성분 및 함량 식품 종류 구분 「應標示營養成分及含量之食品類別」	部授食字 第1021350366號	2013/09/10
2	포장식품의 영양 표시 규범 「市售包裝食品營養標示規範」	部授食字 第1021350368號	2013/09/10
3	냉동포장식품 및 식용 조미료 및 기타 완성된 포장 식품 의 영양 성분 및 함량 표시 규범 「市售包裝冷凍食品、食用調味料類食品及其他完整包裝之 食品應標示營養之成分及含量」	部授食字 第1021350369號	2013/09/10
4	시중 포장식품 영양표시 규범 「市售包裝食品營養標示規 範」와 시중 포장식품 영양 명칭 규범 「市售包裝食品營 養宣稱規範」의 제 4, 5조	部授食字 第1021350370號	2013/09/10

□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규범의 제4조, 제5조 (아래 표 참고) 수정

- 제4조 : 정부기관에서 공포하지 않은 ‘필요한 적당한 섭취량’ 및 ‘보충 가능한 섭취’의 영양소는 표기할 수 없음
- 제5조 : 정부기관에서 공포한 ‘보충 가능한 섭취’의 영양소 중, 생리기능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영양표시는 ‘보충 가능한 섭취영양소 방법’중 상기 표의 3번 및 4번의 규정에 부합해야함
 - 영양 성분 표시 규범 상 보충 가능한 섭취영양소 표시 시 매 30g을 기준 중량
으로 함

Ⅱ 보충 가능한 섭취 영양소 표시 매 30g당 기준 식품 Ⅱ

- 치즈, 치즈가루, 크림, 휘핑크림
- 고기가루, 미트소스, 훈연육, 육포
- 생선가루, 생선소스, 염장생선류, 김소스
- 두부, 비빔밥재료
- 과일잼, 땅콩잼, 참깨소스, 땅콩가루, 염장채소류
- 서양식 제과류(케이크, 빵, 피자제외)
- 중식 케이크
- 기타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 매 1g당 (건조식품) 기준 중량으로 하는 식품

Ⅱ 보충 가능한 섭취 영양소 표시 매 1g당 기준 식품 Ⅱ

- 새우깡질, 해초, 이끼, 미역, 김, 한천, 해파리, 기타 정부기관이 지정한 식품

- 高(높은), 多(많은), 強化(강화), 豊富(풍부), 起源(기원), 供給(공급) 및 含有(함유) 등의 단어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단어 제한 식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디저트류 식품의 식품첨가제사용
 쌀과자, 팥창류(예 : 섰베, 김과자, 콘과자, 치즈붕, 감자칩, 새우칩, 빵등의 상품)
 꿀과자, 탈수 야채류(예 : 무화과, 파파야 절편및 기타 동류의 상품)
 종자류 (예 : 단호박종자, 참깨,해바라기종자등 기타 동류의 상품)
 견과류 (예 : 땅콩, 아몬드, 하와이언콩, 캐슈넛등 기타 동류의 상품)
 두부제조품
 수산물 (예 : 생선조각, 오징어 절편, 오징어 머리, 다시마, 새우절편, 조개, 생선뼈 등 기타 동류의 상품)
- 탄산음료, 콜라
-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사탕 종류
 하드 사탕, 소프트사탕(예 : 캐러멜, 숨사탕, 씹을 수 있는 사탕 등)
 초코렛, 방향사탕
 기타 사탕
- 조미료류
 전분류(예 : 전분, 빵가루, 튀김 가루 등 동류상품)
 된장, 두시(豆豉, 노란 콩이나 검은 콩을 불려 찌거나 끓인 후 발효 시 만든 조미료 일종)
 식용유류(예 :참기름, 매운기름 등 유사 상품)

장류(대용량)(예 : 케첩, 불고기소스, 스테이크소스, 간장 등 동종 상품)
 소스류(소용량)(예 : 와사비, 고추장, 간장, 식초 등 동종 상품)
 버섯소스, 검은 후추소스, 스파게티소스

- 당류
 고체(예 : 각설탕, 설탕 등 유사 상품)
 액체(예 : 꿀 등 동류상품)
 소금
 조미료, 발효조미료
 마늘가루, 붉은 파머리
 팔각 등 향신료(예 : 후추, 바닐라가루 등 유사상품)
 계피가루
 기타 조미료
- 기타 중앙기관이 지정한 식품

□ 「식품영양성분 및 함량 식품 종류 구분(應表示營養成分及含量之食品類別)」 수정사항
 部授食字第1021350366號

- 2007년 5월 24일 공고된 내용의 “시판 포장 냉동식품, 식용 조미료류 식품 및 기타 완전포장 식품은 영양표시 성문을 표기해야 함”의 표기필수 식품류에는 <영양선언>표시 불가식품은 포함 하지 않는다고 수정함
- <영양선언>표시 불가 식품
 - 식용수, 광천수
 - 신선과일, 채소, 가금육, 수산물
 - 기타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증포용(티백) 차, 커피, 허브 식물
 - 직접 식용되지 않는 조미 향신료
 - 소금 및 소금 대체품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2001년 9월 10일 발표, 2007년 1월 1일 규정 강화, 2012년 11월 6일 「시판포장 식품영양표기방식 및 내용표준(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方式及內容標準)」으로 규정명칭 및 내용변경 공고하고, 그 관련 규정의 초안을 발표함.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주요 변경 내용

- 〈당〉함량의 강화 표시 항목 추가
- 트랜스지방산의 정의: 현재 정의된 “식용유가 일부 수소화되는 과정 중 형성된 비공액식 트랜스 지방산”을 “식품 중 비공액식 트랜스지방산의 총합”으로 수정
- 현행 영양표시방식 총 5종을 2종으로 간소화시키고, 3번 방식 〈매분량 매 100g〉당 표시를 별도 기입, 4번 방식 〈매분량 및 매일섭취영양소수치 백분율〉 표기는 포장식품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 규정으로 삽입함

□ 식품 품명 표시 규범 정리(食品品名標示規範彙整)

○ 2013. 3. 12 공포

○ 2013. 10. 28 수정공포

○ 근거법안

- 식품위생관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용기가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용기 혹은 포장에 품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식품위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식품 판매업자 중 회사등기 혹은 상업등기를 완료한 자가 벌크식품¹⁾을 판매 할 경우 반드시 품명을 표시해야 하며, 단 구운 식품이나 기타 즉석 요리 식품의 경우는 제외함
- 동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식품 품명은 반드시 국가표준이 정한 명칭으로 하되, 국가표준이 없어 그 자체적으로 명칭을 정할 시 그 명칭과 식품 본질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킬만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됨

○ 시판되는 각종 식품의 품명 표시 규범 정리

- 시판 식품은 국가표준(CNS)에 지정된 명칭에 따라 명칭의 품명을 사용함
- 시판 신선 농·축·수산물¹⁾은 식품의 분류 및 통용명칭에 따라 그 품명을 정함
-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품명 표시 규정

1) 비포장 또는 포장 개봉이후 원래 포장상태로 복귀 가능한 식품을 말함

규정	품명 표시 규정
시판혼합유의 외포장 품명표시 관련 규정 (「市售包裝調合油外包裝品 名標示相關規定」) (2010년 9월 20일) 署授食字第0991302553호 (2013년 9월 10일) 部授食字第1021350359호 수정	1. 시판되는 식용유의 외관 포장에 품명을 반드시 표기해야하고, 2종 이하 (2종 포함)일 경우 유지(油脂)명칭을 품명으로 함 2. 시판되는 식용유의 외관 포장에 1종 유지류 명칭만 표기한 경우 반드시 그 유지류가 내용물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3. 시판 되는 식용유의 외관 포장 상 표기된 혼합 유지류가 2종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각각의 유지류의 내용물 함유량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함유량이 높은 것부터 표시해야 함 4. 시판되는 식용유 중 유지류 함유량으로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음 예 : 「○○○스타일(風味)」, 「○○○비법(配方)」 등 5. 땅콩기름은 대만의 특산품이며 다른 식물성 기름과 합성을 해도 독특한 맛을 유지하므로 대만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땅콩기름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명칭에 「땅콩 맛 혼합유 (花生風味調合油)」 명칭을 허용함
즉석라면 표기관련 규정 (「包裝食品宣稱為素食之標 示規定」) (2010년 5월 28일) 署授食字第0991301488호 (2013년 9월 10일) 部授食字第1021350360호 수정	1. 라면 내용물 내 분말 조미료 스프는 포함되어있으나 식자재 스프가 불포 함 된 경우 분말 조미료 스프의 본질과 부합하도록 「○○맛면(味麵), ○○향면(風味麵) 또는 ○○탕면(湯麵)」상품 품명 사용 2. 라면 내용물 내 분말 조미료 스프와 식자재 스프가 포함된 경우 그 품명은 직접적으로 식자재 스프의 본질과 부합하는 「○○면(麵)」으로 상품 품명 사용
시판저염소금 표기 관련 규정(「市售包裝減鈉鹽應標 示事項」) (2013년 11월 17일) 署授食字第1001303012호 (2013년 9월 10일) 部授食字第1021350352호 수정	1. 염화나트륨 함량이 65% 미만의 시중판매 포장 식염 상품은 「칼륨소금 (鉀鈉鹽)」 또는 「저염소금(減鈉鹽)」으로 상품 품명 사용
동충하초 균사체 식품 표기 관련 규정 (「冬蟲夏草菌絲體食品標示 相關規定」) (2012년 2월 9일) 署授食字第1001303885호 (2013년 9월 2일) 部授食字第1021350319호 수정	1. 동충하초 균사체 식품의 표시(이하 본 식품)는 다음의 규정으로 함 (1) 상품 외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본상품은 한약재의 동충하초로 제조한 것이 아님”을 표시해야 함 : 글자체 및 크기는 4mm보다 커야함 (2) 상품의 외포장에는 세균의 중문명과 라틴어의 학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3) 상품 표시 또는 광고 시, “동충하초 균사체 식품”임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동충하초”만을 표기할 수 없으며, 모든 글자의 크기는 동일해야 함 2. 식품의 품명을 “동충하초 균사체”로 표기 할 경우 사용하는 균은 반드시 <i>Hirsutella sinensis</i>(중문 : 中華被毛孢)으로 표기하거나 동충하초의 총초에서 분리된 균임을 표기해야 함 3. 실시일자 : 2014년 2월 9일 시행

규정	품명 표시 규정
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규정 (「宣稱含果蔬汁之市售包裝 飲料標示規定」) (2013년 10월 2일) 署授食字第1021350410호	1.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함 2. 본 규정은 상품 외관 포장 상 “과채”라는 명칭 또는 과채류 도안이 표시된 직접 음용하는 포장 음료에 해당됨 3. 과채즙 함량 10% 이상 첨가된 음료는 상품 외관 정면에 명확한 원액 함량을 표기해야함 4. 과채즙 함량 10%에 미달한 음료는 상품 외관 정면에 “원액 함량 10% 미달”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하며, 실 원액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5. 과채즙이 미첨가된 과채류 맛 시판 포장음료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함 (1) 상품 외관 상 과채류 도안 또는 “과채”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상품 외관 정면에 “과일(채소)원액 미함유”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 (2) “과채” 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품은 품명 상 “맛”, “향”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추가 표기함 6. 종합과채즙음료(과채즙 총 함량 10% 이상) 품명 표기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함 (1) 품명 상 과채 명칭이 전부 표기된 경우 : 함량 고저 순위로 표기해야 함 (2) 품명 상 과채 명칭이 전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종합과즙”, “혼합과즙”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 7. 본 규정의 “원액 함유율”, “과일(채소)원액 미함유”, “과일(채소)원액 함량 10% 미달”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와 관련하여 글자색은 배경색과 명확하게 달라야 하고 글자크기는 중화민국 국가표준 CNS 2377호 원액 함유율 표기 규정에 의거 처리함 8. 실행 일자 : 2015년 7월 1일 실행

- 중앙주관기관이 공포한 품명 표시 원칙

원칙	품명 표시 원칙
신선 및 멸균 및 혼합 우유 품명 및 표시 원칙 (「鮮乳, 保久乳及調末味乳品名及標示原則」) (2010년 6월 15일) FDA食字第0991301741호	품명이 “신선우유”인 경우 반드시 CNS3036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품명이 “멸균 우유” 혹은 “우유”인 경우 반드시 CNS13292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품명이 “조제우유”, “조제유” 혹은 “장기보관 가능 조제유” 등인 경우 반드시 CNS305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곡물상품 명칭 및 표시 관련 원칙 (「全穀產品宣稱及表示原則」) (2013년 4월 30일) FDA食字第1021301154호 수정	1. 고체 상품 중 곡물성분이 총 중량의 51% 이상이어야 전체곡물성분(全穀商品)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상품의 총량 중 51% 이상인 곡물유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명명 가능 함 [全麥(전체보리)○○, 全橋麥(전체메밀)○○ 등] 2. 곡물성분이 51% 이하일 경우 전체곡물성분상품이라 명명할 수 없고 “본 상품은 부분적인 원료를 전체 곡물 분말로 제조” 등의 방식으로 표기 할 수 있음 3. 상품의 명칭을 전체곡물성분 원료사용 이라 명명하려면 반드시 100% 곡물성분을사용해야 함

- 일반식품의 품명 표시 원칙

유 형	설 명
함유된 원료성분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	식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에 따라 품명을 정할 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고구마 분말(地瓜粉)」 식품은 고구마 가루로 만들고 「고구마 분말(地瓜粉)」이라 명명함 (2010년 7월 26일 FDA食字第0991302303호)
원료 품종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	식품원료의 품종에 따라 식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화우(和牛)」는 그 혈통 및 사육 방식이 타국가 품종의 소들과 달라, 화우의 맛과 육질은 독특함을 나타냄 ; 업자는 품종 및 원산지 증명을 구비하여 제공해야 함
식용 부위 통용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	식품원료의 식용가능부위의 통용명칭으로 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돼지갈비(松阪豬)」는 돼지고기 경부의 통칭으로, 그 비계의 분포는 「소 갈비(松阪牛)」와 유사하여 명칭을 얻게 됨
생산지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	원산지의 원료 및 제조 과정이 독특하여 식품 품명을 원산지에 따라 정할 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예 : 「신주 쌀국수」는 대만 신주에서 생산되는 쌀국수 또는 그 지역의 특수한 가공법으로 제조한 것을 「신주 쌀국수」라고 명명함

유 형	설 명
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거나 국제 통용어를 중문 직역한 품명인 경우	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어 소비자가 이미 그 식품에 그 원료가 함유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 또는 국제 간 통용어가 중문으로 직역된 품명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 예 : 「태양빵」에는 태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함

- 특정식품의 품명 표시 원칙

유 형	설 명
미생물 및 원료로 제조한 식품	1. 미생물 및 그 원료 식품은 시판 통용 명칭을 품명으로 사용함 예 : 효모균 및 유산균 등 2. 유산균 계열은 당(醣)을 발효한 뒤 생성된 세균으로 비피더스균, 유산균, 건구균 등이 포함 됨
식용 가능한 버섯균류를 원료로 식품 품명을 명명한 경우	1. 식용 가능한 버섯균을 원료로 하여 통용 명칭 또는 분류 명칭으로 품명을 정함 예 : 영지, 상황버섯 등 2. 「영지(靈芝)」 계열은 영지(Granoderma)속의 버섯균류를 말하며 나무영지(樹舌靈芝), 노루뿔영지(鹿角靈芝), 적지(赤芝) 및 송삼(松杉靈芝) 등을 포함 3. 버섯균사체를 원료로 첨가한 경우, 「○○균사체」 글자로 표기를 해야 하고, 그 글자 크기는 일정해야 하며 통용 명칭이나 종류별 명칭만으로 품명을 표시해서는 안 됨 예 : 「영지(靈芝)」식품은 원료에 노루뿔영지(鹿角靈芝)가 함유되어 있다면 노루뿔영지(鹿角靈芝), 영지 등의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
식용 가능한 중약재로 식품 품명을 정한 경우	1. 식품 중 식용 가능한 중(한)약재를 첨가하고, 그 함유된 중(한)약재 원료로 품명을 표시할 시에 중(한)약재 명칭이 행정원 위생서 중약위원회 규정에 부합해야 함 2. 중(한)약 고유 성분을 식품 품명으로 할 경우 식품 내용물은 반드시 그 성분의 중약재가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야 함 (예 : 영양첨가제) 기타 식품의 성분 비율은 중약재 성분과 동일해서는 안 됨 중(한)약재 고유 성분 및 그 성분 가감(加減) 방식을 품명으로 할 경우 그 품명은 중약재 고유의 단일 성분 또는 가감된 성분을 직접 명칭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중(한)약품으로 오해가 없도록 함 예 : 「사물탕(四物湯)」과 비율이 다른 경우, 식품 표기는 「딸기사물탕(草莓四物湯)」, 「철분 함유 사물탕(含鐵四物湯)」 또는 「○사물 음료수(四物飲)」 등으로 표기함

- 기타 식품 품명 표시 원칙

유 형	설 명
식품 내용물(원료) 및 그 성분을 식품 품명으로 정할 경우	식품 내용물(원료) 및 그 성분이 동일하게 식품 품명이 되는 경우, 그 순수 성분이 행정원 위생서 공고의 「식품첨가물 사용규범 및 제한량 표준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규정에 부합하거나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에 속해야 함 ; 만약 식품 내용물에 직접 첨가한 원료의 순도나 공고한 식품첨가물이 규정 표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식품 원료 추출물 성분 중 일부이므로 순도 100% 성분 명칭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예 : DHA는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에 속하지 않으며 어유(魚油)의 한 성분이므로 품명은 DHA라고 명칭 할 수 없고, 「어유 DHA」 혹은 동일한 의미의 글자로 명칭해야 함
식품의 영문품명 표기방식	식품의 영문 품명은 공급자가 제공한 영문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함 의료효능이 있는 상품 혹은 공급자가 영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 함 중문 품명은 반드시 위생관리법의 상관 규정에 부합해야 함 예 : 상품 원래 영문명이 「SOY BEAN EXTRACT TABLET」일 경우 중문명 「大豆萃取錠」을 사용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하며, 의료 효능 입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영문 명칭을 써야 함

□ 「유전자 변형 대두 및 옥수수 원료 사용 식품 표시 사항(以基因改造黃豆及基因改造玉米為原料之食品標示事宜)」 수정

- 공포기관 : 위생복지부
- 근거조항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제22조 제1항 제9호
- 공고번호 : 署授食字第1021350531號
- 공포일 : 2013년 9월 26일(공포일부터 효력발생)
- 공고 사항
 - 유전자 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원료로 총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은 「유전자 개조(基因改造)」 또는 「유전자 개조 포함(含基因改造)」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유전자 미 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유전자 미 개조(非基因改造)」 또는 「유전자 개조되지 않음 (不是基因改造)」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유전자 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채집, 저장운수 혹은 기타 요인으로 유전자 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5% 미만 혼합되었을 시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미 변형된 대두 또는 옥수수로 봄
 - 유전자 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해서 제조한 간장, 식용유(샐러드유), 옥수수유, 올리고당, 옥수수 전분 등은 「유전자 개조(基因改造)」 또는 「유전자 미 개조(非基因改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상술한 표시 문구는 품명 혹은 대두, 옥수수 원료 성분 혹은 기타 명확한 위치에 추가 표시할 경우, 글자체 길이 및 너비는 2mm 보다 작아서는 안 됨
 - 강제 표시 시행 일자 :
 - 2003년 1월 1일 : 농산품 형태의 대두 및 옥수수 ; 황색 콩가루, 옥수수, 옥수수 가루를 포함함
 - 2004년 1월 1일 : 대두, 옥수수 위주 원료의 1차 가공식품 ; 두부, 말린 두부, 두유, 연두부, 냉동 옥수수, 옥수수캔, 노란콩 단백질 제품을 포함
 - 2005년 1월 1일 : 기타 대두, 옥수수를 함유한 가공식품 ; 간장, 식용유(샐러드유), 옥수수유, 올리고당, 옥수수전분 등의 가공한 최종 상품 중 유전자 변형 조각 또는 단백질의 대두, 옥수수 가공 식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여김
 - 표기 실시일 2001년 1월 1일
-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 상의 원산지 표기 규정 (含牛肉及牛可食部位原料之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規定)」 제정
- 시행 : 2013년 10월 02일
 - 주관 : 위생복지부 식품과(衛生福利部食品組)
 -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21350501호
 - 근거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제22조 제1항 제7호
 - 내용 : 원산지 표시 규정
1.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에 대하여 소고기 또는 소의 식용부위 원료 대한 원산지(국) 또는 대표성이 있는 문자는 중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2. 소고기 및 소의 식용부위는 우유 및 소기름을 포함하지 않음

3. 식품의 소고기와 소의 식용부위 원료는 그 도살한 원산지(국)를 의미함

○ 「용기 혹은 포장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相關規定)」 폐지

－ 주관 : 위생복지부 식품과(衛生福利部食品組)

－ 공포 및 시행 : 2013년 10월 2일

－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21350503호

－ 근거 : 중앙법규표준법(中央法規標準法) 제21조

－ 사유 : 폐지 사유는 아래와 같음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이하 본법이라 칭함) 「용기 혹은 포장된 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相關規定)」의 부분 내용은 본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 상의 원산지 표기 규정 (含牛肉及牛可食部位原料之有容器或包裝之食品原產地標示規定)」와 중첩되므로 규정을 폐지함

어 있음. 면실유는 주요 식품으로서 자주 이용되고 있지만, 면실단백질은 고시
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축사료에만 이용되고 있음.

- 대만 종산위원의 관계 영양사는 40% 이상이 면화유에 10cc의 정도가 고시폴 성
분이 함유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락을 구매해서 섭취하는 소비
자는 1일 가능한 면화유 섭취량을 초과한다고 함
- 세계위생연구기관에서는 70kg 체중의 남성이 15cc의 면화유를 매일 섭취할 경
우, 3~6개월 사이에 정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함. 전문의사는 30kg 체중의 어린
이 경우에도 매일 5cc씩 섭취할 경우에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영향을 받는다
고 함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개정과 함께 혼합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요구되고 있음. 제조사 및 수출입업자 모두 주의가 필요함

(2013/10/22 TVBS 보도)

□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음료수 혼합성분에 대해서도 검사 강화 확대

- 2013년 10월 29일 위생복지부는 향후 차, 과일주스, 우유 등의 식품에도 혼합
성분에 대한 성분표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을 발표(TVBS 보도)
- 위생복지부는 대만에 판매되는 대만산 표시 차 잎의 양이 생산량을 넘어섰으며,
일부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된 차 잎을 대만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식
품표시와 사실 여부를 조사할 것임을 공고함

□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과채즙 음료에 대한 명칭 재규정

- 2010년 10월 9일 우화건강넷(優活健康網) 보도에 따르면 식품약품관리서는 소
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즙이 10% 이하일 경우 과일 주스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과일향’이라는 표시하게 할 예정임.

-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食品衛生管理法) 제47조에 근거하여 최고 NT\$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됨. 또한 그 혼합성분이 유해물질일 경우에는 동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최고 NT\$1500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 1회용식품 용기 적정 온도 표기 실시

- 위생서(현 위생복지부) 2년 전에 제정한 법규를 실시함. 이미 2012년 전 7월 21일 1차적으로 반복사용 가능한 식품용기에 대한 표기 제도가 실시됨. 2013년 7월 21일 부터는 1회용 식품용기에 대해서도 표기를 실시함
- 예를 들면 「PPT재질의 용기이므로 85도 이하에서 사용해야함.」이라고 표기해야 함
- 식품용기 제조업자 또는 대만 관련 수출입업자는 식품약품관리국 플라스틱 식품용기 선도 웹사이트 참고(<http://plasticspackage.pidc.org.tw/>)
- 관련 업자들은 플라스틱재질과 적용온도에 대한 표기를 반드시 해야하며 위반시 식품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최고 NT\$3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짐

□ 식품안전 수호연맹 창단

- 식품약품관리서와 식품 또는 영양관련 전공 학생 1만8천명이 참여하여 “식품안전 수호연맹”을 창단함. 시중 식품에 대하여 식품양호위생규범「食品良好衛生規範(GHP)」부합 여부를 선도할 예정임(2013/10/22 대만 연합보 보도)
- 식품위생관리법은 2013년 6월 실시되면서 위반자에게 최고 NT2천만 원의 벌금형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식품위생 및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식품약품관리서 통계에 의하면 관련학과가 대만 전국 37개 학교와 18,633명의 학생이 분포함.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연맹 창단 후 전국의 각종 유통업자와 생산 판매업자들을 감시 선도할 예정임

제4절 자료출처

1. 통관제도

가. 웹 사이트

- ☐ 관세총국(關稅總局) : <http://www.customs.gov.tw>
- ☐ 지룽관세국(基隆關稅局) : <http://keelung.customs.gov.tw>
- ☐ 타이베이관세국(台北關稅局) : <http://taipei.customs.gov.tw>
- ☐ 타이중관세국(台中關稅局) : <http://taichung.customs.gov.tw>
- ☐ 까우슁관세국(高雄關稅局) :
<http://kaohsiung.customs.gov.tw/mp.asp?mp>
- ☐ 관정사(關政司) : <http://doca.mof.gov.tw>
- ☐ 전국법규자료사이트 : <http://law.moj.gov.tw/>
- ☐ 행정원 정보 공고 사이트 : <http://gazette.nat.gov.tw/egFront/index.jsp>

나. 관련 법률 및 규정

- ☐ 「관세법(關稅法)」, 「관세법실행세칙(關稅法施行細則)」
- ☐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貨物通關自動化實施方案)」
- ☐ 「국제택배간의통관방법(快遞貨物通關辦法)」
- ☐ 「관세쿼터제실시방법(關稅配額實施辦法)」
- ☐ 「수입화물세칙심사실시방법(進口貨物稅則預先審核實施辦法)」
- ☐ 「평형세 및 반덤핑세 징수 실시방안(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 ☐ 「세관징수비용규칙(海關徵收規費規則及特別監視費, 押運費之徵收標準, 繳費義務人及核准文件表)」

- ☐ 「밀수단속규칙(海關緝私條例)」
- ☐ 「유기 농산물 수입 규정(有機農產品輸入規定)」
-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 통관, 검역, 라벨링제도 공통
- ☐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
- ☐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통관, 라벨링 제도 공통)

다. 참고 서적

- ☐ 「화물통관자동화수첩(貨物通關自動化報關手冊)」

2. 검역제도

가. 웹 사이트

- ☐ 행정원위생서 : www.doh.gov.tw(검역, 라벨링 공통)
- ☐ 행정원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 www.fda.gov.tw(검역, 라벨링 공통)
- ☐ 행정원위생서중의약위원회 : www.ccmp.gov.tw
- ☐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 www.baphiq.gov.tw
- ☐ 경제부표준검험국 : www.bsmi.gov.tw
- ☐ 재정부국고서 : www.nta.gov.tw

나. 관련 법률 및 규정

-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隻五或中華民國植品檢驗規定)」
-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검역, 라벨링제도 공통)

3. 라벨링제도

가. 관련 법률 및 규정

- ☐ 「수입식품 검사작업 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
-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 ☐ 「식품위생관리법시행세칙(食品衛生管理法施行細則)」
-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품 관리 방법(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品加工品管理辦法)」
- ☐ 「식물첨가물관리법(食品添加物管理辦法)」
-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 「주류 표시 관리 방법(酒類表示管理辦法)」

통관제도

제1절 식품 수입절차 일반

1. 개 요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식품법안 Act No. 7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으로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핵심 법안임
- 식품법안(Food Act)에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은 생물학적 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가공 및 미가공 제품으로 인 간이 섭취 또는 복용하도록 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 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 식품재료 이외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 이 된다.”
- 또한 식품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식품과 관련된 안전, 품질, 영양 등과 같은 기술적 기준, 그리고 식품의 라벨 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을 생산,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하는 업자의 책임 및 그 결정내용을 강제

- 하기 위한 법률적 제재조치
 - 소비되는 식품의 다양성 및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
 - 내수소비 및 수출되는 식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규정은 식품법안의 제5장에서 다루며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법안 및 그 시행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입면허의 주관부서는 무역부이지만, 의약 및 일부 식품과 같은 특별한 제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정부 부서의 특수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모든 수입제품들이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음

2. 농림 및 식품 수입절차 흐름도

□ 수입절차

- 인도네시아는 수입업자가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수입절차가 복잡함.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무역면허)를 먼저 등록하여야 함. 모든 수입업자들은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관세청등록번호) 및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식품 및 음료 수입업자들은 추가적으로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IP/IT) 면허, 그리고 필요시 별도의 Registered Importer Number를 발급받아야 함

○ 다음은 수입절차의 요약임

파트터십 형성	기업이 수입업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한다		수출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관계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공한다
	SIUP		
	NIK		
	API		
수입허가 신청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의 정부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제품수입허가를 신청한다		제품 등록 ML 번호
	ITPT	수산물 수입허가	
	IP/IT 원예 제품	IT 동물 제품	
제품의 운송	통 관		
	식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제품의 인도		

□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SIUP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SIUP 발급부서인 산업 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letter of good conduct (적정시민인증서)를 요구할 수가 있음
- SIUP는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One Stop Shop Service (간편 업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SIUP의 사례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의 신청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 (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9 근무일
신청 비용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IDR 400,000-IDR500,000,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IDR 600,000-IDR700,000, 대형기업의 경우 최소 IDR750,000-IDR1,000,000에서 출발한다

□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NIK : 관세청 등록번호)

- NIK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임
- “관세청 등록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nduk Kepabeanan, NIK)를 발급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
- NIK 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이용자의 내용,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됨
- NIK는 관세청이 취소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함.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NIK를 취소할 수 있음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가 된 경우
- 취소 된 NIK는 취소결정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NIK를 회복 할 수 있음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등록 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이 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 수입업자 등록번호)

- NIK와 더불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 됨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규정에는

API가 있는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판촉제품, 연구개발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함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API의 취득이 필수적임
- API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신청하며,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함.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짐
- API는 API-U, API-P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API만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API-U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되며,
 - API-P는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됨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의 신청

요구 서류	1.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 (설립취지서) (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 (사본) 3. 투자 등록서 (사본)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 (기본승인서) (사본) 5. 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 (사본) 6. 납세자 ID 번호 (NPWP) (사본) 7. 기업 등록 증명서 (TDP) (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주민 ID 카드 혹은 여권 (사본) 9. IMTA (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x4 사진 2매
신청 처리	5 근무일
신청 비용	IDR6,000
유효 기간	5년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 통지가 됨. 한국의 수출자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API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됨. API 통지문서의 사례는 부록에 포함이 되어 있음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무역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가 될 수가 있음
 - API가 2회에 걸쳐 효력정지를 당했을 경우
 - API가 효력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API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API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NPIK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품목은 항구에서 억류조치 됨
- 특수품목에는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 및 관련제품, 신발, 전자 및 완구가 포함되며, 동 조치는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해당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NPIK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MoT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의 신청	
요구 서류	1. API-U를 취득한 업체 - API-U - 최근 5년간 사이의 2개년 연속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2. API-P를 취득한 업체 - API-P - 산업활동 허가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10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5년

- 수입업자의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수입업자에게 NPIK가 발급이 됨
- NPIK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무역협력국에 수입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 NPIK는 취소될 수가 있음
 - NPIK의 내용에 변경, 추가, 대체를 하는 행위
 - NPIK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불가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Product Registration (ML Number : 제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 (1999) 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 국가 의약품관리청)에 등록해야 함.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함.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음

☐ Makanan Luar (ML : 제품등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함.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음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 ML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접수에 따라, BPOM은 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미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BPOM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식품제품에 대하여 임시 ML을 발급하기도 하였음.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1999) 시행에 들어가 수입 식품제품의 제품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임. 모든 수입 식품제품들은 BPOM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함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의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타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선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인센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 -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 -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
신청 처리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함.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가 됨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침.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IDR 50,000 - IDR 2,500,000, 제품당 IDR 1,000,000 - IDR 10,000,000 에 이름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함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 농수산물식품 쿼터

- 원예작물의 경우 수입 전에 먼저 쿼터 신청을 해야 한다. 쿼터 신청은 1년에 반기별로 신청해야 함. 쿼터 신청 대상품목은 “부록7”에 있음
- 신청절차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 후, INATRADE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함
- 신청서류
 - 원예품목 수입등록서 (무역부에서 발급)
 - 원예품목 수입추천서 (농업부에서 발급)
 - 수입 승인서 (무역부에서 발급)
 - 무역판매업허가증(SIUP)
 - 세무번호(NPWP)
 - 수입허가서 (API)
 - 창고허가증 (Sertifikat Gudang)
 - 차량운행증 (STNK) · 차량등록증 (BPKB)
 - 원예작물의 경우, 유통된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 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유통계약서
- 어류 및 수산물 쿼터 신청 절차
 - 신청 서류를 지방 수산부(Dinas Provinsi Perikanan)에 신청하여 추천서 발급

- 해당 추천서를 해양 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에 쿼터 신청

- 쿼터 신청 시에 생선 그림과 수입량을 기재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서류

- 시장(구장)의 추천서
- 무역등록증(TDUP), 생선 임시 검역증(IKIS), 세금공제서(SKP), 무역판매업 허가증(SIUP), 세무번호(NPWP)
- 레스토랑 및 호텔에서의 주문내역서
- 자카르타 주정부 추천서
- 해양부에서의 수입승인서

○ 대상품목

- 어류 및 수산물 모든 품목
- 특히 한국에서 수출유망품목인 김, 미역 등이 쿼터에 묶여 있음

○ 쿼터 허가 후 6개월 내에 쿼터를 받은 식품을 수입해야 함

□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비정부기관인 MUI의 부속기관인 LPPOM MUI에서 발급

○ 할랄 인정 범위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LPPOM MUI)에서 인정하는 해외 41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어야 함

*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에서 발행하는 할랄인증은 2013년 7월 1일부로 발급

- 그 할랄 인증을 발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에 할랄 라벨 부착은 권고사항으로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 의거 할랄 인증이 필요함

3. 수입 통관

□ 관세청의 역할

-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DGCE : 관세청)은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강제,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짐

□ 해외의 출발지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의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짐

- 많은 기업들은 관세청 사안을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만, 관세 및 세제의 책무가 빠르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고 500%에 달하는 행정적 벌과금 등에 노출 될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함

□ 관세청 통관절차

도착 전	관세항구 에의 도착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 으로 물품인도	관세청으로 부터 물품인수

○ 도착 전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함. 동 통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의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일
- 하역예정의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관세 항구에서의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품의 목록

○ 수입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음.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관세청에게 제출함

○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IB)를 준비함. 수입신고서 제출시 관세청이용자요금(Penerimaan Negara

-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임
- 수입업자는 PIB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함.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임

- 수입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 - 170%의 요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VAT) : 요율은 0% - 10%이다.
- 사치품 판매세 (STLG) :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된다.
- 소득세 (PPH) : 등록된 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업자는 7.5%

- 위에 열거된 수입관세 및 제세는 PIB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함
- EDI 시스템이 전면시행 되고 있는 Tanjung Priok 항구 및 Soekarno-Hatta 공항에서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는 전자결제를 이용하여야 함

○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한다.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수입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됨. 수입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5 근무일)이외에는,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3 근무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이 보다는 빠름. 실제로 녹색통로의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0분이 걸림

1. 적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M)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2. 황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K)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3. 녹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PB)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4. MITA 일반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일반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된다.
5. MITA 우선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우선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된다.

○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함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4. 원산지 규정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발표를 관할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관세율과 관련된 특혜대우의 시행을 주안점으로 함.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른 특혜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ASEAN 물품교역 협약 (ATIGA)
- ASEAN-중국 FTA (ACFTA)
- ASEAN-한국 FTA (AKFTA)
- ASEAN-인도 FTA (AIFTA)
- ASEAN-호주 및 뉴질랜드 FTA (AANZFTA)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파트너협약 (IJEPA)

□ ASEAN-한국 FTA (AKFTA)

- 동 특혜관세협약은 한국 및 다른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품에 적용됨. 수입업자는 관세율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KCCI)로부터 원산지증명서 (C/O) 양식을 발급 받아야 함
- 현재 KCCI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함. 한국과의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에는 FTA C/O가 발급됨
-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세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KCCI로부터 C/O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됨

5. 서 류

-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양식(PIB)을 준비해야 함. 세관 신고양식의 유형은 수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입 신고 양식	
물품 수입 신고서 (PIB 양식)	BC 2.0
특정 물품 수입 신고서 (PIBK 양식)	BC 2.1
승객 혹은 운송수단 승무원의 물품 수입 신고서	BC 2.2
보세구역 보관예정 물품 수입신고서	BC 2.3
관세지역 (DPIL)을 출발하여 보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의 이전 신고서	BC 4.0
수출용도로 수입시설에 도착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정산 신고서	BC 2.4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신고서	BC 2.5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서	BC 2.6.1
보세구역 보증부인도된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재진입 신고서	BC 2.6.2
보세구역간 물품이전을 위한 신고서	BC 2.7

-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관세청신고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지역 진입 시에도 구비해야 함

- 선하증권 (B/L)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 (AWB)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권
 - 원산지 증명서 (C/O)
 -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양식 사본
 - 관세 및 제세 납부 증명 (영수증)
 - 특정물품에 대한 관련 증명서
 - 통제되는 물품에 대한 유효한 관련 허가서
-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음
- 매매 계약
 - 구매서
 - 송금전표
 - 제품 카달로그
- 서류의 정정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2일 전에 모든 수입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권장됨

제2절 제품별 관세 및 통관절차

1. 제품별 수입 및 통관절차

□ 포장식품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제품의 수입 관련”에 따라 무역부는 2010년 가을에 188개 식품 및 음료 항목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10자리 HS 관세코드의 505개 항목에 대한 수입제품의 요구조건을 강화

함.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 및 음료 제품, 완성된 의류, 신발류, 전자류, 완구류, 전통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됨. 동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구체적 목록은 부록에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포장식품의 수입은 등록된 특정제품 수입업자 혹은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ITPT)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 특정제품 수입업자) 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2. 기업 등록번호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NPIK에 특수제품의 수입허가가 표시된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사본) 5. 관세청 등록번호 (NIK) (사본) 6. 물량, 제품의 종류, 관세분류/HS 10자리 번호, 도착항 등이 포함된 1년간의 수입계획
신청 처리소요기간	7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 ITPT에 수록된 제품들은 전국의 국제공항 및 5개의 항구(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 Hatta) 등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Dumai 및 Jayapura 항구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선적항으로 이용될 수가 있음
- ITPT 수입업자들은 매 3개월마다 익월의 15일까지 <http://inatrade.kemendag.go.id> 를 통해 수입제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ITPT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업자 부담으로 선적항에서 제품을 확인 또는 기술조사하는 것이 요구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TPT가 철회 됨
 - 수입업자가 제4조에 요구되는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수입업자가 특수제품을 연속된 6개월 동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 재무부산하 관세청에서 수입업자가 관세 사안에 대한 위반을 하였다고 보고할 경우

- 수입업자는 ITPT가 철회된 6개월 이후에 새로운 ITPT를 위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입 포장식품의 경우, BPOM은 최소유통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의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1.5년 이상
 -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6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3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 수산물

- 수산물 관할부서는 해양수산부(DKP)이며, 수산양식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이 관할부서임. 수산물의 인도네시아 수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규정은 해양수산부 규정 No. PER.15/MEN/2011 -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임
- 인도네시아에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API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또한, 수산물 제품의 수입허가(Surat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도 의무사항임. 수입허가의 발급은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관할임

수산물 수입허가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의 사유 및 목적 2. 학명 및 교역명 3. 유형 (10자리 HS 번호) 4. 전체 금액 혹은 물량, 그리고 규격 5. 원산지 국가 6. 운송 수단 7. 도착 항구 8. 수입 일정 9. 수산물 원산지 10. 지역 정부기관의 추천서 11. API-P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HACCP 적용 증명서 ; API-U 수입업자의 경우 SKP (사본)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수산물 수입허가의 신청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6개월

- 수산물 수입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가 됨. 수산제품 수입허가 (Suratl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의 예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 학명 및 교역명
 - 유형 (10자리 HS 번호)
 - 수량 혹은 용량
 - 운송 수단
 - 원산지 국가
 - 입국 항구
 - 수입 일정
 - 수입 사유 및 목적
- 수입업자는 수산제품의 도착에 대하여 관세청에 사전통보할 의무를 가짐. 활어 수산제품은 도착 최소 2일 전에, 선어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도착 1일 전에 통보하여야 함
- 또한, 검역의 목적으로 수산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 국가의 위생 증명서
 -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수산제품이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잔류량,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의 오염이 없으며, 냉동제품의 경우 제품의 순중량이 95% 이상이며, 수산제품이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시험 성적서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설명서
 - Good Aquacultural Practice (GAP) 인증서

- 2010년 이후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특정 품종의 새우의 수입금지 관련”에 따라, 특정 품종의 새우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냉동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 (HS번호 : 030613), 그리고 활어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 (HS번호 : 030623).
-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모든 수산제품은 다음의 항구들을 통해서만 반입될 수가 있음
 - 모든 국제 공항
 - 해항 : 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Hatta
 - Entikong의 국경 검문소
- 수산 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규정 No.KEP.025/DJ-P2HP/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산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에 반입될 수가 없음
 -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수산 제품
 - 계절의 영향을 고도로 받는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에 양식되지 않은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 어민 또는 농민에 의해 역외에서 생산되는 수산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

- 가장 최근의 신선 과일 및 채소 관련 규정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임. 동 규정에 따르면, 원예는 과일, 채소, 채소재료 및 채소, 채소재료 및 화훼류를 총칭하며 진균류, 이끼류 및 수생식물을 포함함. 그러나, 동 규정에는 딸기 및 버섯류는 포함되지 않음
- 무역부로부터 원예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IP-원예제품) 혹은 원예제품의 등록 수입자(IT-원예제품)의 면허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원예제품의 수입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음
- IP-원예제품의 취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무역부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IP/IT - 원예제품의 신청	
요구 서류	IP-원예제품 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발급된 원예제품 원재료의 취급을 허용하는 사업면허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 4. 생산자/수입자 등록 번호 (API-P) (사본) 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 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 7. 농림부 장관 혹은 그 위임을 받은 관리로부터의 원예제품 수입 추천서 (RIPH) IT-원예제품 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사업영역이 원예를 포함하고 있는 무역사업면허 (SIUP)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 4. 일반 수입업 등록 번호 (API-U) (사본) 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 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 7. 최소 3개 유통업자와 각기 최소 1년 기간의 원예제품 매매계약 증빙자료 8. 최소 1년 원예제품 유통경험 증빙자료 9. 원예제품이 소비자 혹은 소매상에 직접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공증된 문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 인도네시아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따라,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 사전통보는 의무사항임. 동 규정의 목적은 신선 과일 및 채소가 병충해로부터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임. 인도네시아에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기 위해 사전통보 되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원산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로부터의 식물검역 증명서 (Phytosanitation Certificate)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원산지국가로부터의 무해충 생산지역 확인서

○ 가장 최신의 농림부 규정 No.42/Perma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을 위한 식물검역 행위 관련”은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다음 4개의 진입항구로만 수입이 될 수가 있음

- Surabaya, Tanjung Perak 해항
- Medan, Belawan 해항
- Jakarta, Soekarno-Hatta 공항
- Makassar, Soekarno-Hatta 해항

- Jakarta, Tanjung Priok 항구는 WTO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 호주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며 기타 국가는 불가함. 이로 인해 한국의 경우 Surabaya, Tanjung Perak 항구를 이용해야 함
- '13.11.15일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CRA 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 IT-원예제품 수입업자는 농림부 산하 농림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에 매월 15일에 월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월간보고서에는 원예제품 수입실적에 대한 보고, 관세청 직원이 서명한 수입실적 관리카드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함

□ 인삼

- 인도네시아는 인삼수입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 혹은 법규가 없음. 인삼의 형태 및 분류에 따라, 인삼은 포장식품 또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절차를 따름
- 인삼이 전통식물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포장식품을 관할하는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의 적용을 받게 됨
- 인삼이 뿌리삼의 형태라면, 신선 과일 및 채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인삼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 수입조례”를 적용받게 됨

□ 유아용 조제분유

- 2011년 10월에 무역부 규정 No.24/M-DAG/9/2011 -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수출입조례 관련”이 발효가 되었으며, 동 규정에는 HS 번호 01, 02, 04 및 16류의 제품들이 모두 포함이 됨. 유아용 조제분유는 - HS번호 040210, 040221, 040229 및 040290으로 분류가 되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등록 수입업자-Importir Terdaftar Hewandan Produk Hewan(IT-동물 및 동물성제품)-로 등록하여야 하며, 동 등록서는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기 위한 인가면허가 됨
- IT-동물성제품 면허 발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INSW)를 통하여 국제무역협력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IT -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신청	
요구 서류	1. 무역 등록 면허 (SIUP) 혹은 동물 및 동물성제품 분야 사업면허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5. 법령에 따른 번식장 소유권 증빙자료 및 동물 보호소 소유권 증빙자료 또는 동물보호소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보호소와의 계약서 6. 냉장 저장시설 소유권 증빙자료 및 동물성제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의 소유권 증빙자료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연장 가능

- IT-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수입업자 등록 후, 수입업자는 수입계획을 가진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국제무역협력국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수입승인은 원산지국가에서의 건강증명서 발급의 근거가 되며, 검역과정에서 제출되는 건강증명서에 명시 되어야 함

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승인의 신청	
요구 서류	1. IT-동물 및 동물성제품 허가서 (사본) 2. 6개월에 걸친 동물/동물성제품의 수입 계획 3. 동물성제품 및 신선 동물성제품의 수입에 대한 농림부 추천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 수입승인 신청은 연간 2회(5월, 11월)의 기간에 걸쳐 접수가 됨. 수입승인서는 원산지국가에서의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건강증명서의 근거가 됨. 수입승인을 받은 IT-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입업자는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입실적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국제무역협력국, BPOM 및 농림부 축산 및 축산 건강국 등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동 월간보고서는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입승인서 사본 및 관세청 직원이 서명한 수입실적관리카드 사본 등으로 구성이 됨
- 우유제품 수입시 검역의 목적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국가의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제품이 위생표준, 그리고,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HACCP/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요구조건의 충족 등에 관한 수의학기준의 기술조건 등의 표준을 충족한다는 건강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위험요인분석 증명서
 - 제품원산지, 생산공정, 구성내용, 생산자/제조자 상호, 제품 유형, 유통기한, 생산관리번호, 목적 등이 명기된 제품 등록 서류
 - 벌크상태의 우유의 경우, Halal 인증서 혹은 선언서가 요구됨

2. 제품별 관세율

-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일반 관세율 평균은 37.1%이었으며,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평균은 6.8%이었음

- 인도네시아는 수시로 적용 관세율을 변경함. 2009년 및 201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경쟁하는 여러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적용 관세율을 인상하였음. 여기에는 화학, 전자제품, 전기 및 비-전기 밀링기계, 화장품, 의약품, 철선, 와이어못 이외에 우유제품,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과일 주스, 커피, 홍차 등의 다양한 농산물들이 포함 되었음
- 농산분야에서는 1,300여 제품들은 40% 이상의 고정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 감자의 관세율은 고정관세율이 50%이며, 적용관세율이 20%임. 이러한 고정 및 적용 관세율의 큰 편차 그리고 적용 관세율의 임의성 등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려는 많은 외국기업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 포장 식품

- 포장식품에 관한 HS분류체계의 상이성으로 포장식품에 대한 통일된 관세율 척도는 존재하지 않음. 초코렛 및 사탕류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은 가장 높은 7.1%를 기록하고 있음. 다른 제품들은 약 5%대의 관세율을 적용 받음. 그러나 AKFTA의 존재로 많은 한국계 포장식품 업체들은 수출제품에 대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다음은 주요 포장식품 제품에 대한 관세율 표임

Ⅰ 포장식품 관세율 Ⅰ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70490	설탕 사탕류, 코코아 미포함	10%	0%
190230	즉석 면	10%	0%
220290	기타 비알콜성 음료, 포장	5%	0%

□ 수산물

- 수산물은 2011년도에 MFN 평균 관세율이 5.8%이었으며, 최고 관세율은 15%이었음. AKFTA에 따라 대부분의 HS번호 03류의 수산제품들이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정어리, 참치, 랍스터 등의 일부 제품들은 5%의 관세율을 적용 받음

○ 다음은 일부 수산제품의 관세율 예시임

■ 수산제품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21220	해조류, 신선 또는 건조, 분말 또는 생	5%	0%
200899	과일 및 식물의 기타 식용가능 부분	5%	0%

(주 : Euromonitor 담당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분류법에 따라 해조류는 “식물의 식용가능부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조류는 HS번호: 2008류에 해당이 된다.)

□ 신선 과일 및 채소

○ 2011년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MFN 평균 관세율은 5.9%이었음.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장 높은 MFN 관세율은 25%인 것으로 추측이 됨.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 받음

○ 다음은 주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관세율 표임

■ 신선 과일 및 채소 관세율 ■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081110	딸기	5%	0%
080810	사과	5%	0%
080830	배	5%	0%
080610	포도	5%	0%
080590	감귤류, 신선 또는 건조	5%	0%
070959	버섯, 신선 또는 건조	5%	0%
0703102900	기타 골파류	20%	0%
0706101000	당근	20%	0%
0804502000	망고	20%	0%
0805200000	만다린 귤	20%	0%

□ 인삼

■ 인삼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21190	제약, 향수,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식품 및 식물부분 (씨앗 및 과일 포함)	5%	0%
121120	기타 건조 인삼뿌리, 절단 및 미절단, 분쇄 혹은 분말	5%	0%
200599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	5%	0%
300490	중국식 의약품, 기타성분, 소매를 위해 일정 분량으로 권장 또는 포장되는 제품	5%	0%
130219	기타 식물 즙 또는 엑기스	5%	0%

□ 유아용 조제분유

다음은 유아용 조제분유의 관세율 표임

■ 유아용 조제분유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90110	유아용 식품, 소매용	5%	0%
040210	분말, 과립 및 기타 고체형태, 지방분이 전체중량의 1.5% 미만	5%	0%

제3절 통관실무 우수사례

- 식품의 수입절차는 대체적으로 간단명료하나 수입절차 전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규정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모두 자료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작은 누락 혹은 오류들이 수입절차의 상당한 지연 또는 물품의 통관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올바른 파트너의 선정

- 인도네시아 수출희망업체들이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을 당부함. 또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비-인도네시아의 수출자들이 원활한 수입절차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지적이 됨. 수입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영어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임
-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자들은 초기 등록 및 통관 등의 과정에서 수입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 해줄 수가 있음 이미 등록된 수입업자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수입절차는 최대 1개월 정도 단축 되며 통관절차도 신속함

□ ML 번호의 조기 등록

- ML번호 등록의 과정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수출자 모두 최대한 단시간 내에 ML 번호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BPOM의 관리에 따르면, ML 번호 등록이 전체 수입절차의 가장 큰 병목사안이며, 인도네시아에 제품이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관세청 지역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ML 번호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업자들은 ML 번호의 등록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여야 함

□ 제품의 숙지

- 수출자 및 수입업자가 자신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하여 고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함.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면 상당한 금액의 벌과금을 부과함
- 제품신고를 잘못하여, 수입관세의 납부에 오류를 일으킨 수입업자/수출자에 대하여서는 전체수입관세의 최소 100%, 최대 500%에 달하는 벌과금이 부과됨

제4절 정부 부서 연락처 및 자료 출처

1. 정부 부서 연락처

☐ Ministry of Trade (무역부)

- 전화 : +62 21 385 8171
- 팩스 : +62 21 385 8191
- 웹사이트 : <http://www.kemendag.go.id/>

☐ 국제무역협력국

- 전화 : +62 21 385 8171
- 팩스 : +62 21 385 8191
- 웹사이트 : <http://www.kemendag.go.id/>

☐ 표준화 및 소비자보호국

- 전화 : +62 21 385 8171
- 팩스 : +62 21 385 8191
- 웹사이트 : <http://ditjenspk.kemendag.go.id/>

☐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 전화 : +62 21 380 8388 / 381 4324
- 팩스 : +62 21 381 0181
- 웹사이트 : <http://www.depkeu.go.id/>

☐ 관세청

- 전화 : +62 21 489 0308
- 팩스 : +62 21 489 7511
- 이메일 : humaskpdjbc@customs.go.id
- 웹사이트 : <http://www.beacukai.go.id>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 전화 : +62 21 525 2008
- 팩스 : +62 21 526 4211
- 웹사이트 : <http://www2.bkpm.go.id/>

☐ National Agency of Drugs & Food Control (국가 의약 및 식품관리청)

- 전화 : +62 21 424 5331 / 4288 3309 / 4288 3462
- 팩스 : +62 21 426 3333
- 이메일 : informasi@pom.go.id
- 웹사이트 : <http://www.pom.go.id>

☐ Ministry of Agriculture (농림부)

- 전화 : +62 21 780 4086 / 780 4056 / 780 6131
- 팩스 : +62 21 780 4237
- 이메일 : webmaster@deptan.go.id
- 웹사이트 : www.deptan.go.id

☐ 축산서비스국

- 전화 : +62 21 781 5580
- 팩스 : +62 21 781 5581
- 웹사이트 : <http://www.ditjennak.go.id>

☐ 농산물 검역청

- 전화 : +62 21 781 6483
- 팩스 : +62 21 781 6483
- 웹사이트 : <http://karantian.deptan.go.id>

☐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 전화 : +62 21 3621 977
- 팩스 : +62 21 3522 040
- 웹사이트 : <http://wee.kkp.go.id/>

☐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국

- 전화 : +62 21 352 1977
- 이메일 : suatphqalung@dkp.go.id

☐ 국가 표준 청

- 전화 : +62 21 574 7043
- 팩스 : +62 21 574 7045
- 웹사이트 : <http://www.bsn.go.id/>

☐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학자 의회 (Majelis Ulama Indonesia : MUI)

- 전화 : +62 21 8358 748
- 팩스 : +62 21 8358 747
- 웹사이트 : <http://www.halalmui.org>

2. 자료 출처

가. 법안

관계 법령	
UU 03/1982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3 (1982) - 기업 의무 등록제
UU 05/198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5 (1984) - 산업 전반
UU 10/1995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0 (1995) - 관세 법령
UU 07/1996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7 (1996) - 식품
UU 08/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8 (1999) - 소비자 보호
UU 31/200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31 (2004) - 수산업
UU 17/2006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7 (2006) - 인도네시아 관세 법령 개정
UU 25/2007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25 (2007) - 투자
UU 36/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36 (2009) - 건강
UU 18/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8 (2009) - 축산

나. 규정

□ 관세청 발표

- 관세청장 조례 No.KEP-22/BC/1997 - 관세 신고금액 산정 양식 및 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32/BC/1997 - 관세청 수입신고서 (PIB) 제출 이전의 관세 신고금액의 승인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68/BC/2003 - 수입분야의 관세업무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14/BC/2005 - 우선순위 통로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01/BC/2006 - 수입분야 관세절차 지침서 조례 No.KEP-07/BC/2003에 관한 3번째 개정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SE-06/BC/2007 - 수입제품의 실물검사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36/BC/2007 - 수입업자 등록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03/BC/2008 - ASEAN-한국 자유무역지대 (FTA)의 틀 내에서의 수입관세율 표시에 관한 기술지침서
- 관세청장 조례 No.P-01/BC/2009 - 수입제품의 인도에 대한 지침서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05/BC/2009 - 관세청 등록번호의 시행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30/BC/2009 - 관세청에의 수입통보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ER-50/BC/2011 - 보세창고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ER-57/BC/2011 - 보세구역 관련

□ 무역부 발표

- 무역부 규정 No.54/M-DAG/PER/10/2009 - 수입산업분야의 일반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46/M-DAG/PER/9/2009 -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 무역부 규정 No.17/M-DAG/PER/3/2010 -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규정 No.45/M-DAG/PER/9/2009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141/MPP/KEP/3/2002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관련
- 무역부 규정 No.07/M-DAG/PER/3/2008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규정 No.141/MPP/KEP/3/2002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28/M-DAG/PER/6/2009 - 인도네시아 National Single Window (국가단일창구) 내 INATRADE를 이용한 전자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허가 서비스와 관련
- 무역부 규정 No.56/M-DAG/PER/12/2008 - 특정 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23/M-DAG/PER/5/2010 - 특정 제품의 수입조례 규정 No.56/M-DAG/PER/12/2008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 제품의 수입 관련

-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영내로의 특정 종류의 새우의 수입금지와 관련
-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24/M-DAG/PER/9/2011 -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출입조례 관련

□ 기타 정부기관 발표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15/MEN/2011 - 인도네시아에 진입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련
-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 - 인도네시아에 과일 및 신선 채소과일을 수입하기 위한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기술요구서 관련

검역제도

제1절 개 요

-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하고 있음.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임.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추가로,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반입 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함

■ 인도네시아의 검역절차 ■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되어질 수가 있음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됨
처리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됨: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억류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억류됨.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함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됨: 1.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억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폐기	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됨: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됨.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됨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함.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름.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함

1.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2.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3. 화물하역 승인서

4. 훈증 증명서
5. 소독 증명서
6. 식물 검역 증명서
7.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8.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제2절 제품별 검역제도

1. 일반 포장 식품의 검역절차

- 일반 포장 식품에 대한 검역제도는 없음

2. 수산물의 검역절차

- 해양수산부는 산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제품의 검역제도를 관장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인도네시아 법안 No. 15 (2002) - “수산물의 검역”의 법안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 수산제품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음

Step 1.

- 도착 후, 수입업자는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서류들을 진입항의 검역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Step 2.

-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검사를 요청함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의 완벽성을 검토함

- ① 수산제품의 수입허가
- ② 검역청장 명의로 발급된 수산물 검역내용의 지시서 (사본)
- ③ 원산지의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수산검역분야의 건강 증명서 또는 수산품질 분야의 건강 증명서
- ④ 원산지 국가의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C/O)
- ⑤ 수입되는 수산제품이, 수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미생물 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 등의 오염이 없고, 냉동상태에서 순중량이 최소 95%를 충족하고 있다는 원산지국가의 시험성적서.
- ⑥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설명서
- ⑦ 수산제품 양식에 관한 GAP 증명서

Step 4.

- 서류가 구비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담당관은 서류보완지시와 함께 관세지역에서의 실물조사의 기일을 최대한 3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음.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확인 및 실물조사가 완료된 이후, 진입항구로부터 운송을 인도한다는 승인서가 발급 됨

Step 5.

- 검역담당관은 검역행위를 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 실험실에서의 품질시험은 10일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함. 검역담당관은 수산제품 견본이 검역시설에 입고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료채취를 하여 검역행위를 수행함.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인증협약 (MRA) 혹은 양해각서 (MoU)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1%임

Step 6.

- 검역담당관이 진입항구로부터의 화물인도증명서 (KI-D15)를 발급하는 것으로 검역절차는 종료가 됨

3.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검역절차

-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절차는 인도네시아 법안에 설명된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함. 인도네시아 법안 No.14/2002 - “식물 검역”이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인 지침서임.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음

Step 1.

-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이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들은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에 통보하여야 함. 동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① 전체 금액
 - ② 제품의 유형
 - ③ 생산지역 및 상표
 - ④ 운송수단
 - ⑤ 목적적/경유지 항구
 - ⑥ 포장재의 종류
 - ⑦ 컨테이너 번호

Step 2.

- 수입업자들은 진입항구의 검역담당관에게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도착을 보고하고, 실물을 인도함. 농림 검역담당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 (KT 2)를 발급함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확인 함
 - ① 식물, 종자 진입 허가서
 - ② 식물 건강 증명서
 - ③ 원산지 증명서
 - ④ 운송수단의 도착 계획
 - ⑤ 화물 목록

⑥ 선하증권 (B/L)

⑦ 항공화물운송장 (AWB)

Step 4.

검역담당관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 (OPTK)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물의 상태에 대한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함.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OPTK가 인도네시아 영내에 진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Step 5.

검역담당관은, 수입된 신선 과일 및 채소가 OPTK 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 장의 section 1에 나열된 표준 검역통관절차를 수행함

Step 6.

수입업자는 검역서비스 비용을 지불함

Step 7.

검역담당관은 미-감염/미-오염 증명서 (KT 9)을 발급하여, 제품을 인도함

4. 인삼의 검역절차

신선 인삼의 검역절차는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함

5. 유아용 조제분유의 검역절차

유아용 조제분유의 검역절차에 관한 규정은 농림검역사무소장 조례 No.436.a/KPTS/PD.670.320/11/07 - “우유 및 우유제품의 동물성제품에 관한 검역항목 및 절차”를 따름

Step. 1

수입업자는 화물도착 최소 2일 이전에 검역담당관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통보서를 제출함

Step. 2

화물도착 통보서와 함께,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서 검역조사 요청서를 제출함

Step. 3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함 :

- ①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기관에 의하여, 제품이 위생과 관련된 표준요건을 충족하고, 건강한 동물을 확인하는 축산의 기술요건을 충족하고, HACCP/GMP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강 증명서 또는 위생 증명서
- ② 원산지 증명서
- ③ 위험요인 분석 증명서
- ④ 동물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API 및 IP 수입 허가서
- ⑤ 원산지, 생산공정, 성분, 생산자/제조자의 상호, 제품 유형, 유통기한, 생산 번호, 목적 등이 표시된 제품 등록서
- ⑥ 우유 또는 크림이 인가된 처리공장에서 이슬람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었다는 Halal 증명서 (또는 유사 증명서)

Step. 4

검역담당관은, 서류상의 하자 또는 위반 내용이 없으면, 실물조사를 수행함. 실물 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① 우유 수송의 codex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검사
- ② 포장 검사
- ③ 포장 온도 검사
- ④ 적재 방법
- ⑤ 봉인 및 라벨
- ⑥ 분유의 실물 조사

Step. 5

검역담당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실험실 분석을 수행함 :

- ① organoleptic (감각기관) 시험

- ② 우유의 원산지국가가 희귀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검역담당관은 실험실 분석을 수행함
- ③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의 잔류량 시험

Step. 6

모든 시험과 분석들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검사관들이 이상없음 소견을 내면, 검역담당관은 물품인도 증명서를 발급함

제3절 자료 출처

□ 법안

근거 법령	
UU 16/1992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UU 10/1995	인도네시아 법안 No.10 (1995) - 관세법

□ 농림부 규정

- 농림부 규정 No.469/KPTS/HK.310/8/200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식물 및 종자의 수입과 관련된 검역행위 기준 관련 규정 No.38/KPTS/HK.310/1/1990의 부속서 III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206/KPTS/TN.530/3/2003 - 동물 검역 질병의 분류 및 병원체 전달경로의 분류
- 농림부 규정 No.103/KPTS/HK.060/M/2/2004 - 식물검역행위의 양식 및 서류의 종류
- 농림부 규정 No.508/KPTS/PD.520/8/2004 - 식물검역항목 해충의 종류 및 전염경로

- 농림부 규정 No.38/KPTS/HK.060/1/2006 - 식물검역 분류 A1 및 A2의 Group I 및 분류 A1 및 A2 의 Group II의 방해 생명체의 유형 및 숙주 식물, 전염 경로, 분포지역 등
-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 - 인도네시아 영내로의 과일 및 신선 과일채소의 수입에 관한 식물검역행위의 기술표준
- 농림부 규정 No.05/Permentan/HK.060/3/06 - 개인 및 기관의 소유인 식물검역소의 설치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271/KPTS/HK.310/4/2006 - 제3자에 의한 식물검역행위의 수행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34/Permentan/OT.140/7/2006 - 동물 검역소의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5/2006 - 진입 및 진출 장소 이외에 서의 식물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52/PERMENTAN/OT.140/10/2006 - 식물 검역항목의 추가
- 농림부 규정 No.51/KPTS/OT.140/10/2006 - 검역된 동물의 질병의 검사, 관찰 및 치료에 관한 내부적 업무관계도에 관한 지침서
- 농림부 규정 No.62/Permentan/OT.140/12/2006 - 병원균 물질 및 축산의 학 생물학시료 유형의 진입에 관한 관찰 및 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알뿌리)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
- 농림부 규정 No.09/PERMENTAN/OT.140/2/2009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해충 전염경로 식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12/Permentan/OT.140/2/2009 - 인도네시아 역내로 수입 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행위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37/Permentan/OT.140/7/2009 - 식물검역처리 및 선적전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 취화메틸을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의 사용 관련

- 농림부 규정 No.46/Permentan/HK.340/8/2010 - 검역 동물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물체의 전염경로 해충 및 질병의 진입 및 확산위치 관련
- 농림부 규정 No.56/Permentan/OT.140/9/2010 - 진입 및 확산위치 이외의 장소에서의 식물검역조건의 수행 관련
- 농림부 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94/Permentan/OT.140/12/2011 - 검역 동물 질병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명체의 전염경로 진입 및 확산위치
- 농림부 규정 No.16/Permentan/OT.140/3/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 대한 개정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15/Permentan/OT.140/3/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대한 개정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43/Perme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layer 뿌리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42/Permentan/OT.140/6/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신선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발표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7/MEN/2003 - 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 분류, 감염경로, 전파방법 등의 확인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6/MEN/2003 - 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의 진입 및 진출 항구의 지정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8/MEN/2003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전염경로의 수입 및 역내의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검역 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34/MEN/2003 - 수산물 검역의 건강증명서 및 수산제품의 품질 및 위생 건강증명서의 발급 인가 기관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55/MEN/2004 - Sumatra지역의 일반 Carp 및 Koi (잉어류) 검역대상지역 선포서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4/MEN/2005 - 수산물 검역행위의 서류 양식, 형태, 발급방법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3/MEN/2005 - 제3자에 의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5/MEN/2005 - 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감염경로의 수출과 관련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10/MEN/2012 - 수산물 검역 추가 의무사항

□ 기타 정부기관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82/2000 - 동물 검역 관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14/2002 - 식물 검역 관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15/2002 - 수산물 검역 관련
- 무역부 규정 No.51/M-DAG/PER/12/2007 - 검역 및 선적전 사용을 위한 취화메틸의 수입 관련 조례

라벨링 및 포장

제1절 개 요

□ 식품 라벨링은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BPOM은 관세청 회람 No. 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식품 라벨링은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 제품의 유통기일
-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됨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동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halal인증기관이 발급한 Halal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함. 동 목록은 halal-인증기관을 3개의 분류로 구분함
 - 소 도축 halal 인증
 - 가공산업 halal 인증
 - 향신료 halal 인증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어가 포함이 된 라벨링 견본을 국내교역국에 제출하고 라벨링 견본이 승인이 되면, 5 근무일 이내로 라벨링 인증서가 발급됨

제2절 라벨링 요구조건

- 포장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 식품라벨링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라벨링 요구조건이 상이함.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 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제품은 방사전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 받음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이러한 영양소 라벨링은 규정 No.62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의 적용을 받음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름.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 건강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상적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
 - 영양 내용 :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 낮은 칼로리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저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 무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 단백질 증강 : 제품의 칼로리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 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 낮은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 그램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 그램 이하일 때 총 50 그램의 경우
 - 무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포화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 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또는, 스낵 혹은 음식 제품의 100 그램당 포화지방이 1 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0% 미만의 경우
 - 적은 포화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무 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램/100 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② 판매를 위한 식품의 포장에는 부패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함
- ③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식품의 포장에서 금지되는 포장재료 및 방법 등을 정의함
- ④ 포장 재료의 인체건강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의 포장 재료는 안전검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가 없음. 새로운 재질의 포장 재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식품의 포장 재료로 사용 될 수가 있음
- ⑤ 소형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벌크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의 개봉 및 재포장은 금지됨

제5절 자료 출처 및 부록

1. 자료 출처

□ BPOM (의약식품관리청) 발표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3.1.23.06.10.5166 - 의약, 전통의약, 보조식품, 식품의 라벨링에의 특정 물질, 알콜 함량 및 유통기한 정보의 표시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2.6291 - 식품제품 영양소 라벨링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2.4321 - 식품제품 라벨링 일반 규칙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1142 - 식품제품 라벨링에 영양소 충분성, 백분율 표시의 표기

□ 관세청 발표

- 관세청 규정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의 확인
- 관세청 규정 No.P-35/BC/2007 - 면세점 판매제품의 관리 등록 라벨링 규정

No.P-23/BC/2007의 1차 개정

- 관세청 규정 No.P-23/BC/2007 - 면세점 판매 제품의 관리 등록 라벨링

☐ 무역부 발표

- 무역부 규정 No. 22/M-DAG/PER/5/2010 - 제품 라벨링 의무 규정 No. 62/M-DAG/PER/12/2009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 기타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69/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부록 3 : API-P (수입업자-제조 등록번호) 면허 양식

Lampiran VI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I
 Nomor : 45/M-DAG/PER/9/2009
 Tanggal : 16 September 2009



Logo
Depdag

DEPARTEMEN PERDAGANGAN

.....

.....

ANGKA PENGENAL IMPORTIR – PRODUSEN

Nomor :

Sesuai surat Rekomendasi Pemerintah/Badan Pelaksana Nomor tanggal, diberikan Angka Pengenal Importir Produsen, kepada :

Nama/Bentuk :
 Alamat Kantor :
 Nama Penanggung Jawab :
 Nomor Telepon :
 Faksimil :
 NPWP :
 Nomor Kontrak Kerjasama :
 Jenis Kegiatan :

API berlaku selama importir masih menjalankan kegiatan usahanya.

.....

a.n. Menteri Perdagangan

.....

(.....)

NIP

Tembusan :

1. Direktur Impor, Ditjen Daglu;
2. Direktur Bank Indonesia/ULN;
3. Direktur Teknis Kepabeanan Bea dan Cukai, Depkeu.

부록 4 : NPIK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발급 양식

Lampiran I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R.I

Nomor :

Tanggal :

No. Seri 0.0001

**DEPARTEMEN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NOMOR****PENGENAL IMPORTIR KHUSUS****NPIK****NOMOR :****JENIS BARANG :**

Sesuai dengan permohonan Saudara nomor, tanggal, dapat diberikan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NPIK), kepada : Nama/Bentuk Perusahaan :

Alamat Kantor Pusat :

Nama Penanggung Jawab :

Telepon/Fax :

Nomor API :

2 (dua) lembar	Penanggung Jawab	Jakarta, 200.
3 x 4	Ttd	Direktur Jenderal
Pas Foto	Stempel	Perdagangan Luar Negeri
Berwarna	(Nama)	
	Jabatan	()

부록 7 : 쿼터신청 대상품목

HS CODE	품목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6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00.00	바나나 (즉시 섭취 불가능한 것)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30.00.00	파인애플
0804.50	구아바 · 망고 및 망고스틴
0804.50.20.00	망고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오렌지
0805.10.10.00	오렌지 (신선)
0805.20.00.0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 클레멘타인 ·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0805.50.00.00	레몬(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0805.90.00.00	기타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CODE	품목
0806.10.00.00	포도 (신선)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19.00.00	기타
0807.20	파파야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00.00	사과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60.00.00	두리안
0810.90	기타
0810.90.10.00	감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90	기타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호: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4.10.00.00	감자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20	감자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91.00.00	감귤 류의 과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20.00.00	파인애플
2008.30	감귤류 과실

HS CODE	품목
2008.30.10.00	유자
2008.99	기타
2008.99.20.00	사과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29.00.00	기타
2009.39.00.00	기타 (레몬 및 라임 주스)
2009.41.00.00	기타 (파인애플 주스) 당도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69.00.00	기타 (포도 주스)
2009.71.00.00	기타 (사과 주스) 당도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79.00.00	기타 (사과 주스)
2009.90	혼합 주스 (과실, 오렌지, 사과, 포도, 채소, 기타)
2009.90.90.00	기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90	기타
2103.90.10.00	장류 (된장, 춘장, 고추장)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 대만·인도네시아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3년 12월 27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6300-1394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KATI(www.kati.net)>자료실>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